유라시아 국가의 법제한류 확산을 위한 전략

법무법인 안세

2014. 12.

법제처

유라시아 국가의 법제한류 확산을 위한 전략

법무법인 안세

2014. 12.

연구수행기관 : 법무법인 안세
연구책임자 : 이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안세)
공동연구자 : 박정원 교수(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정지승 변호사(정지승 법률사무소)
최진석 러시아 변호사(법령정보관리원)

제 출 문

법제처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 **「유라시아 국가의 법제한류 확산을 위한 전략」**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 12.

연구수행기관 : 법무법인 안세
연구책임자 : 이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안세)
공동연구자 : 박정원 교수(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정지승 변호사(정지승 법률사무소)
최진석 러시아 변호사(법령정보관리원)

요약문

1. 법제한류사업의 의의 및 목적

(1) 법제한류사업의 의의

법제한류사업이란 법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한국 법제를 다른 나라에 전파하고 전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는데, 이 용어는 법제를 외국에 알리는 것과 외국에 한국법제를 참고하여 그 나라의 법령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법제를 수출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전근대국가에서 제국주의의 침략과 권위주의의 억압체제를 극복하고 불과 50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모두 달성한 세계사적으로 성공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가나 체제전환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제를 연구하고 도입하려고 하는 수요가 강력하다.

법제한류사업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도입 요구에 부응하여 법제를 전수하는 사업인데 법제한류사업에 대한 일정한 전략이 있지 않을 경우 사업을 실시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여 국력을 소모하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 만약 대상국에 적합하지 못한 법제를 전수한다면 이들 법제가 대상국에 정착하지 못하여 사업이 종국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법제한류사업을 통한 국가간의 교류와 협력은 단기간에 끝날 위험성이 있다.

(2) 법제한류사업의 목적

유라시아 국가들에 대한 법제한류사업을 성공시키고 계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서는 법제한류사업의 목적을 올바로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제한류사업으로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법제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동안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나 대략 합의가 된 바와 같이 경제성장(economic growth)과 인권(human rights) 신장을 모두 포섭하는 '인권을 기반으로 한 개발(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HRBAD)'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인류역사의 발전은 결국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인권신장의 역사라 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편적으로 추구할 이념으로 인정한다면 인권의

신장을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법제한류사업에 있어서 이념으로 정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제한류사업이 단순히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의 추구를 넘어 전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확장에 기여하고 국가 간 상호협력과 공존의 모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제의 교류협력을 통해 보편적 인권의 원칙에 대한 인식과 지평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제한류사업은 구체적으로 법을 통한 그리고 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법이 추구하는 이념인 '법치주의의 실현'을 '인권을 기반으로 한 개발'과 더불어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법치주의의 실현에 있어서도 형식적 법치주의만이 아니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법제신설과 법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제교류협력이어야 한다. 형식적 법치주의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예측가능성과 사적 자치의 보장이 창의적인 경제활동의 촉매가 되어 경제성장을 일으키는데 기여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형식적 법치주의만으로는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제반 삶의 여건의 총체적 발전과 성숙을 이루는 데에 충분하지는 않으므로 자유, 평등, 복지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동시에 구현하여 국가공동체의 총체적 개발을 성공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제도의 경우 한번 형성되면 이를 교정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협력대상국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환경과 조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일방 국가의 수익 또는 경제성의 관점이 앞서서는 아니 된다.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법제한류사업에 있어서도 대상국의 특수성인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사회주의 체제의 전통과 정보화 사회의 조속한 실현 등 국가적 요구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2.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법제분석

(1) 카자흐스탄의 법제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를 취하고 있으며, 헌법, 민법, 형법 등의 실체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 절차법을 가지고 있다. 70년간 구소련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법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구소련과 러시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러시아의 법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 부분 러시아 법제도의 변천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같이 민·상합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상법전을 두고 있지 않고 민법전에

민법의 규범과 상법의 규범이 명시되어 있다.

카자흐스탄 법규법(legislative act)에 따르면 법규는 법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뉘고, 카자흐스탄의 법체계는 1) 헌법, 2) 헌법의 개정법률, 3) 헌법적 법률, 헌법적 법률의 효력을 갖는 대통령령, 4) 코드(code), 5) 법률, 법률적 효력을 갖는 대통령령, 6) 의회명령 및 상•하원의 명령, 7) 대통령령, 8) 정부령, 9) 부령, 중앙국가기관장의 명령, 중앙국가기관의 명령, 중앙선거위원회의 명령, 국가예산집행 및 관리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명령, 10) 조례 및 규칙의 위계질서를 가진다. 이 중에서 코드(code)는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규범으로 일반 법률보다 상위법령이며 일반 법률과 거의 똑같은 형태를 갖지만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국가예산법 등 보다 중요한 사회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입법 발의권은 카자흐스탄 대통령, 하원의원 및 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양원제 의회를 채택하는 국가의 일반적 입법절차를 취하고 있으나, 대통령에게 법안심의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권한 등 광범한 입법에 관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 입법절차에 관하여는 법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우즈베키스탄의 법제

우즈베키스탄 역시 대륙법계를 취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법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구소련과 러시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민·상 합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등 러시아의 법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법령은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으로 구분되는데, 상위법령에는 헌법, 법률, 의회의 명령이 있고, 하위법령에는 대통령령, 내각령, 정부 각 부처와 국가위원회의 법령, 지방국가권력기관의 결정이 있으며, 법령의 위계질서도 이러한 순위에 따른다. 카자흐스탄과는 달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법규법에 명시적 법규정은 없으나, 우즈베키스탄에 있어서도 법률은 헌법적 법률, 코드(code), 법률로 나누어지고 그 효력순위와 내용은 카자흐스탄과 대략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입법 발의권을 갖는 주체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우즈베키스탄 의회(Oliy Majlis)의 입법의원(하원의원), 우즈베키스탄 내각, 헌법재판소, 대법원, 최고경제법원, 검찰총장이다. 이들은 법안을 우즈베키스탄 입법원(하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의회의 입법심사 절차는 양원제 의회를 채택하는 국가의 일반적 절차와 유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가진다. 구체적 입법절차에 관하여는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법규법(legislative act)

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법제한류사업의 대상 선정

유라시아 국가와의 법제한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대상법제를 결정함에는 법제한류사업의 목적, 대상국의 특수성, 우리나라 법제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환경법제, 등기법제, 공정거래법제, 에너지법제, 무역법제, 투자법제, 출입국법제, IT법제를 이러한 고려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여보면, IT법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로서 정보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정보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알권리와 자기정보결정권을 보호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이들 국가에서 이러한 법제에 대한 새로운 법제의 제정과 개정작업이 현재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 셋째, IT 관련법에 법안의 초안이 이미 마련되었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이들 법제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IT법제 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전자정부법 제정에 대하여 법안을 준비하고 한국에 구체적 도움을 요청하는 등 그 요구가 강하여 전자정부법제가 법제한류사업의 대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카자흐스탄은 정보화가 상당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제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이 분야를 법제한류사업의 대상으로 함이 가장 바람직하다.

4. 카자흐스탄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의 교류협력

카자흐스탄은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이고 입법에 있어서 실질적 역할은 의회보다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부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입법 전문기관으로는 법제처가 적절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이고 그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가 서로 상의하여 법제한류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제한류사업 그 자체는 법제처가 정부 내의 주된 당사자이고 정부입법의 최종적 검토는 법제처가 하므로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제의 제정에 대한 사업의 주체는 법제처이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실무적으로는 한국소비자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IT기술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상의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적정한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고 본다.

카자흐스탄에서 법제협력을 진행하여야 할 기관으로는 법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법제교류협력사업에 관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카자흐스탄 법무부가 당사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술 분야에 대하여는 카자흐스탄 법무부의 의견과 우리나라 미래창조과학부나 기타 IT기술 관련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카자흐스탄의 국가정보기술원(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등이 전자상거래의 기술 분야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소비자권리보호청의 관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카자흐스탄과의 법제교류협력의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일본의 법정비사업에 있어서의 절차 등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 카자흐스탄의 관계 법령 부재의 문제점과 제정방향에 대한 카자흐스탄 법무부나 소비자권리보호청 등 소비자보호 관련 정부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제시, 2) 이러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한국의 법제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카자흐스탄 법무부와 국제적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대화와 토론, 3) 한국의 법제처와 상대국 전문가 참여하에 새로운 법령안의 작성, 4) 이에 대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제시와 토론, 5) 이를 바탕으로 카자흐스탄 법무부가 실제 법령 제정안을 만들어 의회통과와 법률공포 등 최종 입법절차 완료, 6) 이렇게 제정된 법령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새로운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한국의 법제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법무부와 소비자권리보호청 등 담당 정부기관의 전문가나 실무가들의 참여하에 의견교환 등을 행하고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정보화 수준은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나지만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왔기 때문에 높은 수준에 속하며, 전자상거래가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을 갖추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규정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전자상거래 법제에 있어서는 새로이 소비자권리보호법안이 만들어졌지만 표시광고의 기록보존의무, 조작실수 등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절차구비, 공급절차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등 많은 사항들에 대한 추가 조문이 필요한 점,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자율적 법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과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

는 법규정의 필요성,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신뢰성 확보와 소비자의 진정한 지급의사의 전자적 확인방법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화, 배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에 배송 사고 및 배송 분쟁 발생 시 해결 규정 제도화, 신속한 청약철회제도 제도화 및 전자상거래 분쟁을 신속하고도 저비용으로 해결하기 위한 ADR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규정이 필요하다.

카자흐스탄과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법제에 관한 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선 현재 개정법 초안이 나온 소비자권리보호법에 관하여 서로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소비자권리보호법안에서 미비되어 있는 많은 조항들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참작하여 그 보완책을 상의하고 되도록 이를 새 법안에서 보완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새로운 조항들의 방대함이나 복잡함 그리고 체계적합성의 원칙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소비자권리보호법안과는 별개로 새로운 입법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우즈베키스탄과 전자정부법제의 교류협력

IT법제는 일반 법제와는 달리 기술적 성격이 강하고 또 다른 법령들과도 모순과 충돌이 없어야 하므로 그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우즈베키스탄의 IT전문가들과 입법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IT인프라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교류협력을 받아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정하려고 하는 법령이 과연 현실에서 원래의 입법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이고 입법에 있어서 실질적 역할은 의회보다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부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입법 전문기관으로는 법제처가 적절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부서는 안전행정부이고 안전행정부가 이미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와 서로 상의하여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법의 제정에 관한 법제한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법제한류사업의 주관기관이 법제처이고 입법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 면에 있어서는 법제처가 보다 전문성이 있으므로 법제처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전자정부에 관한 IT기술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상의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적정한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고 본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정부 법제한류사업의 상대방으로 적합한 기관으로는 법분야

에 있어서는 이미 법제교류협력사업에 관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법무부가 바람직하고 다만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정부 문제를 총괄하는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센터("Electronic Government" System Development Center)'의 참여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기술 분야에 대하여 만약 우즈베키스탄의 추가적 파트너가 필요하다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의 의견과 우리나라 미래창조과학부나 기타 IT기술 관련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우즈베키스탄과의 전자정부 법제한류사업의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카자흐스탄의과 유사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전자정부에 관한 법안 초안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1)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 관련 법안 초안들의 문제점과 제정방향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나 '전자정부 시스템개발센터'나 기타 전자정부 관련 정부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제시, 2) 이러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한국의 법제처와 안전행정부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국제적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대화와 토론, 3) 한국의 법제처와 상대국 전문가 참여하에 기존 전자정부 초안들을 수정한 단일한 수정안의 작성, 4) 이에 대한 한국의 안전행정부와 법제처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제시와 토론, 5) 이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가 실제 전자정부법 최종 법안을 만들어 의회통과와 법률공포 등 입법절차 완료, 6) 이렇게 제정된 법령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새로운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한국의 법제처와 안전행정부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법무부와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센터'나 전자정부 관련 정부기관의 전문가나 실무가들의 참여하에 의견교환 등을 행하고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전자정부법의 마련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총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전자정부법이 부재하며, 2013년 11월 전자정부법 초안이 비로소 마련된 상태이다. 현재 마련된 정부법안을 토대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법에 있어서 교류협력 방안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법안과 관련하여서는 전자정부법 적용범위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 민원처리에 관한 규범들을 보다 철저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점,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에 관한 규정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점, 전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지위, 권리, 의무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성,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상세한 규정의 필요성, 전자정부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책과 관련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정부에 납부할 세금, 벌과금, 수수료 등 각종 금전을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교류협력의 과정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법제의 정확한 내용과 의미, 전자정부 관련 법령들의 내용, 전자정부법안의 입법 연혁, 전자정부의 실제와 이를 규율하는 현행법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제처와 안전행정부(혹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전문가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회의하고 전자정부 운용현실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의 법무부나 전자정부시스템개발센터의 법규 담당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법제의 정확한 내용과 입법 변천내역, 실제 적용상의 효율성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수를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목 차 >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1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4. 본 연구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 4

제2장 법제한류사업 의의 및 내용 ····· 7
1. 법제한류사업의 의의 ····· 7
2. 법제한류사업의 목적 ····· 10
3. 법제한류사업의 내용 ····· 13
4. 법제한류사업 현황 ····· 14

제3장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의 법제분석 ····· 19
1. 카자흐스탄의 제반 법제 환경 분석 ····· 19
(1) 카자흐스탄의 일반적 소개 ····· 19
(2) 카자흐스탄의 법체계 ····· 20
(3) 카자흐스탄의 법제기관 ····· 23
(4) 카자흐스탄의 입법방식 ····· 28
2. 우즈베키스탄의 제반 법제 환경 분석 ····· 31
(1) 우즈베키스탄의 일반적 소개 ····· 31
(2) 우즈베키스탄의 법체계 ····· 32
(3) 우즈베키스탄의 법제기관 ····· 34
(4) 우즈베키스탄의 입법방식 ····· 38

제4장 유라시아 국가와의 법제한류사업 분야 도출 ····· 34
1. 유라시아 법제한류사업 대상 선정에 있어서 고려점 ····· 43
(1) ‘인권을 기반으로 한 개발’과 법치주의 ····· 43
(2) 대상국의 특수성 고려 ····· 44
(3)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법제 ····· 54
(4) 법제한류사업의 효과에 대한 고려 ····· 64

(5) 법제한류사업의 진행 요건과 절차 ····· 47
2. 법제한류사업 대상에 대한 전문가 의견 ····· 48
3. 구체적 대상 검토 ····· 51
(1) 환경법제 ····· 55
(2) 부동산등기법제 ····· 55
(3) 외국인투자법제 ····· 56
(4) 무역관계법제 ····· 59
(5) 공정거래법제 ····· 66
(6) 재생에너지법제 ····· 68
(7) IT법제 ····· 36
(8) 소결 ····· 56

제5장 카자흐스탄과 법제한류사업으로서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검토 ····· 9·· 6
1.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법 ····· 69
(1) 전자상거래의 의의와 소비자문제 ····· 69
(2) 전자상거래 계약의 법적 특성 ····· 71
2.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제적 입법 동향 ····· 72
3. 한국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의 역사와 내용 ····· 74
(1) 소비자보호법제의 역사와 내용 ····· 74
(2)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의 역사 ····· 77
(3)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의 구체적 내용 ····· 78
4.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의 내용 ····· 82
(1) 개관 ····· 82
(2) 소비자보호법의 내용 ····· 82
(3) 전자상거래 규칙의 구체적 내용 ····· 84
5. 카자흐스탄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의 교류협력 ····· 86
(1) 전자상거래의 배경으로서 카자흐스탄의 정보화 ····· 86
(2)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의 법제한류사업 협력주체 ····· 90
(3)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의 법제한류사업 추진절차 ····· 92
(4)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의 법제한류사업의 구체적 내용 ····· 92

제6장 우즈베키스탄과 법제한류사업으로서의 전자정부 검토 ····· 31
1.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법 ····· 103

2. 전자정부법의 국제적 입법동향 ····· 103
3. 한국 전자정부법제의 역사와 그 내용 ····· 104
4.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관련 법제 개관 ····· 107
5. 우즈베키스탄과 전자정부법제의 교류협력 ····· 108
(1) 전자정부의 배경으로서 우즈베키스탄의 정보화 ····· 108
(2) 전자정부법 법제한류사업의 협력주체 ····· 117
(3) 전자정부법 법제한류사업의 절차 ····· 118
(4) 전자정부법 법제한류사업의 구체적 내용 ····· 118

제7장 결 론 ····· 133

<참고문헌> ····· 137

<참고자료>
<별첨 1> 한국-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법 조문 비교 ····· 141
<별첨 2>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법 ····· 193
<별첨 3> 한국-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관련 조문 비교 ····· 212
<별첨 4>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자상거래 시행규칙 ····· 229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전근대국가에서 제국주의 침략과 권위주의 억압을 극복하고 불과 50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모두 달성한 국가로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공에는 경제나 문화적인 요소 이외에도 법제도가 크게 기여하였고,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법제를 연구하고 도입하려고 하는 수요가 강력하다.

우리나라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는 법제협력사업을 비교적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그 외의 지역에 대하여서는 협력사업의 경험이 아직 부족하다. 특히 구소련체제 붕괴 후 국가체제를 새로이 다져가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에서 한국의 법제발전 경험 및 고도성장기 법제(법제한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역사적으로 실크로드를 거쳐 우리나라와 오랜 기간 교류한 국가들이고, 근대에 와서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주하여 한국계 주민의 비율이 높으며 최근에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한류에 대한 호응이 매우 강한 지역이다. 이러한 유라시아 국가들에게 이들 국가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강점을 가진 법제에 대하여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여 법제한류를 확산 한다면, 우리나라와 유라시아 국가 모두에게 상호 도움이 되고 서로 간의 이해와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유라시아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고 이들 국가의 현실에 맞으며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법제협력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상국가의 법제 환경을 분석하고 구체적 협력분야를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법제한류를 확산할 수 있는 분야를 먼저 선정한 후, 사업을 진행할 주체와 절차 그리고 그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유라시아 국가와 법제교류의 확대 기반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법제를 전수하고 이들 국가와의 법제협력사업을 활성화하여 법제한류를 확산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법제한류 확산에 대한 일정한 전략이 있지 않을 경우 법제한류를 시행하는 기관

간에 중복 및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법제교류나 협력사업의 기관 간에 중복은 국력을 소모하고,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하여 국가 이미지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국가에 적합하지 못한 법제를 전수함으로써 법제교류와 협력사업이 단기간에 끝나고 법제한류가 이들 국가에 정착하지 못함에 따라 법제한류 확산사업이 종국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유라시아 국가에 대한 법제한류 확산을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 전략에 따라 유라시아 국가와의 법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법제한류 확산의 의의와 목적을 올바로 정립하기 위하여 법제한류의 정확한 의미를 밝히고, 세계적으로 법제협력사업의 일반적인 지도이념으로 인정되고 있는 '인권을 기반으로 한 발전'과 '법치주의의 확립'을 강조하려고 하였다. 법제한류 확산을 위한 법제협력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특히 유라시아 국가를 개발도상국으로서 일시적인 원조 대상국가라는 사고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에 공존과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려고 하였다.

또한,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법제수출에서 탈피하여 유라시아 국가의 경제·사회·정치·문화 제반 여건의 총체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삶의 질 향상과 법의 지배를 이룰 수 있도록 하되, 유라시아 국가의 정치·사회·법체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전수한 우리나라 법제와 이들 국가의 문화나 현실과의 괴리가 줄어들도록 법제협력사업을 진행하려고 유념하였다.

그러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유라시아 국가의 법제의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살펴 본 다음, 이들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법제협력을 요청하거나 관심을 표시한 잠재적 협력대상 분야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법제 중에서 법제한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법제분야를 선정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법제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제현황과 대상국의 현황을 조사한 후 해당 국가와의 법제한류 확산을 위한 기본 협력방안 및 전략을 도출하였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광의의 유라시아 국가란 우랄산맥으로 나누어지는 유럽 및 아시아에 위치한 모

든 국가를 의미한다. 협의의 의미로는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1991년까지 소련 연방의 일원이던 독립 국가들)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국가를 칭한다.

그런데 본 연구의 대상 국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중점협력국[1]으로 지정된 우즈베키스탄과 인구가 많고 경제력이 상당한 정도에 도달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상대적으로 교류가 활발한 카자흐스탄(이하 이들 두 국가를 함께 칭하여 '유라시아 국가'라 한다)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먼저 법제한류의 의미를 유사개념과 비교하여 그 의의를 분명히 하고, 법제한류 사업의 지도이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유라시아 국가의 법제내용과 입법절차를 검토한 후 법제한류 사업의 잠재적 대상분야를 검토하여 진행할 법제분야를 특정하였다. 이와 같이 선정된 법제분야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대상국의 입법배경과 입법역사 그리고 간단한 법내용을 살펴 본 다음 그 법제에 대한 협력사업의 바람직한 주체와 사업진행절차 그리고 사업의 대략적인 내용으로서 대상국 법제의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다만 대상법제에 대한 법제협력사업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고 차후 실제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실무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보다 정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가. 유라시아 국가의 제반 환경 조사를 통해 현황 파악 및 분석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하 '유라시아 국가'라 한다)의 정치·경제·역사 등 제반 환경에 대해 국내외 참고문헌, 학술자료, 인터넷 등 자료[2]를 조사하여 단순한 법제분야만이 아닌 국가와 사회전반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 유라시아 국가의 정치체계, 의회제도, 정부조직, 사법체계 등을 국회도서관 자료, 국내외 참고문헌, 연구보고서, 인터넷 자료를 조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합한 법제한류 확산 전략 수립에 참고하였다.

나. 유라시아 국가 법제와 법령 조사를 통한 입법 환경 분석

1) 중점협력국이란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장기적, 집중적 ODA 제공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말한다.
2) 연구보고서 말미에 참조한 문헌 및 자료 목록을 첨부하였다.

유라시아 국가의 법령에 대해 입법자료,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각 부처의 정책자료, 연구보고서 및 인터넷 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입법 환경을 분석하고, 유라시아 국가의 법체계, 법제기관, 입법방식, 입법동향 등 법제도를 비롯하여 국회도서관 자료, 국내외 참고문헌, 연구보고서, 인터넷 자료를 조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합한 법제한류 확산전략 수립에 참고하였다.

다. 법제교류협력에 대한 연구논문, 학술보고서 등 국내외 자료조사

법제교류협력에 대한 관련된 국가기관의 정책자료, 연구논문, 학술보고서, 국내외 문헌조사 및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분석하고, 수집·분석된 관련 문헌 및 자료를 통해 법제한류 확산을 위한 전략 수립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여 정리하였다.

4. 본 연구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1)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본 연구의 결과물에 인하여 다음에 열거한 내용과 같은 성과 내지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유라시아 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법제한류 확산을 위한 기본적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계획하고 있는 유라시아 국가 법제한류 확산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법제한류 확산의 대상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한 제반 법제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의 CIS 국가로 점차 확산시키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법제내용과 입법절차를 파악함으로써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해정도를 높이고 양국 간의 협력과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법제협력대상으로 선정된 분야에 대하여 대상국가 법제의 구체적 내용과 입법배경 그리고 입법역사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고 관련된 산업분야의 현재 발전정도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라시아 국가에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에 기여한 법제를 전수하여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시키고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다.

(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본 연구는 법제한류 내지 법제협력사업의 연구자료로 사용되거나 향후 심화·발전된 연구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라시아 국가의 법제한류 확산을 위한 기본 매뉴얼을 작성하여 우리나라 법제를 소개·전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향후의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법제처,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한국국제협력단 등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제교류를 위한 참고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현재 수행되고 있는 법제한류화 산업 또는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법제한류에 관한 입법정책 수립을 위한 입법지원 참고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또한 도출된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우리 법제의 영문화 내지 러시아어 작업을 거쳐 맞춤형 법제 제공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일부 연구결과는 이미‘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시 발제하여 유라시아 국가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 토론을 통해, 연구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실시함으로써 대상국가와의 법제교류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제2장 법제한류사업 의의 및 내용

1. 법제한류사업의 의의

법제한류사업이란 우리나라의 법제를 다른 나라에 전파하고 전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는데 이 용어는 법제(法制)와 한류(韓流)가 결합된 용어이다.

먼저 '법제'란 용어는 법과 혼용하여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법제'가 '법'보다는 실정법 중심이고 또 법시스템 체제 전반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된다. 법이 실정법 이외에 자연법, 관습법, 종교법, 국가법이 아닌 공동체법 등을 포함하는 의미라면, 또 협력의 대상이 실정법의 제정이나 개정에 중점을 두면서도 법의 운용을 포함하는 영역을 포괄한다면, 법이라는 표현보다는 법제라는 표현이 보다 명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3)]

'한류(韓流)'라는 용어는 1990년대 말부터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열풍에서 유래하는데 '한류'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2월 중국 언론에서 한국 대중문화 선호 현상을 보도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4)]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한국의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제품에 대하여 선호하는 모든 현상을 가리키고 가장 넓게는 한국적인 요소를 모두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요에 있어서 한류, 드라마에 있어서 한류, 음식에 있어서 한류, 의상에 있어서의 한류 나아가 예술에 있어서의 한류, 정치에 있어서의 한류, 법제에 있어서의 한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류라는 용어에는 형식이나 제도 보다는 현실의 현상이나 문화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류라는 용어에는 현실로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 한국 특유의 요소를 강조하는데 이러한 요소는 형식적이거나 제도적 요소보다는 구체적 인식대상으로서의 현상을 주된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법제 한류란 법제에 있어서 한류를 말하는데 기존의 한류라는 용어사용례에 의하면 한국의 법체제에 있어서 한국 특유의 요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국적인 것에 대한 선호를 의미하고 형식적인 법조문 보다는 법현실 내지 법문화[5)]적인 것에 대한 선호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3) 이성환, 우리나라 법제협력사업의 이념적·실천적 과제, 법제, 2012.6., 49면 참조.
4) Naver 두산백과, 한류(韓流) 참조.
5) '법문화(法文化)'란 법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를 의미하는데, 프리드만(M. Fridman)은 '법문화'를 법과 법체계 그리고 여러 가지 부문에 관해서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치·의견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Lawrence M. Fridman, 법과 사회, 박남규 옮김, 법문사, 1984, 125면 참조.

‘사업’이란 용어는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을 하거나 또는 그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6] 사업이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이란 business, work, project로 번역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제한류사업의 사업이란 영어의 project로 번역되는 것으로 계획된 일이란 의미가 강하다.

그렇다면 법제한류사업이란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법제한류란 한국적인 법현실이나 법문화에 대한 것을 포함하기 보다는 오히려 법체제나 법조문을 전수하고 전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법현실이나 법문화를 사업의 형태로 하기는 현실이나 문화가 인위적으로 조성되기 보다는 역사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제한류사업이란 광의로는 한국적 특색을 법체제나 법조문 그리고 법문화 등을 외국에 전수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협의로는 무형적인 법문화나 법현실을 제외하고 법체제나 법조문을 전수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법제한류를 주로 이러한 좁은 의미로 이해하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광의로 이해하여 사용하려 한다.

법제한류사업과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로는 법제수출사업, 법제정비사업, 법제지원사업, 법제교류사업, 법제협력사업 등이 있으나 엄밀하게 그 의미를 고찰해 보았을 때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7]

법제수출(legal export)이란 용어는 법제수출론에 입각하여 발생한 개념으로 법제를 개발도상국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물품으로 보았다.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적합한 법제를 수출함으로써 대상국은 자국의 시장경제발전과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수출국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제가 대상국에 도입됨으로써 기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교류, 기업투자 등의 물꼬를 틀어 해외사업추진의 유인을 증대시킬 수 있고, 우리나라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국가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보편적 인권과 법의 지배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돕는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은 용어라고 하여야 한다.

법제정비사업이란 용어에서 법제정비란 영어로 legal reform의 번역어로 사용되는 것인데, 정비(整備)의 일반적 의미가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영어의 reform과는 다소 의미를 달리한다고 보아야 한다. reform은 일반적으로 개혁이란 용어로 번역되어 기존

6) Naver 두산백과, 사업 참조.
7) 법제수출, 법제정비, 법제지원, 법제교류, 법제협력이란 용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성환 외, 법제수출을 위한 기본 전략과 과제, 법제처 용역보고서, 2012, 27-29면 참조.

의 본질적 요소를 유지하면서 개선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정비라고 번역하는 것을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 이 용어는 법제정비사업은 수원국이 하는 것이지 지원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도 정확한 용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제지원사업이란 용어도 법제지원(legal assistance)의 번역어로 지원이란 점에 중점이 두어져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타당한 용어라고도 하겠으나, 규범적으로는 보편적 인류공동체의 구성국가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국과 수원국이 서로 상호교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구태여 지원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법제교류(legal exchange)란 서로 다른 내용의 법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 법제와 관련하여 법제정이나 법운용 그리고 법전문가의 지식이나 경험을 교환하여 상호간에 의도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서로 상호적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법제협력(legal cooperation)이란 서로 다른 내용의 법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 법제에 대하여 상호간에 서로의 장점을 살려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호성과 보충성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법제교류란 단순히 상호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의미에 그치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충하도록 지원한다는 의미가 없는데 반하여 법제협력은 상호지원 한다는 의미가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법제협력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용어 중에서 과연 어떠한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의 목적과 이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업의 관점을 어떻게 정립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는 인권과 법의 지배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하여 서로 다른 법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 실정법의 제정과 운용에 관하여 서로 상호간에 지원하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법제협력사업이란 용어가 가장 적합한 용어라고 판단한다. 다만 법제협력이란 용어에는 상호 법전문가들의 교류라는 의미가 다소 부족하므로 법제교류협력이란 용어도 법제교류라는 의미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는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법제한류사업이란 법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한국 법제를 다른 나라에 전파하고 전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는데, 이 용어는 법제를 외국에 알리는 것과 외국에 한국법제를 참고하여 그 나라의 법령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법제를 수출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제한류사업이란 결국 기존의 법제교류사업이나 법제협력사업 나아가 법정비사업 그리고 법제수출사업을 포괄하는 광의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고, 본 연구에서도 법제한류사업을 이와 같이 기존의 유사개념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2. 법제한류사업의 목적

우리나라는 비교적 단기간에 서구의 법제도와 경제체계를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경제적 번영과 체제 안정을 이룬 바 있고, 그와 같은 경험은 개발도상국에게 우리나라의 법제를 모방할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다.[8)]

우리나라는 전근대적 사회에서 19세기 말 갑오개혁이나 계몽애국운동 등을 통하여 근대화를 추진하였고, 식민지 시대에 있어서도 독립운동이나 물산장려운동을 거쳐 국민주권, 민주주의와 산업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광복 이후 서구문명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여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성취하였다.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경험하였으며, 권위주의의 억압적 체제와 경제에 있어서 재벌독점체제, 빈부격차의 확대 등 어두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일단은 성공한 나라로 인정되지만, 21세기 현실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공고화의 지연과 경제발전의 지체 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우리가 서구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여 20세기적 성공을 성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공의 배후에 있는 어두운 요소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성공이 서구적 제도나 이념들의 보편적 타당성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을 의미하여서는 아니 되고 21세기의 우리의 현실이 비판적 반성과 성찰을 요구함도 엄연한 사실이다.

법제한류사업도 크게는 법제협력사업의 하나로 본다면 우리는 법제협력사업의 이념과 지도이념과 목적을 법제한류사업에 있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법제한류사업이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 법제 공여국의 입장에 있고 대상국이 수원국에 있다는 점에서, 시행착오를 이미 겪은 후 비교적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예나 국제기구의 권고적 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 성공한 우리의 법제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시행착오나 그동안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법제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법제한류사업의 진행방향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성공경험만이 아니고 아쉬운 점도 고려하여 세계사적 입장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법제한류사업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

8) 이 부분은 이성환, 우리나라 법제협력사업의 이념적 실천적 과제, 법제, 2012, 52-56면 중 일정 부분 발췌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법제협력사업이란 주지하다시피 1960년대 미국의 '법과 개발 운동(law and development movement)'에서 유래한 것이다. '법과 개발 운동'은 1960년대로부터 19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주로 미국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기술지원(legal technical assistance) 및 법과 개발 연구(law and development study)를 중심으로 전개된 학문적·실천적 운동이다. 이 운동의 주창자로 알려져 있는 Truebek & Galanter는 근대화론에 입각하여 제3세계의 전통을 저개발로 간주하고 시장경제제도, 복수정당제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법의 지배를 궁극의 목표로 설정하였다.[9] 미국의 원조기관(USAID) 혹은 사적 재단(Ford 재단 등)은 근대화론적 개발패러다임에 따라 개발도상국 유학생의 수용, 법률전문가의 파견, 개발도상국의 법안기초지원, 법률가 양성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근대화이론은 대체로 근대적 혹은 서구적 제도와 가치를 도입함으로써 제3세계가 미국 혹은 서유럽을 모델로 하는 사회를 정점으로 진화론적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고 전제한다. 즉, "선진국의 현재는 후진국의 미래상이며 선진국이 걸어온 단계는 후진국이 앞으로 겪어야 할 단계"라고 본다.[10]

그러나 이러한 법과 개발 운동은 실증적 근거 없이 법의 단선적 진화를 가정하고 그 정점에 자의적으로 미국의 법체계를 모형으로 한 자유주의적 법률주의의 패러다임을 배치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11]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이 추진하려는 법제한류사업도 '법과 개발 운동'의 이러한 시행착오를 참작하여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목적을 설정하고 대상국의 형편을 고려하여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현재 세계적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법제협력사업의 목적으로는 '인권을 기반으로 한 개발'과 '법치주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법제를 전수받기를 원하는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을 희망하여 경제성장과 국가의 발전을 희망하고, 이러한 희망을 법제적 측면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

9) 1960년대의 「법과 개발운동」에 대해서는 David M. Trubek and Mark Galanter, "Scholars in Self- Estragement: Some Reflections on Law and Development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Wisconsin Law Review, no.4, 1974, p.1067 참조. 한인섭·이철우 엮음, 법, 사회, 국가 및 제3세계 — 비판적 비교법사회학을 향하여, 법·국가·저발전, 이성과 현실사, 1986, 123-174면에서 재인용.

10) 한인섭·이철우 엮음, 위의 책, 20면 참조.

11) 브라질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체계의 개혁이 발전도상국가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으로 David M. Trubek, "Toward a Social Theory of Law : An Essay on the Study of Law and Development," *Yale Law Journal*, vol.82, No.1, 1972, pp.40-47 참조.

(1) 인권을 기반으로 한 개발

인권으로서의 개발이라는 개념은 1986년 '유엔인권개발선언'이 채택되면서 공식화 되었다.[12] 동 선언은 여타 인권협약이나 규약과 달리 지구적 차원의 국가 간 관계에 초점을 두고 선진 공여국으로 하여금 무역이나 외채, 기술, 금융 등의 분야에서 개도국이 보다 쉽게 개발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의무를 명시하였다.

1993년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의 성과인 Wien 선언은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며 불가분이며 상호의존적이어서 상호간에 연관되어 있다"고 명시하였다. 나아가 "국가적 및 세계적 독자성의 의의 및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및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나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조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정치적·경제적 및 문화적인 체제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의 의무"라고 하였다.[13]

Wien 인권회의로부터 대두된 '개발에의 인권에 기초한 접근법(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HRBAD)은 인권이 인간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요건이라는 규범적 틀 속에서, 개발의 계획 단계에서 이행·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적용될 참여의 원칙, 책임의 원칙, 세력화의 원칙, 반차별의 원칙이라는 인권적 원칙을 제시하였다.[14]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개발'이란 단순히 경제적인 것으로 환원되어 이해될 수는 없으며, 사회적, 문화적 제반 여건이 성숙하여 국민이 성장된 경제적 규모에 합당한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개발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제한류사업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의 추구를 넘어 인류 보편적 가치의 확장에 기여하고 국가 간 상호협력과 공존의 모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제한류사업을 통해 위와 같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인식과 지평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제한류사업에 대한 목적으로 보편적 인권의 신장이 설정되어야 하며, 사업의 진행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여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기획 아래에서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나아가야 한다.

(2) 법치주의의 달성

'개발'을 경제적인 것을 중심으로 좁게 이해하고 형식적인 의미의 법이 이러한 경제개발의 기초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근대화이론은 법의 지배를 '제도

12) 양영미, "인권을 생각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국제 사회의 개발과 인권의 통합노력과 한국 ODA에 대한 시사점", 국제개발협력, KOICA, 2011. no.1, 16-17면 참조.
13) 김철수, "세계화와 인권국가 - 서론적 고찰, 세계화와 인권국가", 세계헌법연구 제7호,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03. 8, 1면 참조.
14) 이 내용은 양영미, 앞의 논문, 16-17면 참조.

적'이고, '수단적' 개념으로 보는 견해와 맥락을 같이 한다.[15] 전통적 근대화이론의 시초로 평가받는 막스 베버는 근대서구의 법질서가 경제활동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자본주의 발전을 촉진시켰다고 주장하였다.[16] 현대에 이르러서도 계약법, 재산법 등 법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은 시장의 행위자가 안심하고 투자를 계획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는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주장[17]이 유력하다. 서구나 우리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법치주의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예측가능성과 사적 자치의 보장이 창의적인 경제활동의 촉매가 되어 경제성장을 일으키는데 기여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이 형식적 법치주의가 일정 부분 경제성장에 기여한 측면이 있기는 하여도,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삶의 제반여건을 성숙시키는 데에 충분하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권위주의가 종결되고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규범과 법현실의 괴리가 줄어들고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로부터 실질적 법치주의로 이행하면서 비로소 정치·사회·문화의 각 방면에서 실질적 의미의 총체적 개발이 진행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법제한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향해야 할 개발은 바로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에 기반 한 경제·사회·정치·문화적 제반 삶의 여건의 총체적 개발을 의미하여야 한다. 이미 세계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은 동질성의 확장, 보편적 인권 개념의 신장,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에 기초한 평등 개념의 확산으로 경제적 성장과 정치·사회·문화적 여건의 향상 혹은 성숙을 분리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제한류사업의 목적은 개별 대상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실질적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 평등, 복지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법제를 수립·적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법제한류사업의 내용

법제한류사업의 내용으로는 우리나라 법제의 전파와 전수를 위한 사업으로 ①우리나라 법제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교육과 연수프로그램 사업과 ②외국이 법제를 새로이

15) 김대인,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본 법치주의의 개념",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 제4권 제1호, 2010년 여름, 참조.

16) Alan Hunt, The Sociological Movement in Law (London: MacMillan, 1978), p.93 이하. 최대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107면에서 재인용.

17) 좌승희·조성봉, 법치경제 개혁의 길, 한국경제연구원, 2004. 1., 29-37면 참조. 여기서는 법치의 요건을 ① 입헌주의 ② 법의 정부 지배 ③ 사법부의 독립 ④ 법의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적용 ⑤ 법의 투명성과 접근성 ⑥ 법적용의 효율성과 시의적절성 ⑦ 재산권과 경제권의 보호 ⑧ 인권과 지적재산권의 보호 ⑨ 투명하고 공인된 과정을 통한 법개정 및 법변천 등으로 요약하고, 법치를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재산권과 경제권, 지적재산권 등의 보호를 통한 경제활동의 보호를 강조한다.

제정하거나 정비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③외국과 법제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비교연구를 진행하는 학술적 사업인 지속가능한 협의체(Network) 구축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사업은 외국이 법제를 새로이 제정하거나 정비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 즉 법정비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교육과 연수프로그램 사업 그리고 협의체 구축사업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제한류사업의 수행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의한 것과 민간기관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제한류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대법원, 법무부, 법무연수원, 법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법제연구원, 헌법재판소 등이 있으며, 민간기관으로는 아시아법연구소와 애드보캣 코리아 등이 있다.

4. 법제한류사업 현황

우리나라에서 법제한류사업은 1997년 법무부가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국제연수과정(International Workshop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을 개설하여 개발도상국가의 검사와 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 것을 시발점으로 법제한류사업은 계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18]

(1) 우리나라 법제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교육과 연수프로그램 사업

법무부 산하기관인 법무연수원은 1997년부터 한국 법률을 전파하기 위해 외국법조인을 초청하여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 2 ~ 3회에 걸쳐 약 20일 기간으로 운영되는데 체제전환국 및 개도국 법정비 지원, 형사사법제도 운영에 관한 정보 및 의견 교환, 산업시찰,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19].

법무연수원은 2004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후원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비롯하여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 10개국 14명의 고위법관을 초청하여 "제3회 국제형사사법 파트너십 연수과정"을 개최한 바 있으며, 2009년 이용훈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무스타파예프 부리토쉬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대표단이 한국

18) 이하의 설명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국가기관들과의 법제한류사업을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
19) 법무연수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lrti.go.kr/icc/Publication.do?method=FrontList).

을 공식 방문하였다. 양국의 대법원장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사법부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방문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최초의 최고위급 관계자의 첫 한국 방문이며,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사법부 간에 지속적인 인적·물적 교류와 상호 정보교환 및 양국 사법제도에 관한 이해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14년에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국제연수과정'에 우즈베키스탄의 고위법조인을 초청하여 러시아어로 한국의 형사소송제도, 검찰 체계 등 한국의 법제도 및 선진법제를 교육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08년부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바탕이 된 한국 법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8월 라브샨 무히트디노프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대표단을 초청하여 한국의 법제정보 시스템을 소개하고 양국 간 법제정보 교류를 위한 학술대회를 갖는 등 우리나라의 선진법제를 소개하여,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간 법제정보 교류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20]

(2) 외국의 법제를 새로이 제정하거나 정비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

법제처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근간이 된 법제발전 경험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대한민국법제 60년사'를 발간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경제 분야, 2012년도에는 복지·노동·환경 분야, 2013년도에는 일반 행정 분야를 발간하고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법제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대한민국법제 60년사' 번역본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2013년 10월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와 법제교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제 분야 실무자 인적 교류', '법령 정보 교환'및 '법제 경험 등의 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입법조사연구소는 하원의회, 법원 및 검찰 등이 제출하는 법안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또한, 법제처는 2013년 12월 카자흐스탄 법무부, 인문·법률대학 등 법제 관련 기관에'대한민국 법제 60년사' 책자를 기증하여 대한민국의 법제경험을 공유하였고, MOU 체결 및 법제정보의 공유 등을 통하여 양국 간 법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

20) 이 방문은 우리나라의 법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라브샨 무히트디노프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3) 법제한류를 위한 지속가능한 협의체(Network)의 구축

법제처는 법제한류 확산을 위한 협의체(Network)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1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아시아법제포럼(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 AFOLIA)이란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11월 처음으로 열린 아시아법제포럼(AFOLIA)에서는 "법제선진화를 통한 아시아의 공존과 번영"이라는 주제로 Nigmatilla Yuldashev(니그마틸라 율다쉬브) 우즈베키스탄 법무장관을 비롯하여 각국의 법제전문가들은 경제발전과 법제, 법제경험과 법제정보교류, 도시개발법제, 녹색법제, 재난방지법제, 남북법제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21] 2012년 6월 "아시아국가의 법제 교류·협력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열린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AFOLIA)은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법무차관을 비롯하여 아시아 33개국의 법제기관 대표 및 주한 대사관 직원 등 국내외 관계자 2,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IT를 통한 법령서비스 개선과 입법 참여의 촉진"이라는 주제로 주요 분과회의가 열려, IT 기술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및 전자정부 구축과 관련된 법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22]

법제처는 2013년부터 법제한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우즈베키스탄 등을 비롯한 아시아 7개 국가에 개별 법령 또는 법령 관련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하는 등 법제기관과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23]

2013년 11월에는 '제1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 ALES)'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네팔 등 아시아 17개국의 법제전문가 4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대한민국의 법제경험, 아시아와 나눕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우리나라 법제를 중심으로 한 법제교류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관심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24]

2014년 10월 열린 ALES 제2회 회의는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법제의 현황과 발

---

21) 2011년 11월 14일자 법제처 보도자료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 참조 (http://www.moleg.go.kr/news/mglNews?pstSeq=57457&pageIndex=6&searchCondition=AllButCsfCd&searchKeyword=%ec%95%84%ec%8b%9c%ec%95%84%eb%b2%95%ec%a0%9c%ed%8f%ac%eb%9f%bc).

22) 2012년 6월 18일자 법제처 보도자료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참조 (http://www.moleg.go.kr/news/report?pstSeq=59133&searchCondition=AllButCsfCd&searchKeyword=%ec%95%84%ec%8b%9c%ec%95%84%eb%b2%95%ec%a0%9c%ed%8f%ac%eb%9f%bc).

23) 2013년 9월 3일자 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 법제한류 본격 착수" 참조 (http://www.moleg.go.kr/news/report?pstSeq=63374&searchCondition=AllButCsfCd&searchKeyword=%eb%b2%95%ec%a0%9c%ec%a0%84%eb%ac%b8%ea%b0%80).

24) 2013년 11월 13일자 법제처 보도자료 "제1회 아시아법제전문가 교류회의" 참조 (http://www.moleg.go.kr/news/report?pstSeq=64172&searchCondition=AllButCsfCd&searchKeyword=%eb%b2%95%ec%a0%9c%ec%a0%84%eb%ac%b8%ea%b0%80).

전방향'이라는 대주제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전체회의와 카자흐스탄 세션과 우즈베키스탄 세션으로 나누어 양국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특히 IT법제에 대하여 전문적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1회 회의가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법제교류협력에 관한 일반론적이고 탐색적인 성격을 가지는 회의라면 제2회 회의는 구체적이고 각론적인 회의로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법제 교류협력을 실제로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회의였다.

법제처는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아시아 10여개 국가의 법제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법제교류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는 2009년 그리고 카자흐스탄 법무부와는 2014년에 법제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25] 법제처는 세계 각국과 법제 정보교류 채널을 확보하고, 법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법제한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아시아 국가 및 개발도상 국가들과 교류 증진 및 협력 확대를 위하여 국제학술회의, 전문가 초청포럼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 법제연구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법연구소와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법제한류 확산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의체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2005년 9월 한국법제연구원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공동으로 "아시아의 입헌주의와 헌법재판(Constitutionalism and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Asia)"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국제학술회의에는 러시아, 중국, 일본, 대만, 몽골, 필리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호주 등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헌법학자 및 실무가가 참가하여 아시아의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발전과 헌법재판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26]

한국법제연구원은 2004년부터 한국어로 된 "아시아법제연구(Asian Law Studies)"와 영문으로 된 "Asian Law Review"를 연 2회 발간하여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법제관련 기관들 간의 학술교류를 하고 있으며, 2005년 10월에는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sia Legal Information Network: ALIN)를 창립하여 아시아 각국의 법령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기관들이 인터넷상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법률, 판례, 논문 등에 대한 자료들을 공유할 뿐만 아니

25) 2014년 6월 19일 한-카자흐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제정부 법제처장과 이마쉐브 마크히토비치(Imashev Mazhitovich) 카자흐스탄 법무부장관이 서명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목적은 양국 간 법제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인적교류 증진', '법제정보 및 발간물 교환', '법령정보기술 경험 공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6월 19일자 뉴스와이어 보도자료 법제처, 카자흐스탄 법무부와 '법제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참조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55190)).

26) 한국 - 우즈베키스탄 및 한국 - 카자흐스탄 학술포럼 개최 및 쌍방기관 간 기관장회의 결과보고서 참조(http://www.klri.re.kr/kor/news/newsTourView.do?seq=1).

라 법제 연구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일정 연구에 대하여 교류 및 협력을 이루는 네트워크로 활용하도록 하였다.[27]

2007년 한국법제연구원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법제연구원 및 카자흐스탄 법제연구원을 방문하여 법령정보 및 연구 자료의 교환, 연구인력 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 법제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학술포럼 개최를 통해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사업을 통한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 한·우즈베키스탄 및 한·카자흐스탄간의 법제협력을 통한 법제발전을 도모하였다.

27) 한국법제연구원, 2007, 아시아법령정보네크워크(ALIN)사업과 한국·카자흐스탄간의 법제협력 자료집 28-29면 참조(http://www.klri.re.kr/kor/news/newsTourView.do?seq=1).

제3장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의 법제분석

1. 카자흐스탄의 제반 법제 환경 분석

(1) 카자흐스탄의 일반적 소개[28)]

(카자흐스탄 개황, 외교부)

유라시아 국가 중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북으로는 러시아와 남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그 면적은 272만㎢로 한반도의 12배, 세계 9번째로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영토의 대부분은 건조한 계절에는 불모지, 강우 계절에는 푸른 들로 변하는 초원 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부지역은 대부분이 산악지대이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지역에서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의 경제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GDP 총액은 2,255억 달러로 러시아의 1/10 수준이나, 1인당 GDP는 12,933달러로 러시아에 근접해 있다. 국가신용등급이나 기업환경 등에 있어서는 러시아에

28) 카자흐스탄 국가의 일반적 소개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4년 국가별 전자정부 현황 및 수출전망, 2014, 712-716면 참조.

앞서고 있으며, 원유·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석유 매장량은 세계 11위이며,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14위이다. 광물자원의 경우 우라늄, 크롬, 구리 등 세계 10위 내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래로 정치적 안정 속에 2000년부터 국제유가의 상승, 개방정책 등에 힘입어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신용경색으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은 2008년 3.2%, 2009년 1.2%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2009년 하반기부터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10년 7.3%, 2011년 7.5%, 2012년 4.9%, 2013년 6.0%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2014년 1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세계 선진국 30위 진입을 목표로 하는 2050년 카자흐스탄의 길을 발표하면서 혁신산업 강화, 농업혁신, 지식경제기반 조성,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발전, 국민 잠재력 개발을 위한 교육 강화 및 보건 지원, 국가기관의 업무 개선을 7대 우선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1990년부터 장기집권을 이어오고 있으며, 장기집권과 심한 빈부격차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실업률 및 생활수준 개선으로 2011년 4월 95.5% 득표로 4선 연임에 성공하여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29]

(2) 카자흐스탄의 법체계

카자흐스탄은 대륙법계를 취하고 있으며, 헌법, 민법, 형법 등의 실체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 절차법을 가지고 있다. 70년간 구소련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법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구소련과 러시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러시아의 법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 부분 러시아 법제도의 변천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같이 민·상합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상법전을 두고 있지 않고 민법전에 민법의 규범과 상법의 규범이 명시되어 있다.

카자흐스탄 법규법(Закон о нормативных правовых актах: legislative act) 제3조에 따르면 법규는 법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뉘고[30], 카자흐스탄의 법규법 제4조에 따르면 법체계는 다음과 같은 위계를 가진다.[31][32]

---

29) 카자흐스탄 헌법 제42조 제5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최대 3선 연임을 허용하고 있으나, 초대 대통령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0)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법규법(Закон о нормативных правовых актах)은 법률로서 법규의 위계 및 입법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1) 카자흐스탄의 법원(法源)에 관하여는 김한칠 외, 카자흐스탄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한국법제연구원,

1)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 헌법의 개정법률 (законы, вносящие изменения и дополнения в Конс титуцию)

3) 헌법적 법률, 헌법적 법률의 효력을 갖는 대통령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е зако ны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указы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им еющие силу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закона)

4) 코드 (кодексы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5) 법률, 법률적 효력을 갖는 대통령령 (законы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указ ы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имеющие силу закона)

6) 의회명령 및 상•하원의 명령 (нормативные постановления Парлам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и его палат)

7) 대통령령 (нормативные указы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8) 정부령 (нормативные постановл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 ахстан)

9) 부령, 중앙국가기관장의 명령, 중앙국가기관의 명령, 중앙선거위원회의 명령, 국가예산집행 및 관리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명령 (нормативные правовые прик азы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и ины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центральн 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нормативные правовые постановления це нтраль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нормативные постановления Цент ральной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омисси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и Счетного ком итета по контролю за исполнением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бюджета)

10) 조례 및 규칙(нормативные правовые решения маслихатов, нормати вные правовые постановления акиматов, нормативные правовые решен ия акимов)

카자흐스탄 공화국 행정규칙(производному виду нормативных правовых актов)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① 규칙(регламент)

①-1 기술규칙(технический регламент)

①-2 국가서비스표준 (стандар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услуги)

①-3 국가서비스규칙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услуги)

2009, 24-35면 참조.

32) 카자흐스탄에 있어서 비준한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한다(헌법 제4조제3항).

② 규정(положение)
③ 예규(правила)
④ 지시(инструкция)

지방자치단체는 위에서 명시된 행정규칙 이외에도 다른 종류의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령 간에 저촉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고, 법률과 코드 간에 저촉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먼저 개정을 한 후에 적용하며, 위계가 동등한 법령 간에 저촉이 있을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위에서 명시된 법령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위원회의 명령도 있다. 헌법위원회의 명령은 헌법에 기초하여 제정되기 때문에 모든 법령은 헌법위원회의 명령에 저촉될 수 없다.

가. 헌법

카자흐스탄 제헌 헌법은 1993년 1월 28일 카자흐스탄 최고위원회(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Казахстана) 제9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헌법은 전문 4편, 21장, 131조로 구성되어있다. 제헌 헌법에는 자주권과 관련된 국민의 주권, 국가의 독립성, 3권 분립 등의 많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대통령을 국가수반으로 하는 민주 공화국임을 선포하였으며, 고등법원, 헌법재판소, 고등경제법원 등의 법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헌 헌법에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한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5년 8월 30일 국민투표를 통해 현행 카자흐스탄 헌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동 헌법은 1995년 9월 5일부터 발효되었다. 헌법 제1조에서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대통령제 민주·법치 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에는 기본원칙, 개인과 시민의 기본 권리, 국가권력기관(대통령, 의회, 정부, 법원), 헌법위원회, 지방자치, 헌법의 개정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은 전문을 포함하여 총 9장 98조로 구성되어 있다.

나. 헌법의 개정법률

헌법의 개정은 대통령이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정부, 의회의 제안에 따라 국민투표를 시행하여 결정할 수 있다.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 심의를 위하여 송부한 경우에 헌법의 개정은 상하원 각각 의원총수의 3/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2조).

현행 헌법의 제정 이후 1998년, 2007년과 2011년 3번의 개정이 있었다. 1998년 제1차 개정에는 19개의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대통령의 권한 및 임기, 상하원의 권한 및 임기, 공무원의 연령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내용이다.

2007년 제2차 헌법 개정에서는 의회의 지위 강화, 하원의원 선거법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변경하였고, 카자흐스탄 국민회의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켜 상원과 하원에 각각 8명과 9명의 민족회의 대표를 임명토록 해 그 위상을 높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1년에 있었던 제3차 헌법 개정에서는 특별 의회선거를 지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다. 헌법적 법률, 헌법적 법률의 효력을 갖는 대통령령

카자흐스탄의 헌법적 법률은 헌법에 명시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규정한 법률 및 이 법률에 대한 개정 법률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헌법적 법률이 있다:

① 1995년 9월 28일 제정된 카자흐스탄 공화국 선거에 관한 헌법적 법률 제2464호;

② 1995년 10월 16일 제정된 카자흐스탄 공화국 의회 및 상하원의원에 관한 헌법적 법률 제2529호;

③ 2000년 7월 20일 제정된 카자흐스탄 공화국 초대 대통령에 관한 헌법적 법률 제83-Ⅱ호;

④ 2000년 12월 25일 제정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원 체계 및 판사의 지위에 관한 헌법적 법률 제132-Ⅱ호;

⑤ 1995년 12월 29일 제정된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헌법적 법률 제2737호.

라. 코드

코드(code)는 법률보다 상위법령이며 보다 중요한 사회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법률의 일종이며, 일반 법률과 거의 똑같은 형태를 갖지만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국가예산법 등 보다 중요한 사회관계를 법규라고 규정하고 있다.

코드는 일반 법률보다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코드와 일반법률 간에 저촉이 있는 경우 코드가 우선한다(법규법 제6조 제2항).

카자흐스탄에는 다음과 같은 16가지의 코드가 있다:

① 예산법 (бюджетный кодекс)
② 민법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③ 민사소송법 (гражданский процессуальный кодекс)
④ 가족법 (брачно-семейный кодекс)
⑤ 환경법 (экологический кодекс)
⑥ 수자원법 (водный кодекс)
⑦ 토지법 (земельный кодекс)
⑧ 산림법 (лесный кодекс)
⑨ 세법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⑩ 관세법 (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⑪ 노동법 (трудовый кодекс)
⑫ 형사집행법 (уголовно исполненый кодекс)
⑬ 행정위반법 (кодекс 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анарушениях)
⑭ 형사책임법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⑮ 형사소송법 (уголовно-процессуальный кодекс)
⑯ 보건복지법 (кодекс о здоровье народа и систем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마. 법률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사회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은 의회 또는 국민투표로 채택되는 법률이다. 법률은 카자흐스탄 법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법률은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령의 형태이며, 헌법적 법률 및 코드와 관계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며, 하원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후 상원에서 승인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뒤 공포되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

(3) 카자흐스탄의 법제기관

가. 대통령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이다. 국내외 국가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며, 국제관계에서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민족통합과 국가권력의 상징이며 수호자이다. 대통령은 입법부, 행정부와 사법부의 조화로운 기능을 보장하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한다.

대통령은 헌법적 법률에 따라 보통·비밀·평등·직접 선거에 따라 5년 임기로 선출된다. 대통령 선거는 12월 첫 번째 일요일에 시행되며, 의회의 선거와 동시에 진행될 수 없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서 출생한(태어난) 40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하며, 최근 15년간 카자흐스탄에서 거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비공식(임시)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되며 헌법적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에 따라 진행된다.

헌법 제42조 제5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최대 3선 연임을 허용하고 있으나, 초대 대통령에게는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으며, 유급업무 및 기업행위를 실행할 수 없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① 카자흐스탄의 대내외정책 및 기본 방향에 대해 국민에게 연두교서를 할 권리;
② 의회 선거의 지정;
③ 의회의 동의에 따라 총리 임면;
④ 상원의 동의에 따라 국가은행장, 검찰총장, 국가안전위원장의 임면;
⑤ 국가기관의 조직, 변경, 폐지 및 국가기관장의 임면;
⑥ 외교 대표의 임명 및 소환;
⑦ 5년 임기의 중앙선거위원장, 국가예산집행감독감사원장의 임명;
⑧ 국가정책의 승인;
⑨ 총리의 제청에 따라 공무원의 단일연봉시스템 승인;
⑩ 국민투표의 시행 결정;
⑪ 국제조약 협상 및 서명;
⑫ 예산집행감독위원회 위원장 및 2명의 위원 임명(임기 5년);

⑬ 훈장 및 영전의 수여;
⑭ 국적 및 정치망명에 관한 문제 결정;
⑮ 특별사면권 실행;
⑯ 국가비상사태 선포;
⑰ 대통령 경호실 구성;
⑱ 국무장관의 임면;
⑲ 국가안보원, 국가자문기관, 국민회의 및 최고사법위원회 구성;
⑳ 헌법과 법률에 따라 기타 권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근거하여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영토에서 효력을 갖는 명령(указы:decree)과 결정(распоряжения:resolution)을 공포한다.

대통령은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하거나 긴급하게 법안을 심의하도록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경우 의회는 해당 법안을 입안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의회가 대통령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통령은 의회가 법안을 채택하기 전까지 유효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의한다.

대통령, 그의 명예와 존엄성은 불가침성을 가진다.국가는 대통령과 그의 가족의 안전을 책임진다.

나. 카자흐스탄 행정부(내각)

정부는 행정권을 행사한다. 행정기관의 활동을 지휘한다. 정부는 합의체 기관이다. 자신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책임진다. 헌법에 명시된 경우 의회에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부를 구성한다.

총리는 임명된 후 10일 이내에 정부의 구조와 구성에 대한 규정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① 국가의 사회·경제 정책, 국방, 안보 및 사회질서 유지에 관한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집행;

② 국가 예산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의 집행 보장;

③ 하원에 법안의 제안 및 법률집행의 보장;

④ 국가재산의 관리;

⑤ 대외정책 개발;

⑥ 정부의 각 부처, 국가위원회, 기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의 활동 감독;

⑦ 정부의 각 부처, 국가위원회, 기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의 법규의 전부 또는 일부 효력의 취소 및 중지;

⑧ 정부에 속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임면;

⑨ 헌법, 법률 및 대통령령에 명시된 기타 정부의 기능 수행.

헌법 제67조에 따라 총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① 정부의 활동을 조직 및 지휘, 정부의 업무에 대한 책임;

② 정부령에 서명;

③ 정부의 기본 활동과 중요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

④ 정부 활동과 관련된 기타 기능의 수행.

다. 의회

카자흐스탄 공화국 의회는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의회는 상원인 세낫(Senate)과 하원인 마즐리스(Mazhilis)로 구성되어있다.

상원의원은 카자흐스탄의 14개의 주(州), 공화국의 의미를 갖는 2개의 도시 및 수도에서 각 2명씩 선출된다. 대통령이 국가 문화 및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여 15명을 선임할 수 있다. 상원의 임기는 6년이며, 하원의 임기는 5년이다.

하원(마즐리스)은 107명의 하원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98명의 하원의원은 보통·비밀·평등·직접선거로 선출된다. 9명의 하원의원은 '카자흐스탄 민족회의(Assembly of the People of Kazakhstan)에서 선임한다(헌법 제51조).

상하원 합동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①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헌법의 개정;

② 정부와 국가예산집행관리감사원의 보고 승인 또는 거부;

③ 대통령의 요청으로 상하원 재적의원의 2/3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의 입법권 위임;

④ 전쟁과 평화에 관한 사항 결정;

⑤ 대통령 요청으로 국가의 평화 및 안보 유지를 위한 국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군대의 파병에 대한 사항 결정;

⑥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의 헌법의 적법성에 대한 연례보고를 들을 수 있는 권리;

⑦ 의회의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공동위원장의 임면, 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들을 수 있는 권리;

⑧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타 의회의 권한.

다음의 사항은 하원에서 심의 의결 후 상원에 회부한다.

① 국가예산안 논의와 예산안의 집행 및 변경에 대한 논의;

② 세목의 신설 및 폐지;

③ 카자흐스탄 행정구역에 관한 문제 해결 절차 마련;

④ 국가훈장 표창장의 수여;

⑤ 차관문제 및 경제 원조에 관한 사항 결정;

⑥ 사면 결정;

⑦ 국제조약의 비준 및 파기.

헌법 제55조에 따라 상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① 대통령의 제청으로 고등법원장, 고등법원 판사 임면;

② 대통령이 임면한 국가은행, 검찰총장, 국가안보위원장에 대한 동의권;

③ 검찰총장,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의 면책특권 박탈;

④ 헌법적 법률 또는 법률의 채택으로 권한 집행이 임시로 중단된 하원의 기능 수행;

⑤ 헌법에 명시된 상원의 기타 권한의 실행.

헌법 제56조에 따라 하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① 하원에 입안된 헌법적 법률 및 법안에 대한 심의 및 채택;

② 대통령 제청으로 총리의 임명안 동의(재적의원의 과반수);

③ 대통령 선거 공고;

④ 헌법에 명시된 하원의 기타 권한.

(4) 카자흐스탄의 입법방식

가. 헌법상의 입법절차[33)]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입법 발의권은 카자흐스탄 대통령, 하원의원 및 정부가 가지고 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법안 심의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조속히 법안을 심사하도록 촉구하면 의회는 해당 법안을 1달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의회가 대통령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의회가 새로운 법률을 채택하기 전까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령을 발할 권리를 가진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 제61조 제3항에 따르면, 의회는 중요한 사회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할 권리를 가지며, 1) 자연인, 법인의 행위능력, 민사상 권리 및 자유, 자연인과 법인의 의무 및 책임, 2) 소유권 및 여타 물권에 관한 사항,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활동의 근거, 4) 과세 및 여타 징수금, 5) 국가 예산, 6) 사법절차, 7) 교육, 보건, 사회 보장, 8) 기업 및 기업 재산의 사유화, 9) 자연환경의 보호, 10) 국가의 행정지역, 11) 국가의 안보 및 안전 보장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 및 규범 등을 제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들 사항 외의 다른 사항들에 대한 법률관계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한다.

하원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법안은 상원에 송부되며, 상원은 이 법안을 60일 이내에 심의한다. 상원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법안은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명을 받기 위해 송부된다.

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은 하원으로 송부된다. 만약에 하원재적의원의 3분의 2가 법안을 재가결하면 상원에 재심사를 위해서 다시 송부된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다시 부결되면 동 법안은 해당 회기에 다시 회부될 수 없다.

상원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한 법률의 개정안은 하원에 송부된다. 만약에 하원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안은 채택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개정안이 하원에서 부결될 경우 양원이 합의로 조율할 수 있다.

나. 구체적 입법절차[34)]

① 법안의 준비

법안의 준비는 단기(1년)와 장기(1년 초과)로 구분된다. 장기계획의 경우는 중요한 법령 및 입법계획이 1년 이상 필요한 경우에 시행된다.[35)] 입법계획에는 1) 법령

33) 이 부분은 카자흐스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입법절차를 참고하였다.
34) 이 부분은 카자흐스탄 법규법에 의존하였다.
35) 카자흐스탄 법규법 제7조 제1항 참조.

의 명칭 2) 준비 기간 3) 법령을 준비하는 국가기관과 조직과 같은 사항을 명시한다.[36] 법안 준비 시 국가기관, 기타 기관 및 조직의 제안이 고려되며, 학술단체, 국가상공회의소, 기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참고한다. 법령을 준비하는 국가기관은 법안에 도표 및 그래프 등을 기재할 수 있다.[37]

② 법안 작성 절차

법안을 작성하는 기관은 실무그룹이나 실무그룹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내부 조직에 법안 작성을 위임한다. 사업자의 권익과 관련된 법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 하원의원은 실무그룹에 참여할 수 있다.[38] 법안 작성 시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 학술기관, 학자 및 사회단체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법안에는 1) 국장(國章) 2) 법령의 종류 3) 제명 4) 법령의 채택 장소 및 일자 5) 법령의 등기번호 6) 법령에 서명할 권한을 가진 자의 서명 7) 직인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39]

③ 법안의 심사[40]

법안의 심사는 해당 분야의 학술기관, 고등교육기관 및 전문가가 수행한다. 법안 심사는 분량에 따라 심사위원 한 명 또는 여러 명(위원회)이 한다. 법안은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복합적인 심의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외국인 전문가나 국제기구의 전문가도 초빙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이나 국제기구에 송부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원회는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률안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에 회부된다.

④ 법안의 발효

하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법안은 상원에 송부되고, 상원은 60일 이내에 심의하고 재적의원의 과반수에 의해 의결된 법안은 승인된다. 의결된 법안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정부간행물 및 관보에 게재된 후 법적 효력을 가진다. 카자흐스탄 헌법 제4조에 의하면 모든 법률과 카자흐스탄이 비준한 국제조약은 공포되어야 한

36) 카자흐스탄 법규법 제7조 제2항 참조.
37) 카자흐스탄 법규법 제7조 제4항 및 제5항 참조.
38) 카자흐스탄 법규법 제13조 참조.
39) 카자흐스탄 법규법 제17조 참조.
40) 카자흐스탄 법규법 제23조 참조.

다. 시민의 권리, 자유 및 의무와 관련된 법규의 공포는 강행요건이다. 법령공고를 위한 공식간행물은 의회정기간행물, 대통령령집, 정부령집, 중앙집행기구령집, 기타 중앙국가기관령집이다. 이 밖에 입찰을 통해 법령공고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정치 출판물이 법령을 공고할 수 있다.[41]

2. 우즈베키스탄의 제반 법제 환경 분석

(1) 우즈베키스탄의 일반적 소개[42]

(우즈베키스탄 개황, 외교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3,050만 명에 국토면적은 44만 ㎢로 한반도의 약 2배에 달한다. 국토의 북서지역과 중앙지역에는 넓은 초원지대가 펼쳐져 있으며 국토의 71%를 차지하고 카자흐스탄에까지 걸쳐져 있고, 동남지역은 키르기스스탄(Kirgizstan)에 걸쳐 동서로 뻗은 톈산산맥(天山山脈)

41) 김한칠 외, 카자흐스탄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한국법제연구원, 2009, 27면 참조.
42) 우즈베키스탄 국가의 일반적 소개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4년 국가별 전자정부현황 및 수출전망, 2014, 712-714면 참조.

이 위치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GDP 총액은 591억 달러로 카자흐스탄의 1/4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 1인당 GDP는 1,960달러인 비교적 빈곤한 국가로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의 네 번째 교역상대국이다.[43] 2010년 후반부터 추진한 수출장려 정책의 시행으로, 2013년의 수출은 150억 8,72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하였으며,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원료, 원면, 식품류, 철·비철금속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강력한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를 채택하여 정부 통제 하에 점진적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급진적인 경제자유화는 사회불안 유발을 우려하여 지양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이후 8%대의 높은 경제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외환규제, 금융·은행 시스템 및 통관시스템이 낙후되어 외국인 투자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편이다. 최근 이슬람 카리모프(Islam Abduganievich Karimov) 대통령의 지시로 모든 정부기관이 IT를 적용한 업무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환경 개선 조치 등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어, 국제적 투자환경이 최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1년 초대 대통령으로 집권한 카리모프 대통령이 장기집권하고 있지만 안정적 국정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며, 2007년에 실시된 대선에서 88%의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하였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경제 발전과 민주화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2010년 말 시민사회 설립 및 민주개혁을 발표하였으나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4년 4월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통해 총리를 임명토록 하고, 사회·경제 부분 주요사안 관련 내각의 의회에 대한 연례 보고를 의무화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의회가 구성토록 규정하였다.[44]

(2) 우즈베키스탄의 법체계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를 취하고 있으며, 헌법, 민법, 형법 등의 실체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 절차법을 가지고 있다.

법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구소련과 러시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의 법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 부분 러시아 법제도의 변천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 같이 민·상합

43) 우즈베키스탄의 교역대상은 2013년 기준으로 러시아(70.5억 달러), 중국(52.2억 달러), 카자흐스탄(32.2억 달러), 한국(20.2억 달러) 순이다.

44)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제도는 대통령 1인에게 막대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이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대통령을 행정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따로 상법전을 두고 있지 않고 민법전에 민법 법규와 상법 법규가 동시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지며,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영토에서 적용된다. 법률과 기타 법령은 헌법에 기초하여 채택되며, 헌법의 규정과 원칙에 저촉될 수 없다(법규법 제7조).

우즈베키스탄의 법령은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으로 구분된다:

상위법령에는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법률(закон), 의회의 명령(постановления палат Олий Мажлиса)이 있다.

대통령령(указы Президента), 내각령(постановления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정부 각 부처와 국가위원회의 법령(акты министерст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митетов и ведомств), 지방국가권력기관의 결정(решения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на местах)은 하위법령에 속한다.

우즈베키스탄 법규법 제5조에 따르면 법규범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45]

1)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2) 법률(закон)[46]

3) 의회명령(постановление палат Олий Мажлиса)

4) 대통령령(указы Президента)

5) 내각령(постановление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6) 정부 각 부처와 국가위원회의 명령(акты министерст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митетов и ведомств)

7) 지방국가권력기관의 결정(решение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на местах)

법적 효력에 대한 다양한 법령간의 상호관계는 헌법, 법령을 채택한 기관의 권한과 지위 및 법령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법령 간에 저촉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상위법령이 하위법령에 우선하고,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법령 간에 저촉이 있을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일정한 사회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는 정부의 각 부처

45) 우즈베키스탄의 법원(法源)에 관하여는 김한칠 외, 우즈베키스탄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한국법제연구원, 2009, 26-34면 참조.

46) 카자흐스탄과는 달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법규법에 명시적 법규정은 없으나, 우즈베키스탄에 있어서도 법률은 헌법적 법률, 코드(code), 법률로 나누어지고 그 효력순위와 내용은 카자흐스탄과 대략 동일하다고 알려지고 있다(김한칠, 위 논문, 29-30면 참조).

및 국가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은 다른 정부의 각 부처 및 국가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에 우선한다.

(3) 우즈베키스탄의 법제기관

가.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구소련 시절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공산당 제1 서기장을 역임하였고 구소련 붕괴 후 1991년 12월에 직접 선거를 통하여 국민 86%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장기집권하고 있다.

1991년 5년 임기인 대통령에 당선된 카리모프 대통령은 1995년 5월 26일 국민투표에 의해 자신의 임기를 2000년까지 연장하였다. 2000년 대선에서도 92%의 득표로 압승을 거두며 재선되었으며, 2002년 4월에 국민투표를 통해 5년의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다시 연장하였다. 국민지지 등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03년 의회는 카리모프 대통령의 퇴임에 대비하여 “전임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2007년 12월 득표율 88.1%로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강력한 통제력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안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GDP 성장 및 경제발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2년 12월 8일에 제정된 우즈베키스탄 헌법 제14장에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8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국가권력기관의 상호협력 및 일치를 보장한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며, 대통령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으며, 기업활동 등과 같은 유급업무의 수행은 제한된다. 대통령은 불가침권을 가지며 법률에 따라 보호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대통령 제도는 대통령 1인에게 막대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이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대통령을 행정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다:

① 우즈베키스탄 헌법 및 법률의 수호자이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② 우즈베키스탄의 주권, 안보 및 영토의 통일성의 보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

를 취한다;

③ 국내외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대표한다;

④ 우즈베키스탄의 조약을 비준하며, 체결한 조약의 준수를 보장한다;

⑤ 외교사절의 신임 및 소환을 명령한다;

⑥ 상원에 외교사절의 후보를 제청한다;

⑦ 중요한 사회·경제, 대내외 정책에 관하여 의회에 연례 보고를 한다;

⑧ 국가권력기관의 상호협력을 보장한다;

⑨ 상원의장 후보를 상원에 제청한다;

⑩ 의회에 총리 후보의 임면에 관하여 심의 및 승인에 관하여 제청한다;

⑪ 총리의 제청에 따라 내각의 장관을 임면한다;

⑫ 검찰총장과 감사원장(accounts chamber)을 임면한다;

⑬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고등법원장, 고등법원 판사, 고등경제법원장, 고등경제법원 판사, 중앙은행장 국가자연보호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상원에 제청한다;

⑭ 지방법원, 지역법원, 시법원, 군사법원, 경제법원의 판사를 임면한다;

⑮ 우즈베키스탄의 주(州)와 타슈켄트시의 지방정부 대표를 총리의 제청에 따라 임면한다. 대통령은 지역대표가 헌법, 법률을 위반할 경우 해임할 수 있다;

⑯ 자치공화국의 국가관리기관 및 지방정부 대표의 명령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⑰ 법률에 서명하고 공포하며, 법률의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에 법률을 환부(還付)할 수 있다;

⑱ 전시·사변·폭동 등의 예외적인 경우 우즈베키스탄의 전 영토 또는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⑲ 국군최고통수권자이며, 군대의 지휘관을 임면한다;

⑳ 훈장, 메달, 영전을 수여한다;

㉑ 국적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며, 정치적 망명을 허락한다;

㉒ 상원에 사면령의 채택을 요청하고 특별사면을 시행한다;.

㉓ 국가안보청을 구성하고 국가안보청의 청장을 임면한다;

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기타 권한을 수행한다.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전 영토에서 효력을 미치는 대통령을 발한다(법규법 제94조).

나. 우즈베키스탄 행정부(내각)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행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기관이다. 행정부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에 관한 법률[47]」에 근거하여 자신의 활동을 수행한다.

우즈베키스탄 행정부에는 총리 1명, 부총리 9명, 26개 부처장관, 24개 국가위원회위원장 및 카라칼파크 자치공화국 대표(의회의장)로 구성되어 있다.

총리는 대통령이 의회에 총리 후보를 제청하여 임명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한다.

총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① 내각을 조직하고 행정부를 통할한다;

② 내각의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내각회의를 주재한다;

④ 내각령에 서명한다;

⑤ 대통령의 위임에 따라 국제관계에서 내각을 대표한다;

⑥ 법률 및 대통령령에 명시된 기타 권한을 이행한다.

행정부는 법률 및 의회명령, 대통령령의 집행과 경제, 사회 및 종교가 효율적인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행정부는 법안발의권을 가지고 있다. 행정부는 현행법령에 따라 법적 효력이 전 영토에 미치고 국가기관, 기업, 공무원과 시민이 준수해야 하는 내각령을 제정할 수 있다. 행정부는 대통령과 의회에 책임진다.

다. 우즈베키스탄 올리 마즐리스(의회)

우즈베키스탄 최고의 입법 기관은 올리 마즐리스(이하 '의회'라 한다)이다. 의회는 하원인 입법원(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палаты:Legislative Chamber))과 상원인 세낫(Сенат:Senate)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과 상원의 임기는 각각 5년이다.

하원에 해당하는 입법원은 법률에 따라 선출되는 150명의 하원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은 우즈베키스탄의 각 행정구역에서 선출되는 상원의원 100명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원은 12개의 주(州), 타슈켄트시(市), 카라칼파크스탄 자치공화국에서 비밀투표로 각 6명씩 84명이 선출된다. 대통령은 학술, 예술, 문학, 경제 등의 분야에서 경험 및 공적을 가지고 있는 저명한 전문가를 16명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47) Закон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Кабинете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선거일에 25세에 달해야 하며, 우즈베키스탄에 5년 이상 항시 거주해야 한다. 후보자에 대한 요구사항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동일인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겸직하지 못한다.

상원과 하원의 공동 권한에 속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① 우즈베키스탄 헌법의 채택 및 개정;
② 헌법적 법률과 법률의 채택 및 개정;
③ 국민투표 실시 결정 및 시행일 결정;
④ 우즈베키스탄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 결정과 국가전략계획의 채택;
⑤ 우즈베키스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체계 및 권한 결정;
⑥ 우즈베키스탄에 새로운 구성주체의 귀속 및 독립에 대한 결정;
⑦ 세관, 외환 및 차관에 대한 법적 규제;
⑧ 우즈베키스탄 내각에 제출할 국가예산의 채택 및 집행의 감독;
⑨ 조세 및 기타 지불금의 결정;
⑩ 우즈베키스탄 행정구역 및 국경 문제의 법적 규율;
⑪ 지역, 도시, 주(州)의 신설, 폐지, 명칭, 경계의 변경;
⑫ 국가훈장 및 국가작위의 수여;
⑬ 정부부처, 국가위원회 및 기타 국가기관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대통령령의 승인;
⑭ 우즈베키스탄 중앙선거관리의원회의 구성;
⑮ 대통령의 제청에 따라 총리 후보 심사 및 승인;
⑯ 의회 인권대표 및 부대표의 선임;
⑰ 비상사태 등에 대한 대통령령의 승인;
⑱ 감사원 보고서 심의;
⑲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대통령령의 승인;
⑳ 국제조약의 비준 및 파기;
㉑ 우즈베키스탄 헌법에 명시된 기타 권한의 실현.

상기 문제들은 하원에서 먼저 심의 후 상원에서 다시 심의한다.

하원은 다음과 같은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
① 하원의장, 부의장, 각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② 검찰총장의 제청에 따라 하원의원의 불가침권 취소 결정 등;

③ 의회 활동 조직 및 내부규정에 관한 결정의 채택;
④ 정치, 사회, 경제에 관한 명령의 채택.

상원은 다음과 같은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
① 상원의장, 부의장, 각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② 대통령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선임;
③ 대통령 제청에 따라 고등법원장 선임;
④ 대통령 제청에 따라 고등경제법원장 선임;
⑤ 대통령 제청에 따라 국가환경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임면;
⑥ 우즈베키스탄 검찰총장 및 부총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대통령령의 승인;
⑦ 국가안보청장의 임면에 관한 대통령령의 승인;
⑧ 외교사절의 임면에 관한 대통령령의 승인;
⑨ 대통령 제청에 따라 중앙은행장의 임면;
⑩ 대통령 요청에 따라 사면령의 채택;
⑪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상원의원의 면책특권의 박탈에 대한 결정;
⑫ 검찰총장, 국가환경보호위원회 위원장, 중앙은행장의 보고 청취;
⑬ 조직활동 및 내부규칙과 관련된 결정의 채택;
⑭ 정치, 사회, 경제와 관련된 의회명령의 채택, 대내외 문제와 관련된 법령의 채택.

상원과 하원은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대하여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상원 또는 하원의 명령은 재적의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되며, 예외적인 경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4) 우즈베키스탄의 입법방식

가. 헌법상의 입법절차

우즈베키스탄 헌법 제83조에 따르면 입법 발의권을 갖는 주체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우즈베키스탄 의회(Oliy Majlis)의 입법의원(하원의원), 우즈베키스탄 내각, 헌법재판소, 대법원, 최고경제법원, 검찰총장이다. 이들은 법안을 우즈베키스탄 입법원(하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내각에서 새로운 법안이나 여타 법령이 필요한지를 조사한 뒤 법무

부를 통하여, 또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법안의 리스트를 작성한다. 법률의 제안은 대부분 하급 기관에서 상급 기관으로 올라간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이 새로운 법의 필요성을 제의하고 어떤 영역에 어떤 새로운 법이 필요한지를 제시하여 이를 관계부처나 하원에 전달한다. 그러면 해당 부처는 내각과 상원에 알린다. 내각이나 상원은 이것이 합당한 제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장관들이나 기관에 법률 초안을 준비하도록 요청한다.

초안의 마련은 관련 부처의 장관이 하기도 하고 다수의 관계 기관이나 부서가 함께 마련하기도 한다. 하지만 작성된 법안은 모든 관계 부서와 조직들에 사전에 회람 되도록 하여 관련된 부처와 기관의 구성원 간에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의 초안을 여러 가지 형태로 작성하여 그 부서나 기관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기도 한다.

법안이 입법원(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기존의 절차에 맞추어 공식 법률의 형태로 공포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입법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10일 이내에 상원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상원에서 승인된 법안은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대통령은 30일 이내에 이에 서명하고 공포하게 되어 있다(헌법 제84조).

한편, 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은 입법원(하원)으로 돌아간다. 만일 그 법안을 다시 검토하여 하원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법안이 다시 통과되고, 상원의 승인은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대통령에게로 직접 넘어가 서명과 공포를 기다리게 된다(헌법 제84조).

상원에서 부결된 법률에 대하여, 입법원(하원)과 상원은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입법원과 상원의 의원대표들로 이루어진 중재위원회를 결성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일어난 부분에 대한 협상을 시행할 수도 있다. 중재위원회에서 그 법률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그 법은 일반적 과정을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을 다시 상원으로 돌려보낼 권리가 있다(헌법 제84조). 하지만 중재위원회에서 입법원(하원) 의원의 2/3와 상원의원 2/3 이상의 표를 각각 얻었을 경우, 그 법은 14일 이내에 대통령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공포되어야 한다. 법률 및 법령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포가 필수적인 조건이다(헌법 제84조).

나. 구체적 입법절차

① 법안의 준비[48)]

우즈베키스탄의 구체적 입법절차를 살펴보면 법안의 입안을 준비하는 기관은 실무그룹(위원회)을 신설할 수 있다. 실무그룹(위원회)에는 법안 작성기관의 관계자, 해당 분야 정부기관의 관계자, 학술기관의 대표, 기타 기관의 대표 및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비국가기관의 대표 및 시민이 실무그룹(위원회)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안을 준비하는 기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가기관, 학술기관, 기타기관 및 시민에게 계약을 체결하여 법안의 준비를 위임할 수 있다. 법안을 채택하는 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법안을 선택할 수 있다. 각 경제 분야 및 국가관리 분야에 관한 법안의 준비에는 해당 분야의 발전과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의 각 부처 및 국가위원회의 전문가를 초청한다.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법안의 준비에 대한 정부 각 부처와 국가위원회 업무를 법령에 따라 조율한다.

② 사회적 의견 수렴 및 실제 법령의 적용 연구[49]

법안은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일반) 토론 또는 전문 토론을 진행할 수 있으며, 중요한 법안의 경우에는 국민적 논의를 할 수도 있다. 법안 준비기관은 1) 법안의 주제에 따라 법령의 적용 연구 2) 법률 규정의 사회적 필요성 조사 3) 법령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및 조건 조사 4) 국가기관, 자치단체, 기업, 사회단체, 시민, 언론매체, 학술기관의 전문가, 학자의 의견 수렴 5) 다른 국가의 법적 규제의 경험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③ 법안의 심사

법안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법령안 심사를 실시한다. 법령안 심사 중에 해당 법안이 헌법 및 법령에 저촉되는지와 법기술적 규정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심사한다.[50] 법령안 심사는 법령준비기관의 내부 법률 부서 또는 법령준비기관, 법령을 채택하는 기관, 법무부가 행한다. 법무부가 아닌 다른 기관이 법령안 심사를 수행한 경우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다시 법령안 심사를 실시한다. 타슈켄트시와 주(州)의 법제기관은 지방국가기관 명령에 대하여 법령심사를 실행한다.[51]

법령의 규범은 간결하고 명료한 문체로 작성해야 한다. 법령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용어는 이전에 채택된 법령과 일치해야 한다. 구식용어, 다의어, 비표준어와 비교, 비유 등의 표현은 자제한다. 법령에는 예산을 포함한 법령의 시행방법, 촉진법, 관리법을 명시할 수 있다. 법령에는 국가기관, 자치단체, 기업, 조직, 사회단체, 공무

48) 우즈베키스탄 법규법 제19조 참조.
49) 우즈베키스탄 법규법 제20조 참조.
50) 우즈베키스탄 법규법 제21조 참조.
51) 우즈베키스탄 법규법 제22조 참조.

원과 시민의 위반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규를 명시할 수 있다. 또한, 법령에는 목적, 동기를 명시하는 전문(前文)을 포함할 수 있다.

법령에는 1) 법령의 종류와 명칭 2) 법령 채택의 장소, 날짜, 번호 3) 법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권한 있는 서명인의 이름, 직위, 서명과 같은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④ 법안의 입안[52]

준비된 법안은 법령을 채택하는 기관에 법령 채택을 위해 필요사항들인 1) 법안의 개발자, 2) 법안의 특징, 3) 법안에 동의하는 기관, 4) 법안에 반대하는 기관과 그 이유와 같은 사항들이 명시된 안을 제출한다. 필요한 경우 경제지표, 통계자료, 분석자료 등 법령근거를 위한 사실을 기재할 수 있다.

⑤ 법령의 국가등록[53]

정부의 각 부처와 국가위원회는 법령이 채택된 후 10일 내에 법무부에 국가등기를 위하여 통보한다. 새로운 법령이 채택되어 예전에 채택된 구(舊)법령에 저촉되거나 사실상 의미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구법령 전부 또는 일부는 법적인 효력을 상실한다.

⑥ 법령의 공포[54]

법령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올리 마즐리스(의회) 소식지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집 등의 공식 간행물을 통해 발행한다. 공식적으로 공포되지 않은 법률에 근거하여 어느 누구도 처벌을 받거나 재산을 박탈당할 수 없다. 법령을 공식적으로 공포할 경우에는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비공식 게재물에 법령의 공포, 전자시스템을 통한 법령의 게재는 공식적인 공포 후에 허용된다. 또한, 법령에는 필수기재사항 외에 공식적인 간행물과 발효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⑦ 법령의 발효[55]

법률, 의회명령, 지방국가권력기관의 명령은 해당 법령에 다른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공식적인 공포일부터 법적 효력을 가진다. 대통령령, 내각령은 대통령 또는 내각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며, 반드시 공포해야 한다. 정부 각 부처

52) 우즈베키스탄 법규법 제23조 참조.
53) 우즈베키스탄 법규법 제27조 참조.
54) 우즈베키스탄 법규법 제28조 참조.
55) 우즈베키스탄 법규법 제30조 참조.

와 국가위원회의 명령은 만약에 법령에 다른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무부에 국가등록을 하고 10일 이후에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법령은 소급효를 갖지 않으며, 법령의 시행 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법령에 직접적으로 소급효를 명시한 경우에는 법령이 도입되기 전에 관계에 대하여 적용된다.

법령의 해석은 법령의 부정확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적용이 적합하지 않거나, 저촉되는 경우 시행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법률의 해석을 시행한다. 법령의 해석 중에 법 개정을 통하여 법규범을 정확히 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4장 유라시아 국가와의 법제한류사업 분야 도출

1. 유라시아 법제한류사업 대상 선정에 있어서 고려점

(1) '인권을 기반으로 한 개발'과 법치주의

법제한류사업으로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법제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한대로 그동안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나 대략 합의가 된 바와 같이 경제성장(economic growth)과 인권(human rights) 신장을 모두 포섭하는 '인권을 기반으로 한 개발(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HRBAD)'을 지도 이념으로 하여야 한다.[56] 경제성장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국가구성원의 물질적 풍요와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하므로 별다른 이의가 없으나 인권의 신장에 있어서는 상당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인류역사의 발전은 결국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인권 신장의 역사라 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편적으로 추구할 이념으로 인정한다면 인권의 신장을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법제한류사업에 있어서 이념으로 정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제한류사업이 단순히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의 추구를 넘어 전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확장에 기여하고 국가 간 상호협력과 공존의 모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제의 교류협력을 통해 보편적 인권의 원칙에 대한 인식과 지평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57]

그리고 역시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법제한류사업은 구체적으로 법을 통한 그리고 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법이 추구하는 이념인 법치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법치주의의 실현에 있어서도 형식적 법치주의만이 아니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법제신설과 법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

---

56) Wien 인권회의로부터 발달하여 2003년 유엔에서 공식 선언된 '개발에의 인권에 기초한 접근법(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HRBAD)은 인권이 인간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요건이라는 규범적 틀 속에서, 개발의 계획 단계에서 이행·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적용될 참여의 원칙, 책무의 원칙, 세력화의 원칙, 반차별의 원칙과 같은 인권적 원칙을 제시하였다.(양영미, "인권을 생각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국제 사회의 개발과 인권의 통합노력과 한국 ODA에 대한 시사점", 국제개발협력, KOICA, 2011. no.1, pp.16~17). 2003년 유엔개발그룹(UN Development Group)이'개발 협력과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방법에 대한 보편적 이해에 관할 유엔선언'(The UN Statement of Common Understanding on Human Rights-Based Approaches to Development Cooperation and Programming)을 채택하면서 인권으로서의 개발이라는 개념이 공식화되었는데, 동 선언은 여타 인권협약이나 규약과 달리 지구적 차원의 국가 간 관계에 초점을 두고 선진 공여국이 무역이나 외채, 기술, 금융 등의 분야에서 개도국이 보다 쉽게 개발에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를 명시하였다(UN HRBA Portal 참조(http://hrbaportal.org/the-human-rights-based-approach-to-development-cooperation-towards-a-common-understanding-among-un-agencies).

57) 헌법 전문(前文)의 '항구적인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는 문구와 헌법 제10조 등이 법제교류협력사업의 헌법적 근거하고 해석한다.

제교류협력이어야 한다.[58] 법제도의 경우 한번 형성되면 이를 교정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협력대상국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환경과 조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일방 국가의 수익 또는 경제성의 관점이 앞서서는 아니 된다. 법제교류협력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개발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에 기반한 경제·사회·정치·문화적 제반 삶의 여건의 총체적 발전과 성숙을 의미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2) 대상국의 특수성 고려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은 법령과 법제도는 체제전환 후에 일단 정비되었고 이들 국가의 법률가 능력도 종전의 법제교류협력 대상인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의 체제전환 국가에 비해 우수하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30년 이상 시장경제의 경험을 가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는 달리 70년 이상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경제를 운영해왔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에 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자본주의 국가라고 알려져 있지만,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에서는 지식 부족과 지나친 믿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오해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자신의 법률 시스템과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진 나머지, 오히려 그것이 현재의 인식과 평가를 그르칠 위험마저 있다. 따라서 법제한류사업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의 제도 소개와 지식 전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측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 나라의 장점과 부족한 부분을 잘 파악한 후 장점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협력을 제공하여 법제한류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법제교류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59]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은 산업화에 있어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뒤졌지만 정보화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들의 열의가 매우 높다. 이러한 분야에 대하여 법제한류사업을 진행하여 교류협력을 한다면 국가 차원의 참여가 매우 강할 것이고, 또한 정보사회에 있어서의 일반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신장시킬 수 있어 인권신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역과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제는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크게 기여한 분야이고, 소비자보호법이나

58) 이성환, 우리나라 법제협력사업의 이념적 실천적 과제, 법제, 2012.6., 67-69면 참조.
59) 권오승, 법제교류 현주소와 나아갈 길, ALES 제1차 회의 기조연설문, 2013, 4-6면 참조.

공정거래법 등도 제1단계 경제발전이 끝나고 새로운 도약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분야이므로 역시 법제교류협력을 시도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리고 법제한류사업은 대상국의 법제교류협력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그 사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며 추진하는 것은 법제협력사업에 대한 일반원칙인 참여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사업의 효과성도 기대하기 어렵다.[60] 법제한류사업의 대상법제는 먼저 대상국에서 그 협력을 요청하거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한정되어야 한다.

(3)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법제

법제교류협력사업은 서로 다른 내용의 법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 법제와 관련하여 법제정이나 법운용 그리고 법전문가의 지식이나 경험을 교환하여 상호 간에 의도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장점을 살려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로 교류협력하는 법제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법제 분야이어야 효율적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원국에서 원조를 공여하는 국가로 바뀐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개발경험이 우리나라의 최고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개발경험 중 수출주도의 개발전략 특히 무역과 투자의 연계경험이 수원국에 전수할 수 있는 최적의 모범사례라고 일컬어지고 있다.[61]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험을 강조할 경우 내실보다는 가시성에 치우치고 오히려 대상국가들과의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 한국의 특수경험을 강조하다 보면 협력대상국의 개발수요와 협력수용 여건이나 국제규범과의 괴리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여성이나 환경 그리고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해소와 같은 국제적 포괄적 이슈(cross-cutting issue)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교류협력의 효과와 지속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대상국에 대한 지원목표에서부터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추진체계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지원체계를 전략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민법 중심의 법령들을 전략적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법이나 저당권법, 등기법, 지적법 등이 일본이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교류협력

---

60) 참여의 원칙이란 '개발에의 인권에 기초한 접근법(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HRBAD)에서 제시된 개발원칙으로 개발에 있어서 참여는 대상국 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해로운 정책과 결정에 대항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양영미, "인권을 생각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국제 사회의 개발과 인권의 통합노력과 한국 ODA에 대한 시사점", 국제개발협력, KOICA, 2011. no.1, 16-17면 참조).

61) 박근서, 법제수출: 법률 컨텐츠, 법률정보시스템, 법률교육 수출을 통해 개발원조(ODA) 중점사업으로 육성해야, 법제 2011. 9월호, 43-45면 참조.

의 대상으로 한 법령들인데 일본은 대략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관련 법령들을 점진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전수하고 있다.[62]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화에 있어서는 서구 여러 나라에 뒤처졌지만 정보화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최선진국으로 알려지고 있다.[63] 인터넷, 게임, 영화, 가요, 통신 등에 있어서는 최근 발전의 속도가 빠르고 성장성이 강하다. 그리고 전통적인 제조분야인 의류사업, 전자사업, 기계사업, 전기사업 등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있다. 하지만 제3차 산업인 도·소매업이나 금융업 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IT법제를 중심으로 중점적인 법제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도·소매업 분야나 금융법 분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류협력사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법제의 교류협력 대상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뒤처져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보다 다른 경쟁력 있는 나라의 법제를 협력대상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국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경제발전 단계나 정치현실이나 사회적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법제를 더 선호할 수도 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하여야 할 점은 법치주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법조문상으로는 우수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있어서는 이와 달리 시행되고 있는 법분야에 대하여는 결코 법제교류협력의 추진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다.[64]

(4) 법제한류사업의 효과에 대한 고려

법제한류 사업도 대부분 국가의 예산이나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동안 상당한 법제교류지원사업이 국내 기관들 사이에 상호 협의 없이 전시성으로 진행되어 그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극히 미흡하여 사업본래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기존의 법제교류협력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되 중복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65]

---

62) 일본 법무종합연구소 국제협력부 쿠도 강사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법정비사업에 관한 설명 참조(法務総合研究所 国際協力 講師 工藤恭裕 - 200407特集 各国法整備支援の状況, http://www.moj.go.jp/content/000001584.pdf).

63) UN e-Government Survey 2014에 의하면 2014년 전자정부 발전지수 평가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193개국 중에서 1위이고, ITU의 2013년 통신개발지수 통계에서도 우리나라는 157개국 중에서 1위이다.

64) 우리나라의 환경법제나 에너지법제 등은 조문은 우수하나 실제 적용현실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65) 김춘순,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체계의 분절화 현상과 제도적 개선방향, 재정포럼, 2010.7., 40-45면 참조.

(5) 법제한류사업의 진행 요건과 절차

법제한류사업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일종의 원조사업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원조의 효율성에 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하에서의 5대 원칙인 ①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②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공여국 원조의 일치(Alignment), ③ 공여국 간 원조조화(Harmonization), ④ 결과 중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 및 의사결정(Managing for results), ⑤ 공여국과 수원국 간 상호 책임성 강화(Mutual accountability)를 충족하여야 한다.[66]

따라서 법제한류사업에 있어서도 첫째, 법제교류협력의 상대국에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참여와 추진의사가 있어야 한다. 둘째, 상대국의 국가개발전략과 우선순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법제한류사업 추진주체가 동의하고,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도 상대국의 기존의 여건과 성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향후에도 상대국에서 법제한류사업의 대상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다른 법제교류협력 국가들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법제한류사업이 이들 국가의 사업들과 조화를 이루어 중복을 피해야 하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대상사업이 중복되거나 분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이러한 법제한류사업은 사업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구축하며,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제한류사업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상대국은 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통과 개선에 노력하고 향후 사업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67]

법제협력사업의 절차는 수요조사 - 사업선정 - 사전조사 - 실시협의 – 사업진행계획 수립 - 정부 간 합의 - 사업진행자(용역업체) 선정 및 본 사업 시행 – 종료평가 및 사후관리의 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68] 수요조사단계는 대상국 상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를 탐색한 것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심층 조사와 연구 분석을 실시 우리가 이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

66) 네이버 지식백과, 파리선언 (국제개발협력용어집,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장현식, 파리선언의 의미와 우리의 추진방향, 2007.10., (http://blog.naver.com/ok_oda/140112186068) 참조.

67) 정흥교,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트너쉽 모델연구-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공적개발원조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4., 19-25면 참조.

68) 법제협력사업의 절차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ODA사업의 일반적 절차에 일본의 법제정비사업 절차를 참조하여 설명하였다.

2. 법제한류사업 대상에 대한 전문가 의견[69)]

(1) 러시아 전문 류OO 변호사와 면담결과

류OO 변호사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은 국가의 발전 정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방되어 있는 나라로서 외국인투자법제나 외환관리법제 등은 규제가 심하지 않아 외국인의 영업활동이나 투자에 형식적으로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내국인에 의한 경제성장 보다는 외국인의 투자나 자본에 의존하여 경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자본시장 관련 법제도가 잘 갖추어졌는지는 의문이나 실질에 있어서 자본시장은 개방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한국보다도 더욱 활동하기 자유롭다고 한다.

류OO 변호사 개인의견으로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대외적인 공시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 활동에 매우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인의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이를 공식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적인 등기제도가 없고 다수의 정부기관에 확인하여야 하고 이 절차도 공식적으로 확립된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도 통합된 등기부가 없어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러시아는 체제전환 이후에 통합등기부제도를 도입하여 등기부에 의하여 법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통합등기부제도가 러시아에서는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법률관계의 기본이 되는 통합등기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등기법제를 법제교류협력 대상으로 하는 것을 추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등기부를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 우수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권장할 만하다고 한다.

류OO 변호사가 추천하는 다른 분야로는 카자흐스탄이 시장경제의 미발전과 외국사업자의 적극적 활동으로 경쟁질서가 공정하지 못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공정경쟁을 확립하기 위한 공정경쟁법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등은 오랜 기간 시행착오 등을 거쳐 비교적 잘 정비된 제도이므로 이를 협력대상으로 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 다른 분야로 카자흐스탄은 정부조달이 매우 비중이 높음에도 정부계약이나 입찰에 대한 법규가 미비하여 불공정과 부패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 되고 외국이나 기업으로부터도 그 투명성 제고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협정에도 가입하여 법제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

69) 이 부분은 법제한류 전수를 위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교수 등의 전문가로부터 전화통화로 인터뷰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우리나라는 정부조달에 관하여는 '정부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을 비롯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입찰절차도 상당히 잘 정비되어 있으며 또 인터넷으로도 입찰이 잘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제의 교류협력은 카자흐스탄에서도 희망할 것이라고 하였다.

(2) 중앙아시아학과 황OO 교수와 면담결과

황OO 교수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은 체제전환국가이고 오랜 기간 동일한 최고지도자에 의하여 통치되어 온 나라이어서 경제의 활력이 약한 편이고 시장경제의 핵심적 요소인 금융거래나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한다.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주식거래나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제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등을 협력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반면에 반부패나 행정의 투명화 등에 관한 법제에 대한 교류협력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황OO 교수는 우즈베키스탄과 교류에는 형식과 실질이 상당부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법제교류협력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ICT 법제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고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ICT법제의 우수성과 선도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협력대상으로 무난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3) 러시아 기업법 전문 이OO 러시아 변호사와 면담 결과

이OO 러시아 변호사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 체제전환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자본시장에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을 전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등기제도가 미흡하여 공식적으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등기법을 전수하여 공적 장부에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 부동산을 관리하고 공시하여 거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4) 카자흐스탄 전문 윤OO 변호사와 면담 결과

윤OO 변호사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한다. 또한, 유라시아 국가는 구소련 독립 후 러시아의 법제를 전수받아 러시아의 법제와도 유사한 면이 굉장히 많다고 언급하였다. 현재 자본주의 국가라고는 하나 아직도 사회주의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

유라시아 국가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소송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심리기간을 일정한 기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쟁의 장기화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는 규정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 점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민사소송에 특정사건에 검찰이 참여할 수 있는 점도 특이한 사항이라고 하였다.

유라시아 국가에 전수할 법제로는 우리나라가 전자정부의 강국이고 유라시아 국가에서 전자정부법이나 IT법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라시아 국가에 전수한다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높이고 양국 간에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5) 중앙아시아 에너지 정책 전문 김OO 박사 의견

김OO 박사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양국 모두 석유와 가스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서 에너지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로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매우 높은 나라라고 한다. 에너지법 분야에서도 에너지 생산 관련 법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경험이 많고 법제의 현실적용 필요성이 높아 에너지 생산이 저조한 우리나라와 협력할 여지가 적다고 판단하지만, 에너지 유통이나 소비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2차례의 에너지 위기를 거치며 에너지설비나 운영에 있어서 효율을 기하고 또 IT분야의 기술을 이용하여 상당히 발전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부분이 교류협력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양국은 에너지 법제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전기사업법, 석유사업법, 가스사업법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가 부족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가스에너지 등이 풍부하여 현재 재생에너지 사용이 시작단계이고 재생에너지 설비 등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그 제도가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협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에너지법제는 이미 몽골, 중국, 중남미 등에 소개되고 협력이 진행된 적이 있으므로 넓은 의미에 있어서 에너지 법제 교류협력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다만 김OO 박사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이 단기적인 에너지 현안과제 해결에 집중한 측면이 있고 여전히 시장기능보다는 직접적 규제와 관리에 치중함으로써 에너지 산업의 경쟁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점이 있으므로 장차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등과 법제교류협력에서 있어서도 정부주도의 하향식 규제보다

는 에너지시장의 기능을 중시하고 자발적인 수요반응을 포함한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효율 향상과 에너지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6) 러시아 기업법 전문 이OO 러시아 변호사와 면담 결과

이OO 변호사는 유라시아 국가에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을 전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경우 외국인이 자국에 도착 후 3일(72시간) 이내에 거주하는 곳을 등록해야 하는데 관광객의 경우 호텔 등의 숙박시설에 거주자 등록을 해야 하며, 유학생이나 기업인의 경우 아파트에서 임대를 해서 살 경우 집주인과 번거롭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주자등록을 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다고 한다.

또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옮겨갈 때마다 다시 거주자등록을 해야 하고 곳곳에 경찰들이 거주자등록증을 불심 검문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경우 거주자등록기간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변경하였고, 60일 이하까지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해져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였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도 기존의 출입국관리법제를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3. 구체적 대상 검토

(1) 환경법제

개발도상국의 경우 급격한 경제 발전의 필요로 말미암아 환경파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카스피해의 환경파괴 문제를 둘러싸고 수질환경보전, 주민생활 환경 개선 등의 쟁점이 부각되면서 환경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환경법이 법제한류사업의 일환으로 고려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최근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경제부문의 지속적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70]을 위해 환경보호에 관한 법령 개정 및 규제기준을 마련하

70)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는 의미로 1987년 '환경과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됐다. 현재는 모든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초개념이자 세계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유엔환경개발계획(UNEP)에서는 "생태학적 회복력과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는 천연자원의 보존" 합리적 사용 등은 물론 '국내 및 국

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2013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 자연환경 보호, 자연자원 이용, 환경교육,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에 관한 법령 개정 및 규제 기준 마련, 2) 국가와 국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과 환경 안전 보장, 3) 경제의 친환경화, 기술의 진보와 자연보호활동의 촉진, 4) 산업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5)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지역적 협력 강화 등의 5가지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였다.

또한 산업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1) 산업폐기물 유해 영향 예방, 2) 오염된 토지의 복원, 3) 유독성 폐기물 매립지 복원, 4) 舊우라늄광산 지역의 환경 복원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령 개정 및 규제 기준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대기보호법'은 2013년 1차례 개정이 시행되었다. 개정을 통하여 대기를 오염시키는 입자상(粒子狀) 오염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대기보호법 제11조), 국가환경평가에 명시된 조건과 요구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그 행동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만약 유해원을 제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환경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의 명령에 따라 유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시하였다(대기보호법 제13조).

향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대기보호법」의 유해공기 배출 규정을 강화하고 대기보호에 관한 조약의 기준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의 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에서 2013년 12월 28일부터 발효된 「환경관리법」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에 정부는 「환경관리법」의 시행을 위해 국가환경관리 실현에 대한 규정, 환경관리기관에 대한 규정 및 환경관리감시 자에 대한 규정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2013 ~ 2017년 환경 인증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환경안전제품 기준 및 환경기술자격증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에서는 산업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이다. 광업, 가공업 및 중공업 등 2차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산업폐기물의 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카자흐스탄의 폐기물 관리 법제는 미흡한 편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1) 유럽표준에 따라 폐기물 분류 규정 개발 2)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목록화 및 폐기물 환경안전 기준 수립 3) 보건, 안전, 근로 보호 및 환경 부문을 아우를 수 있는 화학 물질 규제에 관한 법령 발의 4) 2015년까지 도시고형폐기물 수집, 이동,

---

제적인 형평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로도 불린다.

가공, 폐기 및 매립에 관한 법령 제정 5) 폐기물 자원순환 활성화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유라시아 국가의 환경법제 개정에 법제협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환경 법제를 법제한류사업의 대상으로 삼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법의 특수성[71]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의 경우 환경법이 정부주도하에 '위로부터의 개혁' 방식으로 형성된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환경법의 경우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이 반드시 양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환경법에 대한 수요에 입각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위로부터의 개혁' 방식은 자칫 국민의 환경법에 대한 수요에 기반하지 못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더구나 '위로부터의 개혁' 방식으로 추진된 환경법이 후술하듯 상징적 수준에 머무르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한다면 자칫 전시행정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 환경법의 경우 규정이 매우 상징적이어서 이를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는 정책입안자들이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환경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동시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그러나 환경법규와 현실의 괴리가 클 경우 환경규제를 담당하는 집행기관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량을 부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환경규제 현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하위명령인 행정입법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게 되면 각종 규율의 법적 성질 내지 그 구속력의 정도 등에 관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환경법은 이른바 복수법주의로서 오염종류별 또는 규제대상별로 여러 개의 독립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체계가 단편적이고 나열적일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단일의 환경법전을 마련해 두고 있고, 독일의 경우 통합환경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사한 개별 법률은 통·폐합하고 기본법·일반법과 개별법의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체계를 다소 간소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의 환경법제 전반을 법제한류사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현재로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71) 조홍식, 우리나라 환경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26면 - 52면; 고문현, 우리나라 환경법의 문제점과 과제, 법학논총 제25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5면 - 13면 참조.

(2) 부동산등기법제

우즈베키스탄에 대하여 일본 등이 민법전이나 저당권법제 등에 대하여 2004년경부터 개정작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등기법제는 형식적으로 조직상으로는 통일되었지만 아직도 실질적으로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72)]

일본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하여 국가별 특설 연수로 2002년도 중소기업 관련법, 2003년도는 토지 제도 모기지 및 담보 제도를 테마로 각각 실시했다. 2004년에는 제3차 사업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연결하기 위한 교육을 목표로 하고 먼저 2004년 2월에는 와세다 대학교수 등이 JICA 단기 전문가로 파견된 우즈베키스탄 법제도의 조사 및 관계 각 기관과의 협의에 임했다. 그 결과 같은 해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파산법에 대해, 경제법원이 경제법원 총회의 의제로 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인식하기에 이르러 일본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일본은 교수들과 ICA 오사카 국제센터 업무과 직원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이 법원의 파산 업무 지원을 프로젝트화 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경제법원의 도산법 관련 서면의 작성 및 교육 과정 개발을 고려하여, 경제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2004년도 국가별 특설 교육은 도산법을 테마로 실시하는 것으로 우즈베키스탄 측과 합의를 하였다.

한편, 민법 개정을 위한 활동 내용은 단기 전문가로 북해도 교수들을 파견하여 우즈베키스탄 민법전을 일역하고 일본 민법을 러시아어 번역하는 한편 현지 변호사들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민법전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는 연구회 등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측과 문제 인식 공유 및 대상기관의 특정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미진하여 과제로 남아있다.

가. 부동산 등기 기관의 통일

종래, 우즈베키스탄의 등록기관은 3개로 나누어져 있어, 상호관계에 문제가 있었지만, 2004년 10월 대통령령에 의해 "국가 카다스톨 위원회"로 통일 되었다. 이에 따라 등록기관은 실제로 등기 실무를 하는 등기사무소(전국 14개소) 및 등기 실무는 실시하지 않고 이러한 등기사무소를 조정하는 "국가 카다스톨 위원회 국민 측지 제도 센터"로 재편 되었다. 단지 조직 형태로는 통일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유럽연합(EU)의 TACIS 계획(동부

72) 일본에 대한 부분은 일본 법무종합연구소 국제협력부 쿠도 강사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법정비사업에 관한 설명 참조(法務総合研究所 国際協力 講師 工藤恭裕 - 200407特集 各国法整備支援の状況, http://www.moj.go.jp/content/000001584.pdf).

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의 민주화·법치 국가성의 강화·시장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조직화가 진행되어 왔지만, 현재는 동 계획에 따라 지원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일본 등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73]

나. 부동산 등기 법제의 정비

부동산 등기 기관의 통일을 받고 현재 "국가 카다스톨 위원회"에 의해 부동산 등기법 제정을 향한 법안 작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① 지금까지 별도의 법령에 따라 행해져 온 건물등기와 토지등기의 통일화, ② 등기의 전산화, ③ 등기 사무소 및 등기관의 법적 지위, ④ 등기 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의 신설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 법안의 초안에 있어서는 네덜란드와 스웨덴, 또는 CIS(독립국가연합) 국가인 몰도바와 키르기스스탄 부동산 등기법이 참조되었다.[74]

우리나라는 일찍이 일본의 부동산 등기법제를 계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등기법제를 확립하고 또 등기부에 의하면 권리관계를 일목요연하게 공시하여 왔다. 비록 등기에 있어서 공신력은 부여하지는 않았으나 공시적 효력은 부여하여 등기를 신뢰한 경우에는 무과실을 인정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또 비교적 잘 정리된 지적법에 따른 지적(地籍)에 따라 일반 국민이 특정 장소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제한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부는 전자정부와 결합하여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컴퓨터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그 사본을 입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먼저 부동산등기법제는 그 선행과제로서 잘 완비된 지적법을 전제로 하는데 우즈베키스탄 등에 있어서 지적법이 잘 정비되었는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다음으로 부동산등기부가 표창하는 권리관계 즉 물권의 권리관계는 그 개별국가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관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과연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가 우리나라 물권법제와 같은 권리관계를 기존에 형성하고 있었는지는 의심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일본 측의 보고서에 의하면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와 같은 등기부

---

73) 일본의 저당권법제 전수에 관한 논문 참조(法務総合研究所 国際協力 講師 工藤恭裕 - 200407特集 各国法整備支援の状況, http://www.moj.go.jp/content/000001584.pdf).

74) 法務総合研究所 国際協力 講師 工藤恭裕 - 200407特集 各国法整備支援の状況, http://www.moj.go.jp/content/000001584.pdf).

의 신속한 발급 등은 광범한 인터넷망을 기초로 한 전자정부를 전제로 하는데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는 현재로서는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이라 기술적 기초가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미 전자정부 시스템을 우즈베키스탄에 전수하고 있고 또 지적제도나 부동산 권리제도 등도 일본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이미 정비되었다고 하므로 이를 전제로 부동산등기 법제를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외국인투자법제

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은 자본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기술이 부족하여 선진외국으로부터 이를 전달받거나 보충하려고 하는데 이때 가장 중심이 되는 수단이 외국인의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가 외국인투자법제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란 외국인이 직접 국내에 자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투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적재산권과 부동산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자산이 이전돼 부를 창조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투자를 포함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다자간투자협정(MAI)에서는 국내 기업의 사업부문과 영업권 등을 외국인에게 매각한 경우도 외국인 직접투자로 본다. 이밖에도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식과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도 외국인 직접투자로 볼 수 있다.[75]

우리나라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외국인투자를 통하여 50년도 안되는 단기간에 일인당 국민소득 100불이하의 최빈국에서 20,000불이 넘는 중진국으로 도약하였다.

한국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962년부터 허용되었으나 1986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은 1억 5,000만 달러, 건수는 80건 정도로 아주 미미하였다. 1984년 외국인직접투자가 원칙적으로 자유화되고, 외국인투자지분에 관한 조건이 완화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직접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끝나고 1966년부터 외자도입의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질적 선별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1960년「외자도입촉진법」을 제정

75)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참조.

한 이래, 1965년까지 외자도입에 관한 기본입법을 정비하는 동시에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도모하고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MF(국제통화기금), IDA(국제개발협회) 등 국제기구와 협력과 참여를 통해 공공차관 도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고, 우리나라 정부는 한일국교정상화에 대비하여 1966년 대일청구권자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외자도입의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둔 「외자도입촉진법」,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및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3개 법을 1966년 8월 「외자도입법」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하면서 외자도입의 질적 통제와 효과적인 규제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외자도입법」은 외자도입정책 방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의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차관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차관도입을 억제하고자 한 것이었다. 1999년 IMF 외환위기 이후 외자도입법이란 명칭의 외자도입에 대한 규제를 주로 하는 법률에서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고 촉진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변경되었다.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성공적으로 이행된 우리나라의 발전모델에서 발전전략을 배우려하는 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한 외국인투자법제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소비에트 사회주의경제에서 현대적으로 선진화된 시장경제로 신속히 이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마시모프 총리가 2014년에서 2016년까지의 국가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정부회의에서 '국유재산의 민영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정부회의에서 정부각료들은 "2014 ~ 2016년 국유재산 민영화계획"을 채택하고 민영화 절차와 실현방법을 논의하였다. 경제예산기획부 장관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국영철도회사 'KTZ' 에너지회사 'Samruk-Energo', 가스공사 'Kaz Munay Gas', 방위사업체 "Kazakhstan Engineering", 국영원자력회사 "Kazatomprom"와 국영전기회사 "KEGOC" 의 자회사 등을 민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회의에서는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한 계획안"을 심의하였으며, 올해 6월 관련부처는 의회에 1) 비자발급절차 간소화(무비자 체류기간 90일 허용), 2) 외국인 투자 절차 간소화, 3) 외국인 투자자의 법적 지위 확대 등에 관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계획"을 승인하였다. 볼랏 자미쉐프(Bolat Zhamishev) 지역발전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안전한 사업환경 조성,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조치 실현,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간에 사회적 협력 관계 강화, 금융재원 조달의 용이성 확대, 신기술의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도 2014년 초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선진국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 터득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시하고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발전과 세계 경제체제에 편입을 계획하였다.

외국인 투자가와 기업의 법적인 지위를 확대하는 개정을 시행하였다. 대표적으로 1998년 4월 30일 제정된 「외국인투자법[76]」과 1998년 5월 21일 제정된 「외국인 투자가의 권리보호의 보장 및 수단에 관한 법률[77]」이 있다.

「외국인투자법」 제19조에는 국가기관, 법수호기관 및 은행은 외국인 투자가와 투자활동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구나 제한을 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우즈베키스탄 내 해외 투자가의 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그들의 권리와 법적인 이익은 국가와 법에 따라 보호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국인투자가의 권리보호의 보장 및 수단에 관한 법률」의 제4조에는 외국자본의 투자, 이용 회수에 관한 조건 및 절차를 대통령령이나 정부령에서 규정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체결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외국투자가 간의 투자계약을 승인하였다. 이 법률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제공하고, 이들의 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외국 자본 유치 정책, 외국인을 위한 세제 혜택, 현대화 설비 도입 등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법제를 법제교류협력의 대상으로 하는데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먼저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과 우리나라의 환경과 역사의 차이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는 나라에서 출발하였으나 이들 나라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외국자본도 상당히 진출하여 차이점이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왜곡되기는 하였지만 일본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경험한 가운데 출발하였는데 비하여 이들 나라는 사회주의 경제의 전통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법과 제도 관습이 강력하게 통일되어 있는 단일국가인데 비하여 이들 나라는 많은 부족으로 나뉘어져 국가의 통합이나 단일한 체제 정립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나 거대 국제자본들이 자신의 이익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득권은 포기하지 않으며 새로운 제도의 정립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과 투

76) 「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77) 「закон о гарантиях и мерах защиты прав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оров」

쟁이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인투자법제는 선진제국이 개발도상국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자립경제 수립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의를 요한다. 법제의 교류협력의 이념 중에서 인권의 신장과 법치주의의 내용을 이루는 국제적 보편규범의 확산이라는 점에서 취약점을 보일 수 있는 분야이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선진화된 나라에서 이러한 법제의 교류협력에 이미 오랜 기간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가 역할을 하기에는 이미 적정시기를 놓쳤다는 문제점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사적으로 유래가 없이 신속하게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는 점과 비교적 정부중심의 위로부터의 계획과 지도에 의한 경제성장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특색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 수원국에서 우리나라에 외국인투자법제에 대하여 그 개정의 법제화작업에 참여를 요청한다면 상당부분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무역관계법제

외국인투자법제에서 이미 설명하였듯이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을 신속하게 이루는 데에는 국내의 경제 사정만이 아니고 외국과의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 외국과의 경제교류와 협력과 관계가 깊은 법제로는 무역관계법 및 무역기관법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최근 경제발전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받는 나라로 중국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성공에는 대외무역 진흥과 해외자본유치를 들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제로는 대외무역법과 외국인투자법을 들고 있다.[78]

WTO(세계무역기구)의 중요 회원국인 미국, 유럽의 여러 나라 등 기존회원국들은 파트너로서 중국과 무역이라는 방식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되지 않은 중국의 대외무역법은 WTO 가입에 중요한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해외무역을 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외국인투자법은 중국의 성공적인 외자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었다. 중국은 이를 단계적으로 개혁하여 현재의 무역 강국이 되었다. 중국의 경우와 같이 대외무역법과 외국인투자법의 개혁은 개도국이 효과적으로 무역대상국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제정비의 필수 과제임을 알 수 있다.[79]

우리나라의 현행 무역법제 및 법제정비경험은 중국보다도 더욱 경쟁력이 있다.

---

78) 문준조, 중국의 WTO 가입과 제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1, 87-89면 참조.

79) 박근서, 법제수출: 법률컨텐츠, 법률정보시스템, 법률교육 수출을 통해 개발원조(ODA) 중점사업으로 육성해야, 법제, 2011.09., 42-43면 참조.

우선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중국과 같은 규모의 인구와 내국시장을 보유하여 소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은 아니어서 중국의 법제정비가 개도국 발전모델이 되긴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면적이나 인구규모가 이들 국가들이 참조하기에 비슷한 경우라 벤치마킹 대상으로 더 좋다. 한편, 개인의 국민소득 증대나 생산성 향상, 그리고 개별기업들의 기술수준 발전전략이나 현재의 발전수준 등 발전모델로서는 한국이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제정비 내지 법제 개발경험을 잘 연구하여, 법제수출정책에 반영한다면 매우 설득력 있는 소프트파워적인 개발원조가 될 수 있다.

법제한류의 대상으로 무역관계법 및 무역기관법제를 선택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전수한다면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의 외환부족 및 인적자원부족을 해결하여 빈곤을 극복할 수 있다.

여기서 무역관계법이라 함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무역행위 자체를 규율하는 법률을 통칭한다. 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무역진흥, 수출입거래, 수출입의 질서 유지를 규율하고 있어 명실 공히 우리나라 무역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관세법은 수출입 통관절차와 관세의 징수를 규율하는 법률이며, 외국환거래법은 주로 수출입 거래에 수반하는 자금결제부분을 규율한다는 측면에서 무역과 관련이 깊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은 무역만이 아니고 자본거래와도 관련되므로 독립적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

무역기관법은 무역지원이나 무역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기관 (정부기관, 준정부기관을 포함한다)의 설립과 업무내용을 정하고 조정하는 법률들을 지칭한다. 예컨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이나 무역보험법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무역관계 법제를 법제한류사업의 대상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역시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차이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원료와 부자재를 도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거나 혹은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완제품을 수출하는 임가공무역이나 제조수출 중심의 무역인데 비하여 이들 국가는 현재 오히려 석유나 광물 등 원자재 수출이 많고 국민의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 소비재를 수입하는 형태로 오히려 우리나라와는 반대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제품의 수출경쟁이 심하지 않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는데 지금은 제품의 과잉생산, 과다공급으로 상황이 역전되어 있어 수출경쟁이 극심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는 무역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에 있어서도 크나큰 차이를 가져왔다. 현재는 무역에 대하여 WTO와 같은 국제기구나 다자간 혹은

양자 간 조약에 의한 규제와 관심이 극심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과거나 현재 법제나 법현실이 이들 나라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법제개혁에 우리나라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의 무역법제에 관한 다양한 시행착오와 그 성과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세계 최고의 컴퓨터망을 이용한 신속하고도 편리한 무역업무의 처리방법은 이들 국가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무역거래와 관련한 서류의 전자문서화와 정부 인허가의 전자처리 등은 경쟁력이 있는 분야이고 이들 국가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역관계법은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의 공무원이나 법조계에서 이미 기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 실정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므로 우리 법제를 전면적으로 전수하기 보다는 이들 국가에 적합하게 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공정거래법제

공정거래법의 범위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를 전제로 시장기구가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광의로는 독점금지법,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규제법, 특수판매법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지만 협의로는 '독점금지법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만을 의미한다.[80]

그런데 법제한류의 대상으로서 공정거래법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범위를 획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분히 정책적인 문제라고 본다. 독점금지법은 한나라의 거시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이므로 타국이 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법이나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등은 사업자 상호간의 관계 보다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 상호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공정거래법과는 다소 성격을 달리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우리나라 법제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행위를 규제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

80) 사법연수원, 공정거래법, 2009, 4-8면 참조.

에 관한 법률'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하여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1960년대 초반부터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되고 기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급속히 성장하여 산업화가 진행되었으나, 경제력의 집중과 경제부문간의 불균형, 인플레의 만연, 독과점의 횡포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1980년대에 와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계속적인 경제발전과 공정경쟁의 촉진, 창의적인 경제활동 그리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이 본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그 후에도 공정거래법은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에 따라 여러 번 원래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우리나라가 경제에 있어서의 산업화와 민주화 내지 공정거래의 달성에 공정거래법이 상당부분 기여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 있어서도 이미 이들 국가가 시장경제로 편입된지가 30년이 지났고 경제 현실에 있어서는 독과점과 불공정경쟁, 경제력의 지나친 집중, 소비자피해의 증대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의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인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상당한 교류와 협력이 있었다. 그렇다면 공정거래법 분야를 법제 한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첫째,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체제전환 이래 동일한 국가지도자에 의한 통치가 계속되고 있어 경제기조 자체를 변경한다는 것이 기존의 통치 자체를 부인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순수한 시장경제에 익숙하고 경제가 사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오랜 기간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통 속에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이들 나라와는 경제상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이 과연 세계적으로 잘 정비된 경쟁력 있는 우수한 법제인가 하는 점에서도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권위주의 체제 속에서 그 기틀을 잡기 시작하여 그 당시 이미 계속적인 경제발전과 경제의 민주화에 이바지 하였고, 또 우리나라도 경제에 있어서 다른 시장경제 국가들에 비하여 국가의 비중이 높아 유라시아 국가들과 그나마 유사성이 높고, 나아가 인권신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공정거래법 분야가 법제협력과 교류의 대상으로 검토되는 다른 경제 법제분야 보다도 강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특히 이들 나라에서 외국 거대자본에 의한 자국 소비자들의 피해를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를 법제교류협력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6) 재생에너지법제

우즈베키스탄은 사회주의 시절에 에너지공급을 실행하던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에너지 공급효율이 떨어진다. 또한 천연자원 부국임에도 이를 상업화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개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크게 개선을 못하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재생에너지법이 부재하여 조속히 제정할 필요성이 크다. 기존의 '원자재시장의 독점제한 및 경쟁법'(1996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1997년), 자연독점법(1997년), 전기에너지법(2009년) 등의 법률에서 일부 재생에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에너지'와 '대체 및 재생 에너지 협의회'가 '대체 및 재생 에너지법안'을 작성하여 현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의 제정 시에는 재생에너지의 개념 정립, 재생에너지 관할기관의 설립, 재생에너지 육성 지원규정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

국제기구,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우즈베키스탄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으나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천연자원은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낮은 에너지 가격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낮아지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주의의 잔재로 아직까지 상용화 기술은 낙후된 것으로 보인다.

낮은 경제성으로 기존 에너지원과 경쟁하기 보다는 농촌 지역 중 가스나 전력 공급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분산에너지원 형태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신축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의무화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된다.

(7) IT법제

IT법제는 21세기에 들어와 정보화가 본격 진행됨으로서 유라시아 국가들 역시 경제개발을 위하여서는 정보화를 신속히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인권의 측면에서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IT 법제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선두 그룹의 IT 강국이며 그 법제도 대륙법과 영미법을 잘 절충시키고 OECD 기준 등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는 법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법제한류사업의 대상으로서는 가장 적절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IT법제는 정보사회에 대응하는 법제이기 때문에 정보사회의 진행 정도 특히 정보통신이나 방송의 기술적 발전 정도에 상당이 의존하는 법제이다. 사회의 정보화나 정보통신기술 수준에 따라 IT법제의 내용도 달라 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로 법제한류사업에 있어서도 당사자국들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의 정보화 진행정도나 정보통신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실제 그 교류협력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의 IT법제 한류사업의 구체적 방안은 두 나라가 서로 IT 분야에 있어서도 그 발전 속도가 다르고 또 그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를 택하여 시행착오를 참작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IT법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전자정부법이 부재한 상황인데, 일찍이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학자들 간에 유럽식 전자정부 모델과 한국식 전자정부 모델의 도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우즈베키스탄 고위층은 우리나라가 세계 전자정부 1위 국가라는 신뢰와 선진 정보기술에 대한 믿음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현재 국가정보통신위원회에 부위원장과 타슈켄트 IT 대학 부총장으로 한국인을 임명하였으며, 2013년 12월 우리나라의 안전행정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전자정부 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한국식 전자정부 모델의 도입이 매우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미 전자정부법 초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 초안에 대한 검토에 한국 법전문가가 참가할 수 있다고 본다.[81] 이 법이 제정되면 우즈베키스탄 IT법제에서 가장 중요한 법제가 될 것이며,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자정부 관련 법령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정보화가 진행되었으므로 전자정부와 같은 보편적인 분야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분야가 법제한류사업의 대상으로 바람직하다. 시장경제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점을 감안하여 시장경제의 폐해를 제어할 수 있는 분야인 소비자보호 분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등이 그 제정의 시급성이나 필요성 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대상이라고 본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7년 9월 10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자상거래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이 전자상거래 시행규칙은 2004년 4월 12일자 「상업활동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2003년 1월 7일자 「전자

81) 전자정부법의 제정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위원회와 각 부처가 합동하여 전자정부에 관한 법안을 이미 작성하였는데 '전자정부' 시스템 일환인 기존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신규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인프라 및 통합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4분기까지 확정법률을 제정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역시 정보통신위원회가 2015년 말까지 '전자정부' 시스템의 일환으로 부처 간 협력 및 데이터 교환에 관한 국가표준을 마련하여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정부' 시스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 및 기업 대상 업무의 온라인 전환을 보장해 주도록 하는데 필요한 법률 개선을 정보통신위원회가 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문서 및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전자상거래의 실행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82] 하지만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를 규정하는 단행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단행 법률이 이미 존재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나 표준약관 등이 만들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법제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83]

IT법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과거 경험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무단수집이나 무단사용에 대비하는 특별한 법적 장치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정보공개의 범위와 한계의 획정 그리고 정보보안을 확보하고, 온라인을 통한 사기적 거래의 방지 등을 위한 법적 장치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경험한 시행착오를 참작하여 유라시아 국가들이 각국의 사정에 맞게 법제를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법제한류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8) 소결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법제한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법제분야를 법제한류사업의 대상으로 하여 법제협력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점은 앞에서 설명한 법제한류사업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고려 점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과 법치주의 달성에 이바지 하여야 하고, 법제협력 대상국인 유라시아국가들의 특수성을 참작하여야 하며,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분야이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법제한류사업 시행의 효과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에 IT법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IT법제는 정보사회에 있어서 '인권을 기반으로 한 개발'과 법치주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점이 큰 법제라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IT법제는 경제성장과 인권신장 내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정보사회에 있어서 법에 의한 통치와 법치주의의 실질적 이념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복지에 이바지 하는 바가 매우 큰 분야이다.

인류문명사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원시 수렵채취사회에서 농업혁명을 거쳐 농

82) 다만 이 규칙의 효력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가조달법」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물품, 용역 및 서비스의 조달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카자흐스탄 공화국 유가증권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증권거래소 및 장외증권시장의 법률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83) 김영신 외, 새로 쓰는 소비자법과 정책, 교문사, 2007, 202-218면 참조.

경사회로 이어지고 산업혁명을 거쳐 산업사회로 그리고 정보혁명을 거쳐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로 발전되어 왔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라는 사회기술을 바탕으로 지식과 정보가 물질자원이나 에너지자원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사회·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84] 정보사회는 초고속정보통신망에 의해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수많은 정보가 디지털화 되어 생산·유통되면서 정보가 상품화되어 그 경제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지식정보산업이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정보화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정보화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정보화에 관한 새로운 법적 규율을 필요로 한다. 정보통신의 원활화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정비와 보호, 정보공개와 전자정부, 정보격차해소, 프라이버시보호, 정보보호 및 지식재산권, 포르노 등 악성정보의 유통, 익명성의 전자게임 등 사이버 중독, 사이버 거래의 안전성과 소비자보호 등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정보사회에 대응하는 법체계인 IT법제라고 칭하는 새로운 법체계는 결국 정보화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함으로 인하여 정보사회로의 진입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정보사회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정보격차, 정보보호, 정보공개와 관련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자기정보결정권 등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둘째, 유라시아 국가들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IT법제가 법제한류사업으로서 적합하다. 유라시아국가들이 비록 산업화에 있어서는 뒤처졌지만 정보화에 대하여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정보사회로 진입하려는 의욕이 매우 강력하다.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은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인데 이들 나라에서 최고 국정지도자인 대통령의 정보화 추진에 대한 열정이 매우 강하고 이에 대한 정부조직 또한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나친 외국자본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여 외국인 투자법제나 무역법제 등에 대하여서 보다는 국내적으로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자정부 등에 대하여 관심이 높다.

카자흐스탄은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산업화의 기반은 최소한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보화에 기반한 산업발전 등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산업화의 신속한 진행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제거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경제력의 집중이나 불공정거래, 소비자피해 등의 문제 등을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진적 정보사회에 신속히 진입하기를 희망한다. 인터넷이나 전자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전자거래를 활성화하면서도 그

84) 최동수, 정보·정보인·정보사회, 법문사, 2012, 36면 참조.

부작용을 막을 소비자보호법제 등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전자정부법안이 준비되고 있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전자상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조문들이 새로이 포함된 소비자권리보호법안이 제출되고 있다.

셋째,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법제라는 측면에서도 IT법제가 법제한류사업으로서 적합하다.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있어서는 뒤졌지만 정보화에 있어서는 성공하여 다른 선진국 보다 오히려 앞서가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그리고 네트워크 분야 등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정보사회에 모범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 분야에서 세계 1위이고 전자상거래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점에서 이 분야들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T법제는 크게 3부문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첫째, 정보사회의 기본이 되는 정보의 생성과 유통의 기술적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의 기반에 관한 법부문 둘째, 정보생산에 관한 법부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이용에 관한 법부문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기반에 관한 법으로서는 전기통신기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이 있고 정보생산에 관하여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전자거래기본법, 지식재산기본법 등이 있으며 정보이용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 등이 있으며 그 외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에관한법률 등 많은 법률이 있다.[85]

이 중에서도 법제한류사업의 대상으로서는 사업 대상국의 사정을 고려하면 우즈베키스탄에 대하여는 전자정부법제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있어서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법제를 대상으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전자정부와 관련한 정보화 부분에 대하여는 그동안 안전행정부가 우즈베키스탄과 구체적 협력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소비자보호 분야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수의 국가와 법제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는 사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법제한류사업도 대부분 국가의 예산이나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중복과 분절화를 피하고 효율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법제분야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기관들 사이에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기관이 책임지고 진행하는 부분을 특정할

85) 다만 최근에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방송법제도 정보통신법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강력하지만 이 글에서는 방송을 제외하고 전통적인 정보통신 분야에 국한하여 설명하였다.

필요가 있다. 법제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입법안에 대한 검토, 자문과 평가 그리고 그 개선안을 제안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정부부처 내에서의 법제처의 위상과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제5장 카자흐스탄과 법제한류사업으로서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검토

1.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법

(1) 전자상거래의 의의와 소비자문제[86]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망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87] 전자상거래는 전통적인 상거래에 비하여 소비자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극복하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정보획득이 용이하여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비대면 거래로 이루어지며, 온라인상에서 영업의 시작이나 폐지가 현실공간에서 영업장을 개점 또는 폐점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대금결제가 선불식으로 상품을 인도받기 전에 미리 결제되는 점 등으로 인하여 허위거래나 사기거래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함으로써 소비자 개인정보의 유출, 통신망의 불법침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함도 사실이다.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주문, 결제, 이행단계 등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즉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88]

전자상거래는 거래주체에 따라 기업과 기업(B-to-B), 기업과 소비자(B-to-C), 소비자와 소비자(C-to-C) 그리고 기업과 정부(B-to-G) 사이의 거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상거래는 초기에는 기업과 소비자와의 B-to-C 거래인 사이버쇼핑몰 형태의 거래가 전형적인 거래형태이었지만, 통신판매자들이 재화를 자신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 등록하게 하고 소비자를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하는 방식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의 오픈마켓 형태로 진화하였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거래에서 백화점과 같이 각각의 판매자들이 판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공간을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여 그 오픈마켓이 하나의 전자상거래로 인식되도록 하는

86) 김영신 외, 새로 쓰는 소비자법과 정책, 교문사, 2007, 196-198면 참조.
87) 2013년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약 1,204조 원 규모이고, 중국의 경우에도 약 10조 2천억 위안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8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 제5호 참조.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89] 나아가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사용하여 공동구매의 구매자 범위를 사회 전범위로 넓혀 집단적인 대규모 구매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력을 강화시키고 판매가격을 대폭 낮추어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앱스토어와 같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오픈마켓(mobile application open market) 형태도 등장하였는데, 이것은 거래대상이 전통적인 재화나 용역이 아닌 유틸리티 프로그램이고, 휴대전화기기 제조업자가 통신회사의 역할을 하여 개발자와 이용자를 연결하여 주는 형태의 전자상거래 형태이다.

전자상거래는 전통적 오프라인 거래와 비교할 때 1) 거래과정에 있어서 물리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여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시간제약 없이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2) 사이버공간에서 상품의 실물 없이 다양한 상품의 종류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히고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수요를 즉각적으로 파악하여 수요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점, 3) 거래의 주문과 배송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재고의 부담이 없고, 점포나 종업원에 대한 비용이 적게 투입되며, 시장진입비용이 적게 필요하여 누구나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이 심화된다는 점, 4)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최소한 중간단계의 유통과정들을 생략함으로써 유통단계에 따른 중간마진을 절약하여 상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 좋은 물건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전자상거래는 최근에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가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거래, 비대면의 격지자간 거래, 즉각적인 거래, 대금 선지급 거래이므로 여러 가지 소비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90]

첫째, 전자상거래는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한 개방적인 네트워크에 의한 거래이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기기나 통신시설의 사용상의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단말기의 조작실수로 다른 상품을 주문한다거나 이중으로 주문한다거나 혹은 취소가 불가능하거나 통신망의 작동불량이나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를 들 수 있다. 단말기 조작실수로 인한 문제는 소비자의 부주의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단시간에 필요한 정보를 읽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신망의 오작동이나 해킹 등에 의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혀 귀책사유가 없는 반면에 다만 그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

89) 오병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전문가 회의 발표문, 2014. 10., 151면 참조.
90) 이종인,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구제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연구보고서, 2005, 11면 참조.

을 야기한다. 개방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의 안전성 문제, 거래당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 신용카드 번호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인적사항과 같은 정보는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이용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심각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는 사이버공간에서 거래당사자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비대면 격지자간 거래이며, 익명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거래되는 상품의 내용도 정확히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온라인상에서 신원확인정보와 상품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허위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문제, 명의도용으로 인한 문제, 사기적인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전자상거래는 격지자간 거래이기 때문에 상품시장에의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반면에 이로 인하여 상품의 배송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소비자 문제 발생 시 청약철회의 어려움, 반품이나 환불의 어려움, 피해구제나 분쟁해결의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전자상거래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거래이기 때문에 상품정보의 취득, 상품의 주문과 매매결정, 대금의 결제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결정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충동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성이 높고, 사업자의 부정확한 상품표시 광고, 부당한 약관 내용 등 부정확한 정보제공에 의한 소비자피해와 소비자가 약관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표시·광고내용에 대한 착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적인 거래에서보다 더 크게 됨을 의미한다.

넷째, 전자상거래는 대부분의 경우 거래의 성립과 상품의 수령이 분리되어, 상품대금을 먼저 지급한 후 실제 상품은 전문적인 제3의 배송업체를 통하여 나중에 수령하는 대금 선지급, 물품 후수령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거래의 성립과 상품의 이전이 분리되고 대금선지급 시스템에서 소비자는 물품 미배송, 배송지연, 피해발생 시 보상의 어려움, 타인명의 도용 등 불법적 거래에 의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2) 전자상거래 계약의 법적 특성[91]

전자상거래도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계약 성립 전의 단계로서 광고나 선전 등을 통한 청약의 유인이 있고,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한다. 대금결제와 상품의 배송과 같은 급부

91) 신현윤, 경제법, 법문사, 2007, 712-713면 참조.

의 이행은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의 이행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청약의 유인, 계약체결, 계약이행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의사나 정보의 전달이 인터넷 등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데이터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오프라인상 구두상의 대면거래나 격지자간의 문서거래를 염두에 둔 기존의 법률시스템에서의 법리로는 해결이 곤란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대두되고, 해석상의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예컨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격지자간의 비대면 거래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계약의 성립, 계약의 취소나 해제, 대금결제와 급부의무의 이행 등에 필요한 전자데이터가 제3자의 행위나 네트워크의 오류로 인하여 상대방에 도달하지 않거나 도중에 변조될 위험이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계약은 통상 전자적 형태의 메시지나 기록 또는 전자문서의 교환에 의하여 체결되는데 전자문서는 기계적 문서이기 때문에 일반문서와는 달리 타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자문서를 위조하거나 기존의 전자문서에 침입하여 내용을 수정·변경하여 변조한 경우 그 위조나 변조를 밝히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92]

또한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나 절차 면에서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소비자가 구매를 재고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일반적 거래와는 달리 착오나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의 경우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전자상거래에서는 컴퓨터나 단말기의 기계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단 의사표시로서 클릭한 후에는 그와 같은 정정이 불가능하다. 그밖에 전자상거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온라인 송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 대금의 선지급이 요구되고 급부의 이행은 추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쌍무계약관계에서 거래당사자에게 인정되고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2.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제적 입법 동향[93]

전자상거래가 각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나아가 국경을 넘어 세계적 규모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각국의 주요 정책 및 입법 현안으로 대두되고 국제적인 공동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OECD,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 EU, ICPEN을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OECD,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의 입법 내용이다.

---

92) 현대호, “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보호법제의 현황과 과제”, 「제1회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토론회」, 2002.5.29., 2-3면 참조(신현윤, 경제법, 법문사, 2007, 713면에서 재인용).
93) 김영신 외, 위의 책, 220-222면 참조.

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9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논의를 가장 먼저 시작하였으며, 국제 공통규범을 정립하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OECD의 분과위원회인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역할, 국제 간 거래발전을 위한 기업환경의 조성,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전자화폐 등 지급수단의 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역시 분과위원회인 재정위원회에서는 관세 및 내국세 문제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직면한 문제, 국제적 공동보조의 필요성, 과세지 결정기준에 대한 핵심 이슈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정보컴퓨터통신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산업의 전체적인 정책방향, 정보경제의 구축, 암호화, 전자서명, 인증, 정보통신 인프라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OECD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중요한 활동으로서는 1998년 10월에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선언, 1999년 12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Guideline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제정, 2003년 6월 국제거래에서 사기·기만적 상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채택을 들 수 있다.

1999년 채택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와 정책을 가진 OECD 각국들이 타협하여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정비와 정책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규범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총 5개 부문(개념정의, 범위, 일반원칙, 이행, 범세계적 협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일반원칙 속에 국제적 거래에서의 소비자불만 처리와 분쟁해결을 위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책무에 관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행 및 범세계적 협력 상에서는 전자상거래 법률체계를 적용하되 대체적 분쟁해결방안(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및 피해구제제도를 소비자가 쉽게 이용하도록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95]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1966년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해 창설된 기구로서 세계무역 관련 법규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2년 UNCITRAL

94) 이 부분은 김영신 외, 위의 책, 220-222면 참조.
95) 이 부분은 김영신 외, 위의 책, 224-225면 참조.

의 제25차 회의에서 전자지급제도에 관해서 심의를 거쳐 'UNCITRAL 국제지급이체에 관한 모델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은 총칙과 당사자의 의무, 지급이체의 불이행, 오류 또는 지체의 효과 및 지급이체의 완료 등 총 4장 19조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 5월 UNCITRAL 제29차 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하였는데, 이 모델법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적용할 법원칙을 제시하고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을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으며, 실제 각국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에 주요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모델법은 총 2장 17개 조항으로 되어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총칙, 데이터메시지에 대한 법적 요건, 법적승인, 문서성, 서명, 원본성, 증거능력, 보존 등의 적용, 데이터메시지의 교환, 물품운송 계약에의 적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한국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의 역사와 내용

(1) 소비자보호법제의 역사와 내용[96]

가. 1960년대 이전

1960년대에 와서 선진국에서는 소비자 문제가 대두되어 이에 대한 입법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지만,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 '소비자보호법'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의식하지 못하였다.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시와 더불어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경제개발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였음에도 이 시기에는 소비자의 권리 또는 소비자의 권익 보장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극히 미약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소비자 문제가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될 여지는 없었다.

다만 이 시기에 독과점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어 간접적으로 소비자 보호정책은 전개되었다. 물가안정의 차원에서 설치된 국무총리실 직속의 국민생활향상심사위원회 내에 소비자보호분과위원회를 두었던 것이 정부에 의한 소비자보호정책의 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68년 국정감사에서 신진자동차 공업주식회사의 폭리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정부는 같은 해 11월 25일 차관회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초의 규범이고, 소비자정책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요강'을 제정하였다. 이로

96) 백병성, 소비자행정론, 시그마프레스, 2003, 85-94면 참조.

써 소비자보호정책의 기본방향이 정해지고 소비자의 권익확보를 목표로 한 법령의 정비가 촉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다만 1955년 서울 YWCA에서 민간차원의 소비자운동을 시작하였고 1960년대에 와서 한국부인회, 대한어머니회가 소비자운동을 시작하였고, 196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소비단체인 한국소비자보호협회가 조직되었다.[97]

나. 1970년대

1970년대는 주부교실중앙회, 부부클럽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회 등 소비자 보호운동을 주도해 온 여성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소비자보호법제의 입법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정부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한 분야별 입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71년 불량상품을 규제하기 위하여 사전품질검사제와 규격품표시제를 실시하였으며, 1972년에는 서울, 부산을 중심으로 가격표시제를 실시하였다. 1975년에는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1976년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들에서는 소비자보호를 법문에 명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1979년 12월 3일 정기국회에서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정책의 새 장을 여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소비자보호법'이 의원입법으로 최초로 제정되었다.

다. 1980년대

1980년의 제5공화국 헌법은 정의국가를 추구한다는 국정지표에 따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규제에 대한 헌법조문을 추가하면서,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하여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을 헌법에 규정하였다. 헌법상의 소비자조항과 함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에서도 소비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소비자보호법은 1980년 1월 4일 공포되었지만 하위 법령이 갖추어지지 않다가 1982년 9월 13일 소비자보호법시행령이 제정되면서부터 보다 체계적으로 소비자보호정책을 추진되게 되었다. 소비자보호법은 직접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소비

97) 장흥섭, 현대사회와 소비자. 경북대학교출판부, 2004, 54-55면 참조.

자의 안전과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에 그 책임을 부과하였다. 소비자보호법으로 소비자보호의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법의 내용이 선언적이어서 실제로 소비자 문제를 종합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그 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였다. 이에 1986년 12월 31일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소비자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을 명문화하였고, 1987년 7월 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되었다.

1987년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당경쟁행위방지법,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으로써 소비자보호가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약관규제법의 제정으로 불공정한 내용을 갖는 약관을 무효화 할 수 있게 되어 전통적인 사적자치의 원리를 보완하고 소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라. 1990년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소비자보호가 가격문제만이 아니라 소비자안전과 품질 그리고 정보제공 등과 같은 소비자보호의 전분야에 확대되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90년대에 주요한 소비자보호법제의 입법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의 개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제조물책임법,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등의 제정을 들 수 있다.

1991년에는 도·소매업진흥법에서 충동구매나 강요·강박에 의한 거래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소비자에게 청약철회(cooling off)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1991년 12월에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이 제정되어 할부계약과 방문판매, 통신판매 그리고 다단계판매에 관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1992년에는 약관규제법을 개정하고 표준약관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였다.

1996년에 OECD에 가입하여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소비자안전의 보장방안이 강구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리콜(recall) 제도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리콜 제도는 1991년 대기환경보전과 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공산품 중 자동차에 처음 도입되었다.

1998년 12월 29일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 1999년 8월 6일부터 시행되었고, 1999년에는 표시·광고법이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99년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마. 21세기

21세기에 들어와 우리나라는 정보화 사회의 본격적 진행에 따라 새로운 상거래 방식으로 등장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등 디지털 경제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제도 강화 및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정보제공기회 확대를 위한 소비자보호 입법을 추진하였다.

2006년에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소비자를 단순히 보호의 객체로 보지 아니하고 '소비자주권'을 가진 자립의 주체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소비자보호 입법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소비자를 사업자에 비하여 정보력이나 교섭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인식에서, 소비자가 경제생활의 주체로서 자기책임으로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 국가는 다만 조력할 뿐이라는 입장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 결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구제에 있어서도 제조물책임, 단체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였다. 실제 소비자의 맞춤선택을 위한 비교정보의 확대 그리고 리콜제도의 활성화 등을 시행하였다.

우리나라 주요 소비자법률의 제정 추이[98]

법률명	제정연도	소관부처
소비자기본법(소비자보호법)	1980	재정경제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86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991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99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998	재정경제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99	공정거래위원회
제조물책임법	2000	재정경제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02	공정거래위원회

(2)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의 역사

20세기 후반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정보화가 사회 모든 영역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상거래에 있어서도 개인 컴퓨터 사용과 인터넷망 이용이 일반

98) 이 표는 김영신 외, 위의 책, 61면 참조.

화되자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성장하였다. 전자상거래도 본질적으로는 상거래이고 또 비대면 격지자간 거래이므로 일반 상거래에 관한 법령과 격지자간 거래에 관한 법령인 통신판매법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따라서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전통적 상거래에 관한 법령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도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디지털 방식의 계약체결이기 때문에 전자거래의 계약에 관한 특별한 법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 등이 새로이 요구된다. 물론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한 시행지침이나 표준약관들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99년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새로이 제정하였고 2000년에는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 등을 마련하였다. 2001년에는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을 제정하였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인터넷 쇼핑몰업', '인터넷 콘텐츠업' 등을 추가하였다. 2002년에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등에서의 소비자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13년 5월 28일 제10차 개정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현재 선진국 수준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99]

(3)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의 구체적 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고, '소비자기본법', '전자문서 및전자거래기본법' 역시 중요하며, 이러한 법률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 등도 실제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999년 2월 8일에 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이 2012년 6월에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으로 법명이 개정된 법률로서 이 법은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그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99) 김영신 외, 위의 책, 202-203면 참조.

하고 있다.[100]

이 법은 제정 이후 2014년 11월 현재까지 26번의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다. 먼저 2002년 1월 19일 전면 개정을 시작으로 2005년 3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고, 또한 2006년 9월 27일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되다. 2012년 6월 1일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들이 대폭 삽입되면서 전면 개정되었으며, 이후 2013년 3월 23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지식경제부의 일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전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2014년 10월 15일 소멸시효의 중단 규정을 신설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자문서나 전자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현재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101]

① 제1장: 총칙

② 제2장: 전자문서(전자문서의 효력과 보관, 송수신의 시기 및 장소, 수신확인과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③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보호, 암호제품의 사용,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시행,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및 사업자 인증에 관한 사항)

④ 제4장: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전자거래 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 책무, 전자거래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⑤ 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 촉진과 그 기반 조성(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전자거래의 표준화, 기술개발 추진, 전문인력 양성, 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전자거래의 국제화, 저자상거래 지원센터 등에 관한 내용)

⑥ 제5장의 2: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⑦ 제6장: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분재의 조정, 자료요청, 조정의 성립·불성립, 조정비용, 위원회의 운영)

⑧ 제7장: 보칙(2012년 6월 1일 신설: 권한의 위임·위탁, 상호주의, 청문)

⑨ 제8장: 벌칙(2012년 6월 1일 개정: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0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 참조.
101) 김영신 외, 위의 책, 203-204면 참조.

1991년 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더 높아짐에 따라 전통적인 통신판매만을 염두에 둔 규정들만으로 전자상거래를 규제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거래가 성립되므로 인하여 서류에 의하여 상당한 시간을 두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통적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102)]

이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정한 거래 또는 공급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를 규정하고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2년 3월 3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전자거래에 관련된 제반 권리·의무 관계와 청약철회, 표시·광고, 배상책임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2012년 2월 17일 전면개정의 형식으로 개정되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통신판매중개자 및 중개의뢰인의 책임 부분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는 없었다. 최근 2013년 11월 29일 개정에서 '구매안전 보호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1회 결제를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서 5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도 '구매안전 보호조치'가 적용되도록 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도록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1장: 총칙(2012년 2월 17일 개정: 법 제정의 목적과 개념 정의)

②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

③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이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제도적 방안)

④ 제4장: 조사 및 감독

⑤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시정권고, 시정조치, 분쟁조정)

⑥ 제6장: 보칙(2012년 2월 17일 개정: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에 관한 내용 등)

⑦ 제7장: 벌칙(2012년 2월 17일 개정)

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의 규정

102) 신현윤, 경제법, 법문사, 2007, 714면 참조.

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예시함으로써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고시하고,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10월 21일 제정되었다.

이 지침은 '일반사항'과 '권고사항'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일반사항'에는 위반행위의 방지 및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권고사항'에서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반사항은 관련 법령의 적용기준을 제시한 부분으로 관련 법령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권고사항에 규정된 내용보다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하며, 그러한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103]

라.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이라 함은 전자상거래 업체가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고객과 서비스업체 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104]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영업 중인 전자상거래 쇼핑몰 업체의 상당수가 거래 약관이 없거나 있더라도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많은 실정을 고려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전자상거래연구조합 등이 청구한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또는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2000년 1월 28일 승인하였다. 이 약관은 전자상거래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PC 통신과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이 약관이 준용된다.[105] 2014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강화하고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을 개정하였다. 온라인 쇼핑몰 가입 시 필수로 입력해야 했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이 최소화되었다. 본 약관은 총 2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103) 김영신 외, 위의 책, 216면 참조.
104) Naver 두산백과, 전자상거래표준약관(電子商去來標準約款) 참조.
105)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1조 참조.

4.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의 내용

(1) 개관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현재 부재한 상황이며, 「카자흐스탄 공화국 상업활동의 규제에 관한 법률」[106]의 제29조에서 전자상거래(Электронная торговля)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제29조 전자상거래(Электронная торговля)

① 카자흐스탄에서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의 구성원이 물품에 대한 매매의 합의(계약)에 따라 상거래 행위를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방법으로 수행된다.

② 전자상거래 구성원의 권리와 법적 이익의 보호는 상업활동 주체를 위해 명시된 절차를 통해 수행된다.

③ 전자상거래의 실현절차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가 승인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자상거래 시행규칙」에 따라 규정된다.

이 법 조항에 의거하여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는 2007년 9월 10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자상거래 시행규칙」[107]을 제정하였다. 이 시행규칙은 서명하고 공포된 날부터 발효되었다.

(2) 소비자보호법의 내용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최초의 소비자법은 구소련이 해체되기 이전인 1991년 제정된 카자흐스탄 사회주의 공화국의 소비자권리보호법(「Закон Казахской Советск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이다.[108] 동법의 장점으로는 소비자권리에 직·간접적인 제한을 두지 않아 소비자에게 광범위한 권리를 부여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구입한 적합한 품질의 물품이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

106)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апреля 2004 года № 544-II О регулировании 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107) 이 시행규칙은 2007년 9월 10일 제정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786호(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0 сентября 2007 года № 786)에 의거하여 법적효력을 가진다.

108) 동법은 1991년 6월 5일 제정되어, 2010년 5월 4일 제정된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존재하였다.

시키지 못하거나 필수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 그 물품을 교환할 권리를 보장하였다. 하지만 사회주의 시절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시장 경제의 원칙은 법에 반영되지 않았고, 1990년대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에 제정되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동법은 폐지되고, 2010년 5월 4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법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 카자흐스탄 공화국 민법, '소비자권리보호법' 및 기타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들로 이루어져 있다. 재정, 사회, 의료, 관광 및 여타 서비스 부문과 소비자 보호 문제에서 소비자의 권리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규정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이 체결한 조약이 이 법률의 여타 규정과 저촉되면 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카자흐스탄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소비자권리보호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2010년 5월 4일 제정되었고 소비자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경제적, 사회적 토대를 정하여 안전하고 질 좋은 물품(용역, 서비스)을 소비자에게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권리보호법에는 소비자보호 부문에서 국가 규제는 이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여타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령 및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에 따라 수행된다고 하고 소비자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담당유권기관, 개별 국가기관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로서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할 권리만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 적합한 품질의 상품을 받을 권리, 반품을 할 권리, 물품에 대한 문서를 받을 권리, 항의를 할 수 있는 권리, 정신적 피해를 배상 받을 권리, 소비자권리와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매자의 권리와 의무로서 보증기간을 정할 권리, 물품(용역, 서비스) 및 판매자(제조자, 수행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물품(용역, 서비스)의 안전성 보장, 물품(용역, 서비스)의 자유로운 선택 보장, 물품(용역, 서비스)의 적합한 품질 보장, 적합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품질의 물품을 교환하거나 환불 받도록 보장, 물품(용역,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건강 그리고(또는) 재산에 입힌 피해의 전부 보상, 카자흐스탄 공화국 세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금전등록기의 설치, 금전등록기에 소비자가 수령하는 영수증 및 금전등록기 적용 절차를 위반한 경우 세무기관에 신고할 권리(해당 세무기관의 전화번호 명시)에 관한 정보의 카자흐어와 러시아어에 의한 명시, 물품의 판매(용역의 수행, 서비스의 제공) 활

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자연인과 그의 성, 이름, 부칭(존재할 경우)을 기입한 명찰(배지)의 착용 및 위생 규정의 준수 보장, 물품의 구매(용역의 수행, 서비스의 제공) 시에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서류의 발급, 명시한 업무 규칙의 준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소비자권리보호법은 특이하게도 용역거래에 관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용역 수행(서비스 제공)의 기간, 수행된 용역(제공된 서비스)에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리, 용역의 수행(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견적, 수행자의 자재에 의한 용역의 제공, 소비자의 자재에 의한 용역의 수행, 용역의 수행(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지불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익숙하지 않은 용역거래에 있어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소비자권리보호법은 소비자단체에 대하여도 규정을 두어 개별 소비자단체와 소비자단체 협의회에 관하여 소비자를 위하여 입법개선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전자상거래 규칙의 구체적 내용

카자흐스탄은 2007년 9월 10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자상거래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이 전자상거래 시행규칙은 2004년 4월 12일자 「상업활동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2003년 1월 7일자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전자상거래의 실행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이 규칙의 효력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가조달법」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물품, 용역 및 서비스의 조달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카자흐스탄 공화국 유가증권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증권거래소 및 장외증권시장의 법률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개념 및 용어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의거하여 적용된다.

가. 전자상거래의 참여자

전자상거래의 참여자는 중개자, 판매자, 소비자로 이루어져 있다. 중개자라 한다는 정보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조직 및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매매의 제안과 관련된 전자문서의 수령, 게재, 보관)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판매자라

한다는 일정 물품의 구매를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소비자라 한다는 해당 물품의 잠재적인 구매자를 말한다.

판매자는 전자상거래의 참여자, 전자상거래규율 부문의 유권기관, 국가세무기관 및 법수호기관이 자신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카자흐어와(또는) 러시아어와 필요한 경우 다른 언어로 명시된 전자형태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명시되는 해당 정보에는 개인사업자의 성, 이름 및 부칭(존재할 경우), 조직형태를 명시한 법인의 명칭, 주소, 법인의 국가등기에 관한 정보 또는 개인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정보, 인·허가증(법령에 명시한 경우), 인·허가증의 번호, 효력 기간, 발급기관명, 납세자등록번호,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상거래의 중개자는 전자정보자원의 파괴, 변형, 왜곡, 복사 및 차단을 실행하기 위해서 접근의 예방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전자정보자원의 보호를 보장한다.

판매자는 중개자에게 구매를 제안하는 전자문서를 게재, 구매의 제안 및 권리를 수여하는 서면계약을 체결한다. 중개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양당사자가 동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금액과 기간에 판매자가 지불한다.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나. 전자상거래 실행의 절차

공증 또는 국가등기를 요하지 않는 계약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전자서명으로 진정성이 인증된 전자문서의 교환으로 체결된다. 전자상거래로 체결된 계약에서 전자상거래의 개별적인 조건은 계약서에 해당 정보 시스템에 게재된 전자 문서를 참조하는 방법으로 명시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게재한 당사자는 계약의 효력 기간 동안 그에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그러한 문서의 보관을 보장한다.

전자상거래계약은 청약에 명시된 기간 내에 승낙을 받았을 때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청약과 승낙은 계약의 본질적인 조건들을 포함해야 한다. 청약에 명시된 계약의 조건은 청약의 수령인이 보관 및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판매자는 물품에 관하여 신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전자형태로 제공한다.

판매자가 보내는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 및 물품에 관하여 소개하는 여타 정보

는 전문지식을 보유하지 않는 대상에게 전자상거래에서 수령하는 정보를 의미가 같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며, 계약의 체결 시에 판매자의 법적인 지위, 소비자에게 제안하는 물품, 물품의 가격 및 구매 조건에 관하여 신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중개자는 전자문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을 수행할 경우 중개자는 전자문서의 이용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양당사자의 동의로 전자문서 수령의 승인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경우(청약, 승낙, 수령한 청약의 승인) 전자문서의 발신인에게 청약의 수령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자상거래의 형태로 체결된 계약에 따른 지불 및 송금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수행된다.

전자문서의 보관을 위해서 이 규칙의 제18조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구성원은 다른 중개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보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잘못된 승인을 보낸 경우에 리콜은 중개자가 수행한다.

5. 카자흐스탄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의 교류협력

(1) 전자상거래의 배경으로서 카자흐스탄의 정보화

카자흐스탄의 정보화 수준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ITU의 2013년 통신개발지수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157개국 중에서 1위인데 비하여 카자흐스탄은 48위이고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은 Access에서 8.28 대 6.60, 사용(Use)면에서 8.22 대 3.71, 기술(Skills)면에서 9.86 대 8.09로 차이가 난다. 그리고 ITU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은 인터넷사용자면에서 84.1% 대 53.3%, 최고속인터넷 가입자 면에서 37.6% 대 9.7%, 무선전화가입자 면에서 110.4% 대 175.4%로 정보화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109)]

나. 카자흐스탄의 정보통신 관련 정부기관

카자흐스탄의 정보통신 관련 기관으로는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 MTC) 국가안보위원회(The National Security Committee, KNB), 정보

109) 안전행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4년 국가별 전자정부현황 및 수출전망-카자흐스탄, 718면 참조.

통신 홀딩 “제르데” (Info-Communication Holding “Zerde”), 국가정보기술원 (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등을 들 수 있다.[110]

교통통신부는 정보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의 후신으로 2012년 내각 개편을 통해 신설된 기관으로 1) 정보통신(Communication) 부문에 국가정책의 개발 및 실현, 2) 정보통신, 통신, 정보화 및 전자정부 구축 부문별 조율, 3) ICT 부문의 국제협력 실현, 4) 정보통신 기술 규제 및 감시를 통해 통신 산업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111]

국가안보위원회는 1992년 7월 13일에 설립된 특별국가기관으로 국민에 직접적으로 종속되며, 국가안보 및 자주권 수호에 대하여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또한, 국가안보위원회는 국가안보 규제뿐만 아니라 방송 및 통신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는데 규제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112]

정보통신 홀딩“제르데”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설립한 주식회사로 2008년 7월 3일 제정된 국가정보통신 홀딩 “제르데” 및 여타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정부령 제668호에 따라 설립되었다.[113]

국가정보통신 홀딩 “제르데”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효율성 경쟁력의 제고, 정보통신 자원 및 기준 개발, 정보통신 분야의 투자 및 이노베이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14]

국가정보기술원(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은 2000년 4월 설립되었으며, IT 프로젝트의 관리 서비스, 전자정부 서비스 도입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을 통해 국가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및 신뢰성의 제고를 미션으로 전자정부와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다.

ICT 관련 협회로는 카자흐스탄 IT기업협회 (Kazakhstan association of IT companies)와 카자흐스탄 통신협회 (National telecommunication association of Kazakhstan)가 있으나, 두 협회 모두 영향력은 낮은 편이다.

다. 카자흐스탄의 IT 추진 현황

카자흐스탄은 CIS 국가 중 오일머니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IT시장 규

110)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안전행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 앞의 책, 721-724면 참조.
111) Положение о Министерстве транспорта и коммуникаций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112) 카자흐스탄 국가안보위원회 홈페이지 참조(http://knb.kz/ru/main.htm)
113)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3 июля 2008 года № 668 « О создании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 «Национальный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холдинг «Арна Медиа», «Национальный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холдинг «Парасат», «Национальный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холдинг «Зерде»
114) “제르데” 홈페이지 참조(http://www.zerde2.isd.kz/O-holdinge/5478/1).

모 확대, 정부의 정보화 의지 등을 고려할 때 IT 성장 잠재성이 가장 높은 시장이다. 또한, 전자정부 서비스 대부분이 대민서비스(G4C)로 국민의 편익 증대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IT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지원과 국민들의 관심, 첨단 전자기기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식이 높은 국가로 IT 사업을 전개하기에 아주 이상적인 국가이다.

16개 주에 총 187개 Public Center가 존재하며, 2011년 8월 전자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위한 인터넷 포털(www.elicense.kz) 운영을 시작하였다.

정치적으로도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형태로의 성공적인 변혁을 도모하고자 국가정책 및 민주적인 의사결정들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이를 통해 open government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카자흐스탄 정부는 정보커뮤니케이션분야를 주요 국가발전전략으로 지정하였다.

2015년까지 20개 도시를 중심으로 4G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으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고려한 정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상황이며, 3G 서비스는 카자흐스탄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제공 중이며, 사용자가 2011년 기준 30만 명 이상을 초과한 상태로 전자상거래의 잠재적 수요와 기대가 매우 큰 형편이다.

카자흐스탄의 IT 산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국가 프로그램은 2003-2015 정보통신기술개발정책(Kazakh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ITRD)인데, 이것은 카자흐스탄 산업혁신 개발 전략(2003~2015)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진행되는 정보통신 인프라 관련 프로그램이다. 정보통신기술 개발 정책의 주요 전략에는 1) 방송통신기술 개발 관련 기준 수립을 위한 법제정 및 투명성 제고 2) 경제활동 기업, 공공기관,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와 통합 수립 3)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 4) 국가정보미디어 및 시스템 구축 사업 관리, 규정 수립 5) 대내외 시장 확보를 위한 전자상거래(e-Commerce) 영역 확대 6) 전자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전자정부개발계획'과 더불어 IT 인프라 고도화 추진을 통해 2014년 카자흐스탄 IT산업 규모가 2009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현재 ICT 인프라 구축(유무선 통신, 인터넷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2004년 7월까지 전자정부 관련 기본적인 법·제도를 제정하고, 카자흐스탄에 맞는 IT 기반 기술 적용하고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보 등 IT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가 진행 중이다.

참고로 2009년 SK C&C가 전자정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우편물류시스템과 관세행정 ISP 컨설팅 사업을 행하는 등 우리나라가 카자흐스탄에 IT관련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라. 카자흐스탄의 소비자보호기관

카자흐스탄의 소비자보호기관은 소비자권리보호청(Агент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이다. 이 기관은 2013년 11월 13일 제정된 소비자권리보호청에 관한 대통령령 제651호(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3 ноября 2013 года № 651 「Об Агент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에 따라 설립되었다.

카자흐스탄은 2013년 보건부를 개편하여 소비자권리보호청을 분리하고 반독점청에서 소비자권리보호에 대한 권한, 카자흐스탄 보건부에서 국민 건강과 질병 관리에 대한 권한 카자흐스탄 산업 및 신기술부에서 기술규정, 식품안전규정에 대한 감독권 및 감사권을 이전 받았다[115].

소비자권리보호청의 구조[116]

소비자권리보호청은 소비자권리보호, 위생 및 전염병 감독, 식품안전규정을 감독하는 집행하는 기관이며, 카자흐스탄의 주, 알마티시 및 각 지역에 산하기관을 두고

115) 2013년 11월 13일 제정된 소비자권리보호청에 관한 대통령령 제651호 참조.
116) 카자흐스탄 소비자권리보호청 홈페이지 참조. 2014년 1월 21일 제정된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령 제21호에 따라 소비자권리보호청의 청장으로 콴디코프 발라트벡(Kuandikov Bolatbek Bayanovich)이 임명되었다.

있다. 소비자권리보호청은 자신의 업무를 헌법, 법률, 대통령령, 정부령, 여타 법령에 기초하여 수행한다.

소비자권리보호청에 주어진 과제는 1) 소비자권리보호 및 위생과 전염병 감독 부문에서 국가정책의 실현 보장 2) 소비자권리보호 및 위생과 전염병의 감독 부문에서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국가기관의 활동 조율 3) 자신의 권한 내에서 소비자권리보호청에 위임된 여타 과제의 수행 등이다.

소비자권리보호청의 기능으로는 1) 소비자권리보호 및 보건 부문의 국가정책의 기초방향을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에 제안 2) 소비자권리보호 및 보건 부문의 국가정책 마련 3) 소비자권리보호청과 국가기관, 자연인, 법인, 비국립기관, 소비자사회단체 간에 상호협력 등을 들 수 있다.

(2)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의 법제한류사업 협력주체

IT법제는 일반 법제와는 달리 기술적 성격이 강하고 또 다른 법령들과도 모순과 충돌이 없어야 하므로 그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교류협력 당사자 국가들의 IT전문가들과 입법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 특히 교류협력을 요청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그 국가의 IT인프라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교류협력을 받아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정하려고 하는 법령이 과연 현실에서 원래의 입법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자흐스탄은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이고 입법에 있어서 실질적 역할은 의회보다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부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입법 전문기관으로는 법제처가 적절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이고 그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가 서로 상의하여 법제한류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제한류사업 그 자체는 법제처가 정부 내의 주된 당사자이고 정부입법의 최종적 검토는 법제처가 하므로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제의 제정에 대한 사업의 주체는 법제처이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실무적으로는 한국소비자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IT기술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상의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적정한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고 본다.

카자흐스탄에서 법제협력을 진행하여야 할 기관으로는 법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법제교류협력사업에 관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카자흐스탄 법무부가 당사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술 분야에 대하여는 카자흐스탄 법무부의 의견과 우리나라 미

래창조과학부나 기타 IT기술 관련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카자흐스탄의 국가정보기술원(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등이 전자상거래의 기술분야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소비자권리보호청의 관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의 법제한류사업 추진절차

우리나라의 카자흐스탄과의 법제교류협력의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일본의 법정비사업에 있어서의 절차 등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 카자흐스탄의 관계 법령 부재의 문제점과 제정방향에 대한 카자흐스탄 법무부나 소비자권리보호청 등 소비자보호 관련 정부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제시, 2) 이러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한국의 법제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카자흐스탄 법무부와 국제적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대화와 토론, 3) 한국의 법제처와 상대국 전문가 참여하에 새로운 법령안의 작성, 4) 이에 대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제시와 토론, 5) 이를 바탕으로 카자흐스탄 법무부가 실제 법령 제정안을 만들어 의회통과와 법률공포 등 최종 입법절차 완료, 6) 이렇게 제정된 법령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새로운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한국의 법제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법무부와 소비자권리보호청 등 담당 정부기관의 전문가나 실무가들의 참여하에 의견교환 등을 행하고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4)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의 법제한류사업의 구체적 내용

가.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소비자권리보호법안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소비자권리보호법안은 2014년 소비자권리보호청이 작성하였으며, 현재 초안의 입안을 준비 중이다. 소비자권리보호법안은 총 제9장 제63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일반규정에서는 정의(제1조), 법원(제2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현행 소비자권리보호법에 규정이 없는 소비자권리보호의 기본원칙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생명, 건강 및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경제적 권리 및 법적 이익을 판매자나 제조자의 권리보다 우선 시 하였다.

또한, 소비자권리보호법의 범위를 소비자, 제조자, 판매자, 수입자, 용역수행자 간에 개인, 가족, 가정 및 여타 소비의 목적으로 물품의 구매(용역의 수행, 서비스의 제공)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로 한정하여, 기업활동 또는 전문활동에서 발생하는 매매는 소비자권리보호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제4조).

현행 소비자권리보호법은 소비자의 권리 침해를 시정하는 명확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비하여 새로운 소비자권리보호법안에는 국가기관이 침해당한 소비자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 소비자권리보호청을 통하여 소비자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소비자가 소비자권리보호청 및 해당 지역의 소비자권리보호기관에 일정요건을 갖추어 판매자(제조자, 수행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면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해당 사실에 대하여 판매자(제조자, 수행자)가 검토 및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판매자(제조자, 수행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가 감독 및 감시법'에 따라 소비자권리침해에 대한 사실을 조사한다(소비자권리보호법안 제12조).

조사기관은 판매자(제조자, 수행자)에게 소비자권리침해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제조자, 수행자)의 영업장에 방문하여 소비자권리에 대한 침해가 명백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소비자권리보호법안 제13조).

또한 새로운 소비자권리보호법안에는 판매자(제조자, 수행자)가 소비자와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생명, 건강,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판매자(제조자, 수행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규정, 판매자(제조자, 수행자)가 계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 소비자가 계약의 따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물품(용역, 서비스)의 50% 이상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 판매자(제조자, 수행자)가 계약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락한 규정 등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으로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소비자권리보호법안 제17조).

또한, 계약서에 소비자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전문적인 용어를 쓰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글자의 크기를 너무 작게 하거나 보이지 않는 색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명시하는 사항도 금지하였고, 계약의 규정에 이중적 의미가 있거나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은 소비자에게 유용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소비자권리보호법안 제17조).

나. 소비자권리보호법안 중 전자상거래 규정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청에 게재된 새로운 소비자권리보호법안의 제50조에는 전자상거래(Электронная торговля)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소매계약은 판매자가 전자통신을 통해 물품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토대로 체결된다.

2. 판매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물품에 관한 정보, 계약 제안의 유효한 기간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3. 소비자에게 물품을 전달할 경우 서면으로 물품과 판매자의 정보 및 물품의 반품 절차와 그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소비자는 물품이 배송되기 전에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권리를 가지며, 물품의 배송 후에는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

적합한 품질의 물품 반환 절차 및 기간에 대한 정보가 물품의 전달 시에 서면형태로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는 물품을 배송 받은 시점으로부터 3달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적합한 품질의 물품을 반환할 경우 상품의 형태, 특성, 구매한 물품의 사실 및 조건에 대하여 명시된 서류가 갖추어야 가능하다. 구매한 물품의 사실 및 조건에 대하여 명시된 서류가 없을 경우에도 해당 판매자에게 물품 구매한 다른 증거를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만약에 특정물(特定物)을 취득한 소비자만이 물품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가질 경우 소비자는 적합한 품질의 특정물(特定物)에 대해서 청약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소비자가 물품계약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할 경우에 판매자는 계약에 따라 지불받은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단,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청한 일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 판매자가 반품에 소비되는 비용은 제외로 한다.

5. (제50조에 제5항에 대한 규정은 빠져있었음)

6. 계약서에 별도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의 승낙을 받은 날로부터 13일 이내에 물품을 제공해야 한다.

주문한 상품이 부재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판매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7. 적합하지 않은 품질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제41조 ~ 제47조 규정을 준용한다.[117]

---

117) 소비자권리보호법안에서 제41조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의 권리, 제42조 적합하

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법제에 관한 협력방안

카자흐스탄의 정보화 수준은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나지만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왔기 때문에 높은 수준에 속한다. 인터넷 가입자가 2009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현재는 200만 명 이상이며, 인구 100명당 휴대폰 가입자도 2013년 기준으로 177명을 돌파하는 등 전자상거래가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을 갖추었으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에 대한 규정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이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규를 어느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을 신설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규정할 것인지, 현 소비자권리보호법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전자상거래를 규정하고 있는 "상업활동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권리보호법"에 부족한 규정을 보완할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이 초안이 나온 소비자권리보호법에 규정된 전자상거래의 조문 내용이 예전 보다 상세하여진 것을 보면 두 번째 방법을 일단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내용이 여전히 빈약하여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문제를 모두 규율하기에는 부족하다. 만약 이 방법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표시광고의 기록보존의무, 조작실수 등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절차구비, 공급절차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등 많은 사항들에 대한 추가 조문이 필요하고 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들이 필요하다.

둘째,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과 표준약관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모든 사항을 법에 규정하지 못하고 또 그 구체적 내용을 적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자율준수를 위한 지침과 표준약관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지침과 표준약관의 존재는 사후에 사업자와 소비자와의 법규의 미비나 불명확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지침이나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보호지침이나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게 고지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지 않은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제출 기간, 제43조 제조자(판매자)의 물품의 결함 제거, 제44조 적합하지 않은 품질의 물품 교환, 제45조 소비자 개별적인 요구의 만족 기간, 제46조 소비자 요구 수행의 기일 경과에 대한 책임, 제47조 판매자가 사전에 금액을 지불한 물품(서비스)의 양도 기간의 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계약에의 가입을 필수화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셋째, 소비자가 믿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급지급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착오로 인한 전자적 대금지급을 신속히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하고, 잘못된 지급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이나 에스크로 제도 등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사업자, 전자결제수단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제공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정보의 보안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크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무단사용이나 타인에게의 교부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 다만 이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제에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종합적 입장에서 보완하여야 한다.

넷째, 사업자는 전자적 대금지금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물품의 내용 및 종류, 물품의 가격 등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이 고지에 대하여 소비자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새로운 소비자권리보호법안에 소비자에게 물품을 전달할 경우 서면으로 물품과 판매자의 정보 및 물품의 반품 절차와 그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여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새로이 서류를 요구한다는 것은 전자상거래의 신속성, 간편성, 비용 절감성 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온라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섯째, 카자흐스탄에서 최근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전자상거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권리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법이나 전자상거래 시행 규칙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부재하다. 다만, 전자상거래 시행 규칙 제5조에 판매자가 사업자의 명칭, 주소, 법인의 국가등기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국가기관 등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 카자흐스탄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비교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시행 2013.11.29.] [법률 제11841호, 2013.5.28., 일부개정]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시행 2013.11.29.] [법률 제11841호, 2013.5.28., 일부개정]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주소·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자상거래 시행규칙 [2007.9.10., 제정 및 시행]
제5조 판매자는 전자상거래의 참여자, 전자상거래규율 부문의 유권기관, 국가세무기관 및 법수호기관이 자신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카자흐어와(또는) 러시아어, 필요한 경우 다른 언어로 명시된 전자형태의 정보에 <u>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u> 해당 정보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개인사업자의 성, 이름 및 부칭(존재할 경우), 2) 조직형태를 명시한 법인의 명칭, 주소, 법인의 국가등기에 관한 정보 또는 개인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정보. 3) 인•허가증(법령에 명시한 경우), 인•허가증의 번호, 효력 기간, 발급기관명, 납세자등록번호,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다만, 전자상거래 시행 규칙 제5조에 판매자가 사업자의 명칭, 주소, 법인의 국가등기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국가기관 등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상호,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단,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예외를 두고 있다.

또한, 동법 제13조에서는 신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기재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신판매업자의 국가기관 등에 사업자 신고 의무제도 및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에 그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를 신뢰할 수 있게 하여 거래의 신속을 도모하고 전자상거래를 안전화하는 법적 장치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

여섯째,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시행 규칙 제20조에서 "정보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잘못된 승낙을 보낸 경우에 반환은 중개자가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오작동의 빈번히 발생하여 거래의 신뢰성이 낮아지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작의 실수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카자흐스탄에서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령에는 배송사업자와 사업자 통신판매업자 간에 배송 사고 및 배송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등을 배송하는 사업자는 배송 사고나 배송 장애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배송을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분쟁의 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에서 배송 관련 기록의 열람·제공하도록 하고 사고 또는 장애 관련 사실의 확인을 위한 기록 열람에 대하여 지체 없이 협조[118]하여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덟째, 카자흐스탄에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법령으로는 상업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전자상거래 시행 규칙 등이 있으나 아직까지 전자상거래의 개념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결국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전자

1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참조.

상거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처리되는 방법으로 행하는 상거래라고 정의 할 수 있다.[119]

카자흐스탄에서도 조속히 "전자상거래"의 개념을 정립하고 법률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아홉째, 전자상거래에 관한 분쟁은 일반적으로 소액, 다수의 분쟁이 많으므로 이를 소송으로 해결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적 측면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소액, 다수의 분쟁해결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소송외 분쟁해결방안'(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이 적합하므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분쟁에도 ADR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조정기관을 설치하여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하여는 이 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조정불성립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비자단체에 의한 알선이나 조정에 의한 방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므로 이러한 제도 역시 법령에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 소비자권리보호법이나 전자상거래 시행 규칙 등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소비자의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약철회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7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일반적으로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청약철회는 아직까지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카자흐스탄 소비자권리보호청이 소비자권리의 신장 및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 작성한 소비자권리보호법안 제50조 제4항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청약의 철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한국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제17조 청약철회 규정과 비교하여 보았다. 한국의 소비자보호에 있어서 청약철회 규정은 도입 된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각 조건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판매자 측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어 한국의 청약철회 제도에 대하여 카자흐스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것으로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119) 김두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12면 참조.

한국 - 카자흐스탄 소비자 청약철회 조항 비교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시행 2013.11.29.] [법률 제11841호, 2013.5.28., 일부개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카자흐스탄 소비자권리보호법안[120]
제50조(전자상거래) 4. 소비자는 물품이 배송되기 전에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권리를 가지며, 물품의 배송 후에는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할 권리를 가진다. 적합한 품질의 물품 반환 절차 및 기간에 대한 정보가 물품의 전달 시에 서면형태로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는 물품을 배송 받은 시점으로부터 3달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적합한 품질의 물품을 반환할 경우 상품의 형태, 특성, 구매한 물품의 사실 및 조건에 대하여 명시된 서류가 갖추어야 가능하다. 구매한 물품의 사실 및 조건에 대하여 명시된 서류가 없을 경우에도 해당 판매자에게 물품 구매한 다른 증거를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만약에 특정물(特定物)을 취득한 소비자만이 물품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가질 경우 소비자는 적합한 품질의 특정물(特定物)에 대해서 청약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소비자가 물품계약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할 경우에 판매자는 계약에 따라 지불 받은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단,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청한 일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 판매자가 반품에 소비되는 비용은 제외로 한다.

위 표에서 보다시피 카자흐스탄의 소비자권리보호법안에서는 물품이 배송되기 전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물품의 배송 후에는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결국 청약철회권의 기간은 물품을 배송 받은 후 14일로 우리나라의 청약철회권 행사기간과 달리 정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소비자권리보호의 전문가인 미라스 두렌노프(Miras Dulenov)와 카자흐스탄 법무부 수석전문관인 잔나 아드빌마노마(Zhanna Abdilmanova)도 아시아 법제전문가 교류회의(ALES)에서 카자흐스탄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기간은 물건을 구매한 날부터 14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카자흐스탄 소비자권리보호법안 제50조 제4항 하단과 같이 물품 반환 절차 및 기간에 대한 정보를 서면형태로 받지 못했을 경우 소비자는 물품을 배송 받은 시점으로부터 3달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약철회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정할 경우 소비자가 권리의 남용 및 악용을 하여 통신판매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소비자 청약철회권의 제도화는 소비자권리의 신장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본다. 하지만 청약철회권의 기간에 대해서는 한국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측이 참고할 수 있도록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청약철회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소비자와 통신판매자 간에 청약철회 등으로 일어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전자상거래에서의 청약철회 제도를 도입할 경우 소비자가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통신판매업자에게 반환하도록 의무화하고 통신판매업자는 지급 받은 재화를 환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카자흐스탄과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법제에 관한 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선 현재 개정법 초안이 나온 소비자권리보호법에 관하여 서로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소비자권리보호법안에서 미비되어 있는 많은 조항들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참작하여 그 보완책을 상의하고 되도록 이를 새 법안에서 보완하는 방법

120) 현재 새로운 소비자권리보호법안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청에 게재되어 있는 상태이며, 입안준비 중이다.

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새로운 조항들의 방대함이나 복잡함 그리고 체계적합성의 원칙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소비자권리보호법안과는 별개로 새로운 입법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법제에 관한 협력을 진행에 있어서 카자흐스탄 소비자권리보호청의 협력 없이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제처 입장에서는 법제협력에 관하여 이미 MOU가 체결된 카자흐스탄 법무부를 통하여 소비자권리보호청과 현재 법안으로 나온 소비자권리보호법안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하여 교류협력 할 의사를 전달하여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류협력의 과정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법제의 정확한 내용과 의미, 전자상거래나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들의 내용, 전사상거래 관계법의 역사적 입법개정 사항, 전자상거래의 실제에 있어서의 법적용현실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제처와 한국소비자원의 전문가가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회의하고 현장을 답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의 법무부나 소비자권리보호청의 법규 담당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법제의 정확한 내용과 역사적 변천, 적용현실 그리고 효과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초청하여 연수를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법제에 대한 구체적 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카자흐스탄이 기존 법안의 초안이나 다른 개정법안에 대한 검토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담당자들 외에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법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본격적인 법안의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 전문가에는 우리나라의 법제처와 카자흐스탄의 법무부와 소비자권리보호청 공무원 외에 대학교수, 소비자원 직원, 기타 입법전문가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법안의 검토와 준비에는 카자흐스탄의 법규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권익과 관련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이 요청된다. 물론 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 대표는 법안 초안을 준비한 후 마지막 완성단계에서 참여시키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이렇게 준비된 초안은 카자흐스탄의 법규법에 따라 전문가나 감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외국인 전문가나 국제기구의 자문을 받거나 외국이나 국제기구에 송부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시금 우리나라가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법제에 대한 교류협력에 있어서는 단순히 법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설명하였듯이 현실에 직접 적용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

하므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그리고 지침이나 표준약관의 제정 등에 있어서도 법제 교류협력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장 우즈베키스탄과 법제한류사업으로서의 전자정부법 검토

1.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법

인류사회가 수렵사회, 농업사회,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물적 자원이나 생산기술이 중요하던 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이 중요시되는 사회가 되었다. 국가정보화란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정보의 수집, 처리, 전달 및 이용을 위한 정보통신기기가 사회 전 분야에 보급, 활용되어 전 국가 차원에서 인간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정보화는 국가의 기술력, 정보력, 지식을 증진시켜 결국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국가정보화에 있어서 정부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자정부(E-Government)이다. 국가정보화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대국민서비스의 향상, 국가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국가행정의 민주성 함양 등을 달성할 수 있는 전자정부이다. 세계 각국은 전자정부의 구축과 실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자정부란 대부분의 행정업무가 온라인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수행되어 신속·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정보화를 필수적 요소로 한다. 행정정보화는 행정업무, 사업 및 조직을 개혁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국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결국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의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121]

2. 전자정부법의 국제적 입법동향

198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자 많은 선진국들은 정보통신기술을 정부업무과정에 도입하여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부터는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정부혁신을 위한 핵심전략으로서 전자정부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93년 '전자정부'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정부 재창조 차원에서 정보기술을 통한 정부업무 재설계를 추진하였고, 부시 행정부도 5대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였다.

121) 최동수, 정보•정보인•정보사회, 법문사, 2012, 163-164면 참조.

영국은 블레어 수상이 정부현대화 계획(Modernising Government)의 일환으로 고객 중심의 대민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호주도 범정부적 정보화 네트워크 구축(On-Line Australia 1999)을 추진하는 등 선진국들의 노력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와 지역연합 등 많은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이 전자정부를 국정의제의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그 수준을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1995년 2월 열린 서방 7개 선진공업국의 연례 경제정상회담 G7 모임에서 제안된 '전자정부 프로젝트'로 인하여 전자정부가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전자정부 프로젝트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정부는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온라인 정보기술에 의존하여 수행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의사소통도 종이우편에서 전자우편으로 완전히 대체되고 완벽하게 상호작용이 가능한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자기 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장소에서 정보를 얻거나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다.

전자정부의 개념은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정보화시대의 정부개혁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는데, 전자정부라는 구상의 직접적인 계기는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감축과 행정서비스의 개선이라는 현실의 요구에 따라 정부의 혁신을 달성하기 등장하였다.

3. 한국 전자정부법제의 역사와 그 내용

현재 전자정부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한 국가는 우리나라(2001년), 미국(2002년), 불가리아(2008년)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최초로 전자정부 단행법인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라 한다)"을 2001년 3월 28일 제정하였으며,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률은 총 7장 5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1월 28일을 마지막 개정으로 총 18번의 개정이 있었다.

2001년 최초로 제정된 전자정부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의 생산성 및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법원 등 기타 헌법기관에서도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하도록 하

였다(법 제2조).

② 행정기관의 업무처리과정은 국민의 편익을 중심으로 설계되도록 하고, 행정기관은 업무의 처리과정 전반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혁신하는 등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원칙을 정하였다(법 제6조 ~ 제15조).

③ 행정기관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작성 및 관리하도록 정하고,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적합한 서식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법 제16조).

④ 전자공문서에는 전자관인을 사용하되, 행정기관의 전자거래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전자관인에 대한 인증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법 제20조).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조직 및 업무절차를 재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도록 명하였다(법 제24조).

⑥ 행정기관은 법령의 제·개정 및 행정예고사항 기타 법령에서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병행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그 의견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법 제28조).

⑦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및 교육훈련을 할 수 있게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능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30조 내지 제32조).

⑧ 관계 법령에서 문서, 서면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신고 또는 제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종이문서로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전자문서 등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33조).

⑨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과 시설 등 제반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법 제34조).

⑩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민원관련 정보 기타 국민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등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법 제37조).

⑪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일정한 급부·급여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39조).

⑫ 의사결정과정의 쇄신과 전자화, 각종 신청·신고·공고의 간소화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문서업무감축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법 제40조 ~ 제42조).

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소속하에 문서감축위원회를 두어 문서업무 감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법 제44조).

⑭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51조).

2001년 제정된 이래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관한 법적 근간을 이룬 「전자정부법」에는 전자정부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극대화를 위한 개정 노력이 지속되었다. 가장 최근인 2014년 1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은 국민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건강검진, 제세·공과금 납부 등에 관한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목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등이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장관이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을 단행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통합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국민에게 건강검진일, 예방접종일 및 운전면허갱신일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의2 신설).

② 공공서비스 목록의 관리·제공을 수행하였다. 1)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노인 및 장애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목록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공공서비스 목록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등록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목록을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③ 행정기관 등의 전자적 시스템 연계·통합을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의 장은 소관 전자적 시스템과 다른 행정기관 등의 전자적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0조의2 신설)

④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하여 행정기관 등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구축·운용하는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관리되는 전자적 시스템의 데이터 또는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⑤ 전자정부사업관리자(PMO)에게 전자정부사업의 관리를 위탁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7조제1

항 단서 신설)

4.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관련 법제 개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2002년 5월 30일 제정된 「정보화 발전 및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관한 대통령령의 채택으로 활성화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3년 제정된 「정보화법」에 의거하여 국가 정보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정보화는 세계적인 경향을 고려하여 정보화 자원, 정보화 기술 및 정보화 시스템의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단일 정보화공간 구축 및 경제 분야에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전자교육, 전자보건, 정보안전보장 등의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아 IT법제에 관한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은 IT법제 중에서 전자정부의 구축 및 실현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12년 정부회의에서 전자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0년 국가정보통신개발 정책'을 승인하였으며, "국가정보통신개발을 위한 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국가기관에서 전자형태의 문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익 증진시키는 내용과 국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사항을 골자로 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정보통신 관련 법을 제정하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를 추진해왔으나 제정된 법이 제정되고도 현실에 있어서 시행이 잘 안되어 전반적인 추진상황은 부진한 상황이다.

2013년 말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의 구현 및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는 통신, 정보화, 전자통신국가위원회(이하 정보통신위원회'라 한다)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전자정부법안(ПРОЕКТ ЗАКОН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을 해당기관의 홈페이지(http://ccitt.uz/ru/documents/documents/500/)에 게재하였다.

전자정부법안은 제1장 총칙에서부터 제5장 종결규정에 이르기까지 총 5장, 3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우즈베키스탄 IT 법제 전문가, 공무원 및 시민이 법률제정을 위해 활발하게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 제3080호에 따라 설립된 컴퓨터 및 정보 기술 도발 및 도입 센터(UZINFOCOM)의 전자정부 전문가 예브게니 스클야레프스키(Evgeniy

Sklyarevskiy)가 시민 및 전문가들과 전자정부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전자정부 구현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전자정부법안은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자정부 기반 강화 등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입법 초안의 단계에 머물러 있고 아직 최종 입법안으로 확정되어 의회에 송부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다.[122)]

5. 우즈베키스탄과 전자정부법제의 교류협력

(1) 전자정부의 배경으로서 우즈베키스탄의 정보화

가. 우즈베키스탄의 정보화 수준

UN e-Government Survey 2014에 의하면 2014년 전자정부 발전지수 평가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193개국 중에서 1위인데 반하여 우즈베키스탄은 100위이고,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은 온라인에 있어서는 0.9764 대 0.4488, 서비스에 있어서는 0.9350 대 0.2333, 통신인프라에 있어서는 0.9273 대 0.7264, 인적자원에 있어서는 0.9462대 0.4695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리고 역시 UN e-Government Survey 2014에 의하면 2014년 e-참여지수 평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193개국 중에서 1위이고 우즈베키스탄은 71위이고 우리나라가 1인데 비하여 우즈베키스탄은 0.4706 정도이다.

ITU의 2013년 통신개발지수 통계에서도 우리나라는 157개국 중에서 1위인데 비하여 우즈베키스탄은 104위이고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은 Access에서 8.28 대 2.38, 사용(Use)면에서 8.22 대 1.95, 기술(Skills)면에서 9.86 대 6.94로 차이가 난다. 그리고 ITU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은 인터넷사용자면에서 84.1% 대 36.5%, 최고속인터넷 가입자 면에서 37.6% 대 0.7%, 무선전화가입자 면에서 110.4% 대 72.2% 로 정보화 수준에 차이가 난다.[123)]

---

122) 전자정부법의 제정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위원회와 각 부처가 합동하여 전자정부에 관한 법안을 이미 작성하였는데 '전자정부' 시스템 일환인 기존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신규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인프라 및 통합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4분기까지 확정법률을 제정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역시 정보통신위원회가 2015년 말까지 '전자정부' 시스템의 일환으로 부처 간 협력 및 데이터 교환에 관한 국가표준을 마련하여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정부' 시스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 및 기업 대상 업무의 온라인 전환을 보장해 주도록 하는데 필요한 법률 개선을 정보통신위원회가 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123) 안전행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4년 국가별 전자정부현황 및 수출전망-우즈베키스탄, 692-693면

나. 우즈베키스탄의 정보통신 관련 정부기관

우즈베키스탄의 정보통신 관련 국가기관으로는 국가ICT발전 공화국위원회, 전산화 및 정보기술개발센터(UZINFOCOM, Computeriz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developing center), 과학공학기술 및 마케팅 리서치센터(UNICON, the State Unitary Enterprise Scientific Engineering & Marketing Research Center), 전자정부시스템 개발센터("Electronic Government" System Development Center), 정보보안센터(Information Security Centre) 등이 중요한 기관이다.[124)]

국가ICT발전 공화국위원회('2013-2020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가정보통신시스템 발전 종합프로그램 시행조율 공화국위원회'가 정식명칭이다. 위원장은 총리이다)를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종합프로그램의 시행을 총괄·감독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총 28개 사업 추진하는데 정보통신기술위원회가 실무수행부처로 전자정부사업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공화국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전자정부 추진의 기술적 지원을 위해 2013년 9월 정보통신기술위원회 산하에 전자정부시스템 발전센터, 정보보안센터 등 전문기관을 신규 설립하였다.

<우즈베키스탄 ICT 추진 조직도>

전산화 및 정보기술개발센터(UZINFOCOM, Computeriz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developing center)는 2002년 대통령령으로 설립되어 정보통신기술과

참조.

124) 안전행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 위의 책, 695면 이하 참조.

관련된 정부의 전략적 정책 개발·수행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재 국가 공공 교육 네트워크인 ZiyoNET, 국가컴퓨터시스템 및 정보화범죄예방팀인 UZ-CERT, 국가인터넷정보발전 및 개발을 위한 도메인 구축 지원 ccTLD.UZ를 구축·운영 중이다. 또한 국가기관 및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부분에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적문서 및 표준의 개발, 데이터 전송서비스 및 정보통신기술 사업 전문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과학공학기술 및 마케팅 리서치센터(UNICON, the State Unitary Enterprise Scientific Engineering & Marketing Research Center)는 1992년 설립된 기관으로 정보통신 부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시스템 개발 공공기관으로 국가 기관에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시스템을 개발·공급하며, 공공기관에 시스템 제품 가격을 낮추어 공급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분석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센터(Electronic Government System Development Center)는 2013년 9월16일 내각결의에 의해 정보통신기술위원회 산하에 총 150명 규모로 설립된 정부기관으로 1) 세계적 동향과 해외국가의 경험에 대한 분석과 연구 등을 기반으로 전자정부시스템 향후 발전 및 개선의 전략적 방향 설정 2)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정부기관에서 활용되는 정보시스템, 정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설계·개발·통합에 대한 합의된 메커니즘을 규정하는 단일한 기술적 접근방식 보장, 전자정부시스템 사업 이행의 제도적·방법론적 보장 3) 정부기관 업무에 도입된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효율성, 정보통신기술 도입의 효율성 평가시스템 운영실태 등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발전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수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보보안센터(Information Security Centre)는 2013년 9월16일 내각결의에 의해 정보통신기술위원회 산하에 총 135명 규모로 설립된 정부기관으로 1) 전자정부시스템의 정보시스템, 정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총체에 대한 정보안전보장 2)전자정부시스템 도입의 일환으로 구축되는 정보화시설에 대한 인증업무 수행 3) 정부기관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정보보안 정책의 마련과 시행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의 법적 기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전자정부법을 개발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2002년 5월 30일 「정보화의 지속적 개발 및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관한 대통령령」 제UP-3080호[125]를 채택하여 ICT 법제 및 전자정부 프로젝트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전자정부 관련 법령의 연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화의 지속적 개발 및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관한 대통령령[126]」

이 대통령령은 정보화의 지속적 개발 및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창설하여 우즈베키스탄 전지역에 ICT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 ICT 분야에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로 하는 등 ICT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우편·통신국을 우즈베키스탄 통신·정보국으로 개편하고 타슈켄트 전자기술통신대학교를 타슈켄트 정보기술대학교로 개편하여 ICT 기술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정보통신기술 도입과 전산화의 지속적 추진에 관한 대통령령[127]」

이 대통령령은 2002년 05월 30일 제정되었으며, 국가 정보화 시스템 구축, 경제 및 사회 전 분야에 최신 정보 기술 및 전산 통신 장비의 도입과 사용, 국민의 증가하는 정보화 수요에 대한 온전한 대응, 세계적 정보 커뮤니티로의 원활한 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과 세계 정보 자원 접근 확대를 목표로 한다.

「정보 자유의 보장과 원칙에 관한 법률[128]」

이 법률은 2002년 12월 12일 제정되었으며, 정보 자유의 보장 및 기본 개념과 원칙, 정보의 공개와 발표, 정보의 공공성 및 신뢰도, 정보 자유 보호, 정보 입수 절차, 정보 보안 분야의 정부 정책, 정보 자유의 보장과 원칙에 관한 법률 위반 시의 책임을 규정한다.

「정보화법[129]」

125)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ДАЛЬНЕЙШЕМ РАЗВИТИИ КОМПЬЮТЕРИЗАЦИИ И ВНЕДРЕНИ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 УП-3080

126)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ДАЛЬНЕЙШЕМ РАЗВИТИИ КОМПЬЮТЕРИЗАЦИИ И ВНЕДРЕНИ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 УП-3080

127)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ДАЛЬНЕЙШЕМ РАЗВИТИИ КОМПЬЮТЕРИЗАЦИИ И ВНЕДРЕНИ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128)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ПРИНЦИПАХ И ГАРАНТИЯХ СВОБОДЫ ИНФОРМАЦИИ

129)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이 법률은 2003년 12월 제정되었으며 정보화, 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의 이용 부문에서 발생하는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정보화라 함은 정보자원, 정보기술,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정보에 대하여 법인 및 자연인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사회-경제 및 과학-기술을 조직하는 과정을 말한다.

정보화 분야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과 개념, 정보화 분야 정부 규제, 정보 자원과 정보 시스템의 법적 체계, 정보의 문서화, 정보 자원과 정보 시스템에 대한 재산권, 정부의 정보 자원, 정보 자원에 대한 접근 범주, 정보 자원과 정보 시스템의 보호 조치, 정보화에 관한 법률 위반 시의 책임을 규정한다.

정보화 부문의 국가정책은 세계적 흐름과 정보자원, 정보기술 및 정보시스템의 향상을 고려하여 국가정보시스템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정보화 부문에서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의 헌법적 권리인 정보의 자유로운 수령 및 유포, 정보자원 접근의 보장

2) 국가기관 정보시스템, 부문 및 영토 접근 시스템 및 법인과 자연인의 정보시스템에 기초한 단일정보공간 창설

3) 국제정보망 및 세계인터넷정보망에 접근을 위한 기반 마련

4) 국가정보자원의 형성, 정보시스템의 창설 및 개발

5) 정보자원, 서비스 및 정보기술 시장 조성

정보화 부문의 국가규율은 우즈베키스탄 내각이 총괄하도록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조에서는 특별전권기관인 우즈베키스탄 통신, 정보화, 전기통신 국가위원회를 두고 국가정보자원을 조직하도록 한다.

이 법 제8조에 따르면 정보의 문서화를 의무조건으로 규정하였으며, 정보의 문서화에 관한 절차는 특별전권기관이 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 법률은 총 2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3년 12월 11일 제정된 이후 2004년 2월 및 2011년 9월 총 2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전자 디지털 서명에 관한 법률[130]」

전자 디지털 서명 사용 분야의 기본 개념과 정부 규제, 전담 기관, 등록 센터, 전자 디지털 서명과 자필 서명의 동일 효력 인정 조건, 전자 디지털 서명 방법, 전자 디지털 서명의 공개키와 개인키 생성, 전자 디지털 서명키의 인증서 발급과

130)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 562–II

보관절차, 전자 디지털 서명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책임을 규정한다.

「전자문서유통법[131]」

이 법은 전자문서유통에 있어서 법적 관계를 규율하고 국가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전자문서의 유통에 있어서 전자문서유통의 폭넓은 적용, 전자문서유통의 구성원의 권리와 법적이익의 보호, 전자문서의 이용을 위한 표준, 규범, 규칙을 개발하기 위한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실현하기 한다.

전자문서 분야에서 제반 관계를 조정하며, 전자 문서 유통 분야의 정부 정책, 전자 문서의 법적 효력, 전자 문서 유통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책임을 규정한다.

전자문서는 다음의 사항을 필수 요건으로 한다:

1) 전자서명

2) 법인의 명칭 또는 자연인의 성명

3) 주소 및 이메일

4) 서류 작성일

이 법률은 총 1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 4월 29일 제정되었다.

「전자 상거래에 관한 법률[132]」

이 법률은 2004년 4월 29일 제정되었으며, 전자 상거래 분야에서 제반 관계를 조정하며, 전자 상거래 참여자들의 법적 지위, 전자 상거래의 계약 체결과 조건, 전자 상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책임을 규정한다.

이 법률은 전자상거래 부문 관계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며, 전자상거래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상품 판매, 용역 수행, 서비스 제공 관련 영리 활동을 말한다.

법령에 의해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전자상거래 참여는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수행되는 참여자의 영리 활동에 관한 추가 요건이나 제한의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상품(용역, 서비스) 구매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보는 1) 조직 및 법적 형태가 표기된 법인의 공식 명칭 또는 개인의 성, 이름 2) 우편 및 전자 주소, 국가 등록에

131)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Е
132)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КОММЕРЦИИ

관한 정보 3) 법령에 의해 규정된 경우 면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는 청약을 포함한 청약은 1) 전자 문서를 이용한 계약 체결 절차 2) 계약 조건 동의 시 변경 가능성과 변경 절차 3) 전자 문서를 통한 청약 발송 및 철회 절차 4)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정보원에 공고된 전자 문서의 인용으로 계약서에 포함된 조건 명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전자 문서는 거래 체결 증빙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국가·경제 관리 기관, 지역 행정부와 법인·개인 간 상호 협력의 지속적 개선 방안에 관한 내각령[133]」

이 법률은 2007년 8월 23일 제정되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국가·경제 관리 기관과 지역 행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접근성을 넓혀 국가·경제 관리 기관과 지역 행정부의 업무 효율, 그리고 법인·개인과의 원활한 협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8년부터 2012년은 우즈베키스탄에 있어서 국가 ICT 도입 체제들의 개시기간으로 볼 수 있다. 이 기간에 정부기관에 정보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전자정보 및 안내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정보 포털인 GOV.UZ를 구축하여 거의 모든 정부기관이 인터넷에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단방향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이동통신 역시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라.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 추진 현황

우즈베키스탄은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통신시스템의 발전을 위하여 2013-2020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보통신시스템 발전 종합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2013년 6월27일 대통령결의(제PP-1989호)에 따라 국가의 경제 전분야 및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폭넓게 도입을 촉진하고, 정보자원의 조속한 발전을 보장하며, 기업체 및 국민에 대한 정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에서 2020까지의 우즈베키스탄 통신기술, 네트워크, 통신인

133) Постановление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мерах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 хозяй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на местах с юридическими и физическими лицами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프라 발전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전자정부'시스템의 각종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각종 사업 및 방안 목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정부 사업을 위하여 2020년까지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28개 사업 및 방안을 제시하고, 전자정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자정부법안 제정 등 법률 제정 및 개선과제를 추진(3개 사업)하며, 개인 및 법인정보 등 전자정부시스템의 각종 중앙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추진(6개 사업)하고, 양방향 정부서비스를 위한 단일포털 구축 사업 등 '전자정부'시스템사업을 추진(16개 사업)하며, 공무원 컴퓨터 교육을 위한 전자정부시스템 교육센터 구축 등 전자정부시스템 관련방안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정부법의 제정을 위하여 정보통신위원회와 각 부처가 합동하여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자정부에 관한 법안을 이미 작성완료 하였는데 '전자정부' 시스템 일환인 기존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신규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인프라 및 통합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4분기까지 확정법률을 제정하도록 예정되어있다. 역시 정보통신위원회가 2015년 말까지 '전자정부' 시스템의 일환으로 부처 간 협력 및 데이터 교환에 관한 국가표준를 마련하여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정부' 시스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 및 기업 대상 업무의 온라인 전환을 보장해 주도록 하는데 필요한 법률 개선을 정보통신위원회가 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전자정부 사업 및 제도 개선 등 작업을 감독, 통제하기 위한 공화국위원회 및 전담수행부처(정보통신기술위원회)를 지정하고 전자정부 추진 기술지원을 위한 전자정부시스템개발센터 등 전담센터 2개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차원의 ICT 개발계획으로 2010년 1월, 카리모프 대통령은 내각 모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산업개발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정부와 시민 간 밀접한 협력 강화를 지시하고, 정보통신기술 부문에서 정부정책의 기본원칙은 모든 사회 및 경제 영역 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신속한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매년 인터넷 서비스 규모, 인터넷 사용자 수, 국제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젊은 세대를 위한 정보자원을 개발하며, 공공 행정에서 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구축을 위한 전자문서 시스템 및 디지털 서명 등 온라인 서비스 유용성을 증대시키려고 하고 있다.

글로벌 정보화 사회 진입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전 부문 관련 정보기술의 대규모 도입 및 이용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정하고, 국가 정보통신기술 개발목표를 선정하여 우즈베키스탄의 국제 홍보를 위한 경제개혁 실행, 시민의 정보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투자유치 조건 제시, 정부기관의 효율성 증대, 우즈베키스탄 지방행정기관의 대부분의 웹 사이트에 정보서비스 개시 등을

역설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 현황은 전자정부에 대한 부처 간 정보화 격차가 크고, 전자정부 기반인 DB구축이 미흡하며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전달 수준이다. 전자메일은 활발하게 사용되나, 부처 간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이 없고, 공무원 PC보유비율을 높일 필요(중앙 98%, 지방 40~50%)가 있다. 정부 전자결재율, 공공부문 전자조달 비율, 공무원 e-Mail 보급률을 비교하면 한국의 1990년 중반 수준으로 판단된다.

2012년 이후 카리모프 대통령의 이니셔티브 아래 전자정부를 실행하고 있으며, 국가 전 분야에 대한 IT화를 더욱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SW 개발, IT 교육 등 측면에서 외국과의 합작을 통한 우즈베키스탄 IT 전문가 양성 및 각 업무분야별 체계적 IT화를 추진하는 등 행정 및 각종 인프라 전반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시스템 향후 발전방안에 관한 대통령 결의(2013.6.27)'를 필두, 우즈베키스탄은 전자정부 및 정보화·소프트웨어 진흥 등의 기반구축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 및 시스템 기반 마련을 진행 중이다. 특히, 2013. 9월,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전자정부시스템 개발센터 및 정보보안센터를 정부기관으로 신설하여, 무려 285명의 인력증원을 확정한 바 있다.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에 관한 계획으로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의 매개라는 측면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국가정책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고려하여, 전자정부 관련 기본적인 법 제도를 제정하고, 우즈베키스탄 현황에 맞는 IT 기반 기술 적용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반 인프라를 확보하는 등 정보통신기술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은 2010년까지 정부부처의 정보시스템 통합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정보시스템 통합으로 정보교환의 비용감소, 정보교환의 신속성 확보,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을 기대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기술 개발계획은 전자정부 구축 및 개발계획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며, 2013. 6 대통령 결의에 따라 정보화 등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간 전자정부 사업은 큰 이행로드맵 하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측면이 있으나, 2013년 이후 각 부처 공통적으로 정보화 추진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정보통신위원회 위상 특성상 아직까지도 전자정부 통합추진은 다소 미약한 상황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1년부터 주요 정부기관 온라인 단일 포털(www.gov.uz)을 운영하고 2013 하반기부터 전 공공기관(국영부문 포함한다)이 포함된 온라인 단일 포털 운영으로 확대, 현재 약 300여 정부·공공기관(정부부처·위원회·청, 검사기관,

지방정부, 센터, 협회, 은행, 국영기업, 조합, 기금, 아카데미 등)이 동 포털과 연결되어 있다. 이 정부포털을 통하여 국민(기업)들은 각종 공공기관 정보 및 해당기관의 업무정보열람, 정보제공요청, 서류요청, 법인등록 및 그 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기술·통신, 조세, 은행·금융서비스, 라이센스 및 허가, 전자지불, 기업(온라인등록 등), 투자와 무역, 교육, 영사서비스, 보험, 구직, 자동차·교통, 투자·무역, 조세,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서비스를 추진하였거나 준비 중이다.

(2) 전자정부법 법제한류사업의 협력주체

이미 카자흐스탄의 사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IT법제는 일반 법제와는 달리 기술적 성격이 강하고 또 다른 법령들과도 모순과 충돌이 없어야 하므로, 우즈베키스탄과의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우즈베키스탄의 IT 전문가들과 입법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IT인프라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교류협력을 받아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정하려고 하는 법령이 과연 현실에서 원래의 입법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이고 입법에 있어서 실질적 역할은 의회보다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부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입법 전문기관으로는 법제처가 적절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부서는 안전행정부이고 안전행정부가 이미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MOU)[134]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와 서로 상의하여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법의 제정에 관한 법제한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법제한류사업의 주관기관이 법제처이고 입법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 면에 있어서는 법제처가 보다 전문성이 있으므로 법제처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전자정부에 관한 IT기술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상의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적정한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고 본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정부 법제한류사업의 상대방으로 적합한 기관으로는 법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법제교류협력사업에 관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법무부가 바람직하고 다만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정부 문제를 총괄하는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센터("Electronic Government" System Development Center)'의 참여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기술 분야에 대하여 만약 우즈베키스탄의 추가적 파트너가 필요하

134) 한-우즈베키스탄 정보화 협력 MOU 체결, 안전행정부, 2012. 9. 참조 (http://video.mopas.go.kr/view.asp?cate_id=1&vod_id=1008).

다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의 의견과 우리나라 미래창조과학부나 기타 IT기술 관련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3) 전자정부법 법제한류사업의 절차

우즈베키스탄과의 전자정부 법제한류사업의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카자흐스탄의 경우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전자정부에 관한 법안 초안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1)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 관련 법안 초안들의 문제점과 제정방향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나 '전자정부 시스템개발센터'나 기타 전자정부 관련 정부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제시 2) 이러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한국의 법제처와 안전행정부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국제적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대화와 토론 3) 한국의 법제처와 상대국 전문가 참여하에 기존 전자정부 초안들을 수정한 단일한 수정안의 작성 4) 이에 대한 한국의 안전행정부와 법제처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제시와 토론 5) 이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가 실제 전자정부법 최종 법안을 만들어 의회통과와 법률공포 등 입법절차 완료 6) 이렇게 제정된 법령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새로운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한국의 법제처와 안전행정부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법무부와 '전자정부 시스템개발센터'나 전자정부 관련 정부기관의 전문가나 실무가들의 참여 하에 의견교환 등을 행하고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4) 전자정부법 법제한류사업의 구체적 내용

가.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전자정부법안

2013년 11월 우즈베키스탄의 정보통신기술위원회는 새로운 전자정부법 초안을 마련하여 공식적인 입안준비절차에 착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정이유

해당 전자정부법안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전자정부의 기능에 있어서 국가기관, 법인 및 자연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2) 전자정부의 기본과제

전자정부법안은 다음 각 1의 사항에 관한 명문화를 기본 과제로 한다:

① 전자정부 구현 및 기능의 원칙

② 전자정부의 관리절차

③ 법률관계주체의 권리와 의무의 규정

3) 전자정부의 법원(法源)

전자정부에 관한 법령은 전자정부법과 여타 법령으로 구성되어있다.

우즈베키스탄이 체결한 조약과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법 간에 저촉이 있을 경우에는 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4) 전자정부 구현의 원칙 및 전자정부 기능의 원칙

전자정부는 가) 전자정부의 범위 내에서 국가기관활동 공개의 원칙 나) 국가전자서비스 이용자 평등성의 원칙 다) 전자정부의 범위 내에서 국가기관 간에 통합된 상호작용의 원칙 라) 전자형태의 행정정보 처리의 원칙 마) 전자정부의 정보안전 보장의 원칙 바) 국가기관 활동과 전자국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의 항시적 개선 원칙에 근거한다:

가) 전자정부의 범위 내에서 국가기관활동 공개의 원칙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절차의 실행과 전자국가서비스의 제공 절차에 관한 정보는 모두에게 허용되고 공개된다. 전자국가서비스 제공을 할 경우 국가기관은 서비스의 검토 상태 및 이행 결과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린다.

나) 국가전자서비스 이용자 평등성의 원칙

국가기관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에게 제한 없이 전자국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필수적인 조건을 만들 의무를 가진다.

다) 전자정부의 범위 내에서 국가기관 간에 통합된 상호작용의 원칙

전자형태를 포함하여 국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은 이용자에게 법령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정보 또는 문서의 제출을 요청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국가서비스를 포함하여 행정 절차의 수행에 필수적인 행정 정보의 제공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라) 전자형태의 행정 정보 처리의 원칙

국가기관은 전자형태의 행정 정보의 창조, 수집, 가공, 사용, 배포 및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기관이 창조, 수집, 가공, 사용, 배포 및 유지하는 전자형태의 행정 정보는 그 밖의 형태로 제공되는 정보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마) 전자정부의 정보 안전 보장의 원칙

국가기관은 정보안정과 정보자원의 통일성 및 전자정부 정보시스템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바) 국가기관 활동과 전자국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의 항시적 개선 원칙

국가기관은 사회 여론 및 평가 기준에 따라 자신의 활동과 국가전자서비스의 수준을 항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5) 전자정부 부문에서 국가관리

가) 전자정부 실현에 관한 활동의 계획

전자정부의 구현은 국가기관에 의해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이 승인한 전자정부 구현 및 개발에 대한 국가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단계적으로 실행된다. 국가기관은 자신의 권한 내에서 통신, 정보화, 전자통신기술 부문의 유권기관의 동의에 따라 전자정부의 구현에 따른 업무의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나) 전자정부 부문에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의 권한

전자정부 부문에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은 다음 각 1의 권한을 가진다:

① 전자정부개발을 위한 국가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

② 전자정부의 구현 및 기능을 위한 조건 보장

③ 전자정부 부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명부, 국가서비스 목록, 국가전자서비스 목록과 이들의 구현과 시행규칙에 대한 승인

④ 국가기관의 행정절차의 전자형태로 이전 목록 및 기간의 승인 최적화와 자동화를 해야 하는 국가 서비스

⑤ 제공하는 국가서비스의 수준 평가법의 승인

⑥ 전자정부 구현 및 개발 프로젝트의 효율적 실행

⑦ 제공하는 국가전자서비스의 지수에 따른 국가기관활동의 결과 평가

⑧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개발의 현황에 대한 평가

⑨ 국가양방향서비스 단일 포털 활동 범위 내에서 국가 기관 상호작용의 규칙 및 국가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게재에 관한 요건의 승인

⑩ 그 밖에 법령에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권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내각에 여타 권한도 포함될 수 있다.

다) 전자정부 부문에서 통신, 정보화 및 전자통신 기술 부문의 유권기관의 권한

전자정부 부문에서 통신, 정보화 및 전자통신기술 부문의 유권기관은 다음 각 1의 권한을 가진다.

① 자신의 권한 내에서 전자정부 부문의 국가정책의 실현

② 전자정부 부문에서 국가기관 활동의 조정 수행

③ 단일기술방식의 전자정부 구현 및 기능 보장

④ 국제 선진 경험을 분석하여 전자정부 우선 개발 정책의 개발 및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에 제안

⑤ 전자정부 인프라의 구축, 정보자원과 국가기관 정보화 시스템 개발, 국가기관의 상호작용 보장

⑥ 전자정부 중앙데이터베이스에서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에 접근, 교환 및 처리 절차의 결정

⑦ 전자정부에 관한 법령의 요건 및 전자정부 부문의 국가표준의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⑧ 전자형태로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국가서비스 규정에 대하여 동의

⑨ 정보자원의 정보안전 및 전자정부 정보시스템의 보장에 대한 조치의 개발 및 실행

⑩ 국가기관 행정 절차의 자동화 보장 문제에 대한 규범적 체계 지도

⑪ 전자정부의 효율적인 구현을 위한 현행 법령의 개선을 위한 제안의 준비

⑫ 국가기관 활동의 조직 업무와 기능 처리에 대하여 체계적 조직변경 시행 및 국가전자서비스의 효율성 향상

⑬ 국가전자정부 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연구를 포함하여 국가기관에 정보통신기술 도입과 개발 상태 모니터링 및 평가의 시행

⑭ 전자정부 부문의 국가기관 근로자 양성 및 자격 향상 시스템의 조직

⑮ 전자정부 부문에서 국제 협력 개발의 수행

⑯ 전자정부 부문에서 통신, 정보화 및 전자통신기술 유권기관의 권한에는 법령에 따라 여타 권한이 포함될 수 있다.

라) 전자정부 부문에서 국가기관의 권한

전자정부 부문에서 국가기관은 다음 각 1의 권한을 가진다.

① 통신, 정보화 및 전자통신기술 부문의 유권기관의 동의에 따라 행정절차 및 국가서비스의 최적화 및 자동화 조치의 채택

② 단일창구 원칙에 따라 국가서비스의 제공

③ 통신, 정보화, 전자통신기술 부문의 유권기관의 동의에 따라 국가전자서비스 기술규정의 개발 및 승인

④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법령에 명시된 형태의 국가전자서비스의 제공 보장

⑤ 장애인에게 전자국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의 실현

⑥ 전자정부 중앙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정보자원 및 국가양방향서비스 단일 포털 간에 통합 보장

⑦ 국가양방향서비스 단일 포털에 국가전자서비스 제공 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⑧ 행정 절차의 실현과 국가전자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 시스템 및 정보 자원의 계속적인 기능의 보장

⑨ 전자정부 부문의 근로자 자격 향상의 보장

⑩ 전자정부의 효율적인 구현 및 기능을 위한 법령의 재·개정

⑪ 여타 법령에 그 밖의 권한을 명시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권한에 포함될 수 있다.

6) 국가전자서비스의 제공

가) 국가전자서비스의 종류

국가전자서비스의 종류는 정보서비스, 양방향서비스, 트렌잭션서비스로 구분된다. 국가정보서비스는 국가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일종으로 법인과 자연인에게 제공한다. 국가양방향서비스는 이용자의 요청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전자정보자원의 형태로 제공하며,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국가트렌잭션서비스는 전자정보자원의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며, 전자서명을 이용한 상호간에 정보교환을 필요로 한다.

나) 국가전자서비스 제공의 요건

국가전자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기초로 하여 수행된다.

① 이용자의 성별, 민족, 언어, 종교, 출생, 신념, 개인적 지위,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국가전자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의 정보 또는 문서를 다른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경우 국가전자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이 정보 또는 문서를 이용자에게 요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③ 국가기관 공식 웹사이트 또는 단일 창구 원칙을 포함한 국가양방향서비스 단일 포털을 통해 국가전자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

다) 국가전자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권리

국가전자서비스 제공받는 이용자는 다음 각 1의 권리를 가진다.

① 서비스 제공 규정에 따라 적시에 국가전자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② 국가전자서비스 제공의 절차에 관하여 완벽하고 신용할 만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법령에 명시된 모든 형태로 국가전자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④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국가전자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권리

⑤ 국가전자서비스 제공에 관한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결정 및 작위(부작위)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 할 권리

⑥ 국가전자서비스 부문에서 침해당한 권리, 자유 및 법적 이익의 보호에 대하여 소송의 제기할 권리

⑦ 국가전자서비스 제공 절차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할 권리

⑧ 국가전자서비스 수준의 평가할 권리

⑨ 국가전자서비스 개선을 위해 건의할 권리

라) 국가전자서비스 수준 평가의 절차

국가전자서비스 수준의 평가는 정보통신기술의 효율적인 도입의 평가 및 여론연구 시행의 방법에 기초하여 통신, 정보화 및 전자통신기술 부문의 유권기관이 수행한다. 국가기관은 여론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기관은 국가전자서비스의 수준을 개선하는 조치를 채택한다. 국가전자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인터넷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전자정부 범위에서 국가권력기관 간에 상호협력 절차

가) 전자정부의 기본 요소

전자정부 인프라의 기능은 다음 각 1을 기초로 한다.

① 국가양방향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일포털 및 국가기관의 공식사이트

② 부처 간 전자정부 통합 플랫폼

③ 전자정부 중앙데이터베이스

④ 전자정부 데이터처리센터

⑤ 전자정부 이용자에 대한 식별시스템 및 전자서명 공개키 인프라

⑥ 부서와 부처 간에 국가기관정보시스템

나) 국가양방향서비스의 단일 포털 및 국가기관의 공식 사이트

국가전자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국가기관의 공식사이트와 국가양방향서비스의 단일 포털을 통하여 제공한다. 국가양방향서비스 단일 포털은 부처 간 전자정부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국가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처 간에 정보화 시스템의 통합을 보장한다.

다) 부처 간에 전자정부 플랫폼 통합

부처 간 전자정부 통합 플랫폼은 모든 정보시스템, 정보 자원 및 전자정부 범위에서 국가기관데이터베이스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전자정부 중앙데이터베이스에 국가기관의 접근을 보장한다.

라) 전자정부 중앙데이터베이스

전자정부 중앙데이터베이스는 우즈베키스탄 내각에 의하여 결정되며, 전자정부 데이터베이스센터에서 보관해야 한다. 모든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은 전자형태를 포함한 행정적 절차의 실행과 국가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자정부 중앙데이터베이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마) 전자정부 데이터처리센터

전자정부 데이터처리센터는 부처와 부처 간에 정보 시스템 및 국가기관 정보자원, 전자정부 중앙데이터 베이스의 보관 및 통합을 보장한다. 국가기관의 정보 시스템, 정보자원, 전자정부의 중앙데이터베이스의 상호작용은 국가기관의 부처 간 망을 통하여 실현된다. 전자정부 시스템 데이터처리센터는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를 수행하며, 그의 보호와 통합을 보장한다.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관리는 해당 국가기관이 수행한다.

바) 전자정부 이용자의 식별 시스템 및 전자서명 공개키 인프라

전자정부 이용자 식별 시스템은 국가전자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보시스템 정보기술의 상호작용을 보장하는 전자정부 인프라의 정보적 요소이다. 자연인 및 국가기관 근로자의 식별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시민의 경우 식별번호(개인코드)에 근거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코드 또는 법인의 납세자 식별 코드에 의한다. 국가기관 간에 전자문서의 교환 및 국가전자서비스의 제공은 전자정부 공개키 인프라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사) 국가기관 부처와 부처 간에 정보시스템

전자정부 정보시스템은 그 용도 및 상호협력 절차에 따라 부처 및 부처 간으로 구분된다. 부처 정보 시스템은 전자정부 내에서 정보의 수집, 보관 및 처리를 보장하는 국가기관의 정보시스템이다. 전자정부 부처 간 정보시스템은 국가기관 간에 상호작용을 자동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아) 전자정부법의 발효

전자정부법은 공포한 시점에서 6개월이 경과하면 법적 효력을 가진다.

나. 전자정부법안의 협력사항

2000년대 초반부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전자정부법의 마련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총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전자정부법이 부재하며, 2013년 11월 전자정부법 초안이 비로소 마련된 상태이다. 현재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주무부처인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위원회에 게재된 정부법안을 토대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법에 있어서 교류협력 방안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법 적용범위의 설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제정 전자정부법 제3조에서는 “행정기관 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정의하여 전자정부법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법안에서는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적용범위를 전자형태의 국가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의 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법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추후에 다른 법률과 저촉이나 모순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모든 정부기관에 걸쳐 더 나아가 행정의 모든 영역에까지 활용을 위한 전자정부 구상이 실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자정부 법안의 미비로 "전자정부" 개념의 확립이 신속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된 유일한 법적 출처는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법안이다.

대한민국 -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개념 비교

대한민국 舊전자정부법	대한민국 전자정부법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법안
"전자정부"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전자정부"란 정부기능의 자동화에 기반하여 정부기관의 업무를 조직하는 형태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개인과 법인에 대한 전자적 정부서비스 제공과 정부기관 간의 상호작용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위 표에서 보다시피 전자정부의 개념은 "행정기관의 사무전자화"에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전자화"로 확대되고 있으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 효율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전자정부는 행정업무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온라인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형 정부를 말한다.[135]

또한 EU에서도 전자정부의 개념을 "정부와 공공기관에 IT를 적용하여 정부와 시민과의 상호작용 수단을 변화시키는 것 -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고 근본적으로는 공공과의 관계를 변화시킴[136]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즉, 전자정부를 정부기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공공기관에까지 IT를 적용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공공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전자정부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정부기관 간의 상호 작용"에서 더 나아가 공공기관까지 포함시킨다면 공공과의 화합 및 전자정부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정의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 제3호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대한민국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제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1) 공공기관의

135) 김재광, 전자정부법, 27면, 참조.
136)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법 개정방안 연구, 63면, 참조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도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의 개념에 "공공기관"을 포함시킨다면 이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현재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포털(www.gov.uz)이 구축되어 국민, 기업, 기관에 전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 법안에는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민원처리에 관한 규범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자적 민원처리 신청을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행 전자정부법의 전자적 민원처리의 신청(제7조),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제8조),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제9조) 등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넷째,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전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행정기관 간에 협력할 수 있도록 등록시스템을 법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에 관하여 전자정부법 제3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 주관부서가 서비스의 목록을 등록하고 관리·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을 부처 간에 합의에 따라 연계하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통합적·효율적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즈베키스탄 행정기관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현재 전자정부법안 및 ICT 관련 법제에는 부재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은 담당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필요한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담당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해당 기관의 편익보다 국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전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지위, 권리, 의무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한 정보기술 능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국민의 편익을 고려하는 서비스를 지향하여 전자정부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 인터넷 사용자 및 전자정부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IT 법제

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며, 현재 전자정부법안에서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보주체의 권리(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 국제협력(개인정보 보호법 제14조) 등의 조항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u>한국 - 우즈베키스탄의 개인정보의 정의 비교</u>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법안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라 함은 전자매체, 종이매체 그리고(또는) 그밖에 물리적 매체에 기록된 특정인의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에는 개인의 신상정보, 생체정보, 신원정보, 성격, 가족정보, 사회적 지위, 업무상 지위, 재정상태, 학력, 직업, 건강 상태 등이 해당한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에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아직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고, 전자정부법안에서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우즈베키스탄에 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로 2002년 12월 제정된 "정보 자유의 원칙과 보장에 관한 법률"(Закон о принципах и гарантиях свободы информации)이 있으나 여기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자연인의 개인에 대한 정보를 기밀정보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제13조). 여기서 말하는 기밀정보는 법령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는 정보를 말한다(제3조). 한국에서 개인정보는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인식할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인식할 수 있을 경우에도 "개인정보"로 보아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개념보다 폭넓게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정의 내린 "개인정보"는 신상정보, 생체정보, 식별정보, 사회적 지위, 업무상 지위 등 개인정보의 종류를 세세히 구분하였고 한국의 "개인정보" 정의는 타인의 개인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는지 유무에 대한 인식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양국 간의 "개인정보"의 정의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 중

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전자정부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정의를 좀 더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에서는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수집, 유통,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개인정보의 제공,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우즈베키스탄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전자 행정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고할 수 있다.

일곱째로 우즈베키스탄은 전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장애를 예방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책과 관련된 규정의 마련이 절실하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법 제56조의 2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137]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으로 1)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계획 수립, 2) 장애관리 부서 및 담당자 지정, 3) 장애관리 매뉴얼 작성·시행, 4) 장애관리 교육·훈련 실시, 5)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계약체결 및 유지, 6)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보시스템 장애의 예방·대응계획을 1)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점검 활동 계획,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3)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계획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 해당 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장치의 신속한 복구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 등으로 신속한 대체, 2) 관계기관에 장애사실의 즉시 통보, 3) 인터넷 등을 통한 장애사실 및 그 복구사실 공표, 4) 장애원인의 조사 및 재발방지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전자정부법안에 전자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정보시스템 장애의 예방·대응계획, 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장치에 장애가 발생 시 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위기대책을 법적인 규정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여덟째, 전통적인 종이문서 업무에서 전자문서업무로의 전환은 전자정부 구현에 있어서 핵심 사항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점차 전자정보 서비스가 확대되고 전자행

137) 전자정부 시행령 제70조의 2 참조.

정업무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법적으로 종이문서를 감축하여 전자정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전자정부법 제33조에서는 종이문서의 감축을 위해 행정기관 등의 장은 행정업무 및 민원사무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종이문서의 작성·접수·유통 및 보관을 최소화하고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등의 장은 문서작성 및 보고과정에서 종이문서의 불필요한 출력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업무 방식 등을 개선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종이문서 업무와 관련된 법령과 지침 등을 전자형태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등의 장이 개정하거나 보완하여야 종이문서를 감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도입 초기에도 업무의 대부분이 종이문서 위주로 되어 전자적 업무처리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하에 문서감축위원회를 설립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문서업무 감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1) 문서업무감축계획, 2) 분야별 대책회의간 의견조정, 3) 문서업무 감축과 관련한 행정기관 간 정책조정, 4) 문서업무 감축의 촉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5) 그 밖에 문서업무 감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구전자정부법 제44조). 현행 전자정부법에서는 중앙사무관장기관장이 종이문서를 감축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종이문서의 사용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전자정부법 제33조 제4항).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전자문서 감축을 위한 별도의 부처를 설립하거나 각 행정기관장에게 종이문서를 감축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 전자결제법을 포함하여 IT 법제에서는 세금 등을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갖춰지지 않았으며, 전자정부법안에서도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행정 업무에 대하여 세금 등을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정 전자정부법부터 행정 업무에 대하여 전자적 납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행정기관 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법안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규정에 근거하여 전자결제 및 전자화폐 등의 수단으로 결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전자정부법제에 관한 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선 현재 개정법 초안이 나온 전자정부법안에 관하여 서로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

람직하다고 본다. 전자정부법안에서 미비 되어 있는 많은 조항들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법 등을 참작하여 그 보완책을 상의하고 되도록 이를 새 법안에서 보충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새로운 조항들의 방대함이나 복잡함 그리고 체계적합성의 원칙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전자정부법안과는 별개로 완전히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전자정부법제에 관한 협력을 진행시킴에는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시스템개발센터의 협력 없이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제처 입장에서는 법제협력에 관하여 이미 MOU가 체결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를 통하여 법무부 및 전자정부시스템개발센터와 현재의 전자정부법안과 관련하여 교류협력할 의사를 전달하여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류협력의 과정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법제의 정확한 내용과 의미, 전자정부 관련 법령들의 내용, 전자정부법안의 입법 연혁, 전자정부의 실제와 이를 규율하는 현행법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제처와 안전행정부(혹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전문가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회의하고 전자정부 운용현실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의 법무부나 전자정부시스템개발센터의 법규 담당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법제의 정확한 내용과 입법 변천내역, 실제 적용상의 효율성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수를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정부법제에 대한 구체적 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우즈베키스탄이 기존 법안의 초안이나 다른 개정 법안에 대한 검토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담당자들 외에 전자정부법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본격적인 법안의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 전문가에는 우리나라의 법제처와 우즈베키스탄의 법무부와 전자정부시스템개발센터 공무원 외에 대학교수, 한국정보화진흥원 직원, 기타 입법전문가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법안의 검토와 준비에는 우즈베키스탄의 법규법 규정에 따라 법무부가 법안의 준비에 대한 정부 각 부처와 국가위원회 업무를 법령에 따라 조율하기 때문에 법무부 관계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준비된 초안은 우즈베키스탄의 법규법에 따라 사회토론 또는 전문토론을 할 수 있고 다른 국가의 법적 규제의 경험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시금 우리나라가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장 결 론

법제한류사업이란 법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한국 법제를 다른 나라에 전파하고 전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는데, 이 용어는 법제를 외국에 알리는 것과 외국에 한국법제를 참고하여 그 나라의 법령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법제를 수출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전근대국가에서 제국주의의 침략과 권위주의의 억압체제를 극복하고 불과 50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모두 달성한 세계사적으로 성공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가나 체제전환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제를 연구하고 도입하려고 하는 수요가 강력하다.

법제한류사업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도입 요구에 부응하여 법제를 전수하는 사업인데 법제한류사업에 대한 일정한 전략이 있지 않을 경우 사업을 실시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여 국력을 소모하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 만약 대상국에 적합하지 못한 법제를 전수한다면 이들 법제가 대상국에 정착하지 못하여 사업이 종국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법제한류사업을 통한 국가간의 교류와 협력은 단기간에 끝날 위험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제한류 확산을 위하여 법제한류사업의 의의와 목적을 올바로 정립하고, 유라시아 국가 그 중에서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의 법제교류협력 확대 기반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법제를 전수하고 이들 국가와 법령정보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탐구하였다. 특히 법제한류사업이 유라시아 국가들 경제성장과 인권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유엔의 '인권을 기반으로 한 개발'과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를 아우르는 '법치주의의 실현'을 법제한류사업의 목적으로 제시하였고, 법제한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상대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과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법제를 법제협력사업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과 사업을 중복되지 않고 인근 유사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과 협조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을 적시하였다.

법제한류사업이 법제의 신설이나 개정을 통한 교류협력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유라시아 국가의 입법에 관하여 법제의 내용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보았으며, 그 전제로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였다. 특히 법률의 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주요 헌법기관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법규범으로 실질적 헌법에 해당하는 헌법적 법률과 역시 법률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국가생활에 있

어서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범으로 일반 법률보다 우위에 있는 코드(code)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법제한류사업이 새로운 입법 작업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국가에 있어서 법안의 준비,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법안의 구체적 입안, 법안의 심사, 법안의 등록과 법안의 공포, 법안의 발효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유라시아 국가와의 법제한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대상법제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하여 그 대상선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법제한류사업의 목적, 대상국의 특수성, 우리나라 법제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탐색하여였다. 구체적으로 등기법제, 에너지법제, 무역법제, 투자법제, 출입국법제, IT법제를 이러한 고려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였는데, IT법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로서 정보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정보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알권리와 자기정보결정권을 보호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이들 국가에서 이러한 법제에 대한 새로운 법제의 제정과 개정작업이 현재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 셋째, IT 관련법에 법안의 초안이 이미 마련되었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이들 법제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적시하였다. 다만 IT법제를 법제한류사업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에 대하여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안전행정부 그리고 소비자법제에 대하여 법제협력에 경험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업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서로 협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IT법제 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전자정부법 제정에 대하여 법안을 준비하고 한국에 구체적 도움을 요청하는 등 그 요구가 강하여 전자정부법제가 법제한류사업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정보화가 상당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제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이 분야를 법제한류사업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양국에 있어서 일반적인 정보화의 진행정도와 IT법제의 내용, 법제한류사업 대상법제와 관련이 있는 기존의 입법과 법안들, 담당 정부기관, 입법추진정도 등 제반 환경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법제들에 대한 법제한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추진주체와 추진절차 그리고 추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추진주체에 관하여는 법제처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양국의 법무부와 각각 법제교류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가 채택되어 있으므로 법제협력에 있어서도 이들 기관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밝혔다. 다만 IT법제는 기술적 법제이므로 기술적 분야에 대하여는 한국에 있어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나 아니면 미래창조과학부나 기타 정보기술 분

야의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법제의 기술 분야에 대하여는 전자정부센터가 가장 적합한 기관이고, 카자흐스탄에 있어서는 카자흐스탄 법무부의 추천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법제에 대하여는 이미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법 초안에 대하여 그 제정이나 검토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므로 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과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법제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상 소비자법 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부처이고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법 분야에 대한 법제교류협력의 경험이 다수 있으므로 그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법제한류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하여는 일반 법제협력사업의 절차에 따라 첫째,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관련 법안 초안들의 문제점과 제정방향에 대한 이들 각국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둘째, 이러한 의견들에 대하여 한국의 법제처와 안전행정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가들이 검토한 후 필요하면 법제협력 상대국의 법무부나 기타 정부부처의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대화와 토론을 하고 셋째, 한국의 법제처와 상대국 전문가 참여하에 기존 정부 초안들을 수정한 단일한 수정안의 작성하고 넷째, 이러한 단일수정안에 대한 한국과 상대국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제시와 토론을 하고 다섯째, 이러한 의견제시와 토론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법무부가 실제 최종 법안을 만들어 의회통과와 법률공포 등 입법절차 완료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정된 법령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새로운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한국의 법제처와 안전행정부 그리고 상대국의 법무부 기타 관련 정부기관의 전문가나 실무가들의 참여하에 의견교환 등을 행하고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카자흐스탄과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법제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법제와 관련한 법제한류사업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이미 제시되어 있는 관련 법안의 구체적 내용들을 살핀 후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들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어떤 개선안을 내어야 할 것인지의 대략적인 내용을 서술하였다.

전자상거래 법제에 있어서는 새로이 소비자권리보호법안이 만들어졌지만 표시광고의 기록보존의무, 조작실수 등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절차구비, 공급절차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등 많은 사항들에 대한 추가 조문이 필요한 점,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자율적 법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과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는 법규정의 필요성,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신뢰성 확보와 소비자의 진정한 지급의사의 전자적 확인방법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 전자상거래 분쟁을 신속하고도 저비용으로 해결하기 위한 ADR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

적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법안과 관련하여서는 전자정부법 적용범위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 민원처리에 관한 규범들을 보다 철저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점,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에 관한 규정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점, 전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지위, 권리, 의무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성,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상세한 규정의 필요성, 전자정부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책과 관련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정부에 납부할 세금, 벌과금, 수수료 등 각종 금전을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실제 법제한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과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법규법을 참작하여 간단히 설명하였다.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법제한류사업은 우리나라 법제를 소개하고 이들 국가에 전수하는 사업인데,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강점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 유라시아국가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진행하되,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인권을 기반으로 한 개발'이나 '법치주의의 실현'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평판이나 이미지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보화를 통한 국가발전을 촉진하고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며,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IT산업과 관련된 분야로서 또 이들 나라에서 이미 법안의 초안들이 나와 있는 전자정부법이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법제를 법제한류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들 법제에 대한 구체적 교류협력방안에 대하여 절차와 주체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검토함은 앞으로의 시행착오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의가 깊다고 하겠다.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유라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한 법제한류사업이나 법제협력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본 연구에서 총론적으로 검토한 사항들에 대하여 각론적 입장에서 보다 구체적이고도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유라시아국가들의 입법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제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반영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고문현, 우리나라 환경법의 문제점과 과제, 법학논총 제25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김두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김대인,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본 법치주의의 개념,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 제4권 제1호, 2010.

김영신 외, 새로 쓰는 소비자법과 정책, 교문사, 2007.

김재광, 전자정부법, 한국법제연구원, 2010.

김철수, 세계화와 인권국가 - 서론적 고찰, 세계화와 인권국가, 세계헌법연구 제7호,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03.

김춘순,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체계의 분절화 현상과 제도적 개선방향, 재정포럼, 2010.7.

김한칠 외, 우즈베키스탄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한국법제연구원, 2009.

김한칠 외, 카자흐스탄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한국법제연구원, 2009.

권오승, 법제교류 현주소와 나아갈 길, ALES 제1차 회의 기조연설문, 2013.

문준조, 중국의 WTO 가입과 제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1.

박근서, 법제수출: 법률컨텐츠, 법률정보시스템, 법률교육 수출을 통해 개발원조(ODA) 중점사업으로 육성해야, 법제, 2011.

백병성, 소비자행정론, 시그마프레스, 2003.

신현윤, 경제법, 법문사, 2007.

안전행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4년 국가별 전자정부현황 및 수출전망, 2014.

양영미, 인권을 생각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국제 사회의 개발과 인권의 통합노력과 한국 ODA에 대한 시사점, 국제개발협력, KOICA, 2011.

오병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전문가 회의 발표문, 2014. 10.

이성환, 우리나라 법제협력사업의 이념적 실천적 과제, 법제, 2012.

이성환 외, 법제수출을 위한 기본 전략과 과제, 법제처 용역보고서, 2012.

이종인,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구제방안 연구, 2005.

장흥섭, 현대사회와 소비자. 경북대학교출판부, 2004.

조홍식, 우리나라 환경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좌승희·조성봉, 법치경제 개혁의 길, 한국경제연구원, 2004.
최동수, 정보·정보인·정보사회, 법문사, 2012.
최대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한국법제연구원, 한국 - 우즈베키스탄 및 한국 - 카자흐스탄 학술포럼 개최 및 쌍방기관간 기관장회의 결과보고서, 2007.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법 개정방안 연구, 2008.
한인섭·이철우, 법, 사회, 국가 및 제3세계 — 비판적 비교법사회학을 향하여, 법·국가·저발전, 이성과 현실사, 1986.
현대호, 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보호법제의 현황과 과제, 「제1회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토론회」, 2002.

2. 일본문헌(日本文獻)

三ヶ月章「司法評論＜３＞法整備協力支援」有斐閣, 2005年.
香川孝三 · 金子有芳「法整備支援論—制度構築の國際協力入門」ミネルヴァ書房, 2007年.
「特集 法整備支援の課題}」法律時報時報, 2010年1月号（日本評論社）.
「特集 アジアにおけるほう整備支援と日本の役割」ジュリスト2008年6月15日号（有斐閣）.
金子有芳「 アジアの法整備と法發展」大學教育出版, 2010年.
下村恭民「國際協力 新版—その新しい潮流」有斐閣, 2009年.
桑原尙子“法整備支援における「法の移植(Legal transplants)」をめぐる議論の序論的考察：理論と實踐の架橋をめざして”, 國際開發研究フォーラム Vol.34, 名古屋大學, 2007.3.
松尾弘,“開發法學と法整備支援の理論化”, 横浜國際経濟法學 11(1), 横浜國立大學國際経濟法學會, 2002.7.
法務総合研究所 国際協力 講師 工藤恭裕 - 特集 各国法整備支援の状況, 2004.7.

3. 서양문헌

Alan Hunt, The Sociological Movement in Law, London: MacMillan, 1978.

Allot, A.N., The Limits of Law, Butterworth, 1980.
Aubert, V. “Some Social Functions of Legislator”, Acta sociologica, 1967.
Blake, Richard Cameron, “The World Bank's Draft 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and the Micro-Paradigm of Law and Development”, 3 Yale Hum. Rts. & Dev. L.J. 159, 2000.
Chua, Amy L., “Markets, Democracy, and Ethnicity: Toward a New Paradigm for Law and Development”, 108 Yale L.J. 1, 1998.
David M. Trubek, “Toward a Social Theory of Law : An Essay on the Study of Law and Development,” Yale Law Journal, vol.82, No.1, 1972.
David M. Trubek and Mark Galanter, “Scholars in Self-Estragement: Some Reflections on Law and Development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Wisconsin Law Review, no.4, 1974.
David N. Greenberg, “Law and Economic Development in light of Dependency Theory”, in Rita J. Simin ed., Research in Law and Sociology, Vol. 3, Greenwich: JAI Press.
Francis G. Snyder, “Law and Development in the Light of Dependency Theory,” Law & Society Review, vol.14, No.3, Spring, 1980.
Hahm, Chaihark, Rule of Law in South Korea: Rhetoric and implementation, in: Peerenboom, Randall ed,. Asian Discourses of Rule of Law, Routledge, 2004.
Otto. J.M., W.S.R. Stober, and J. Arnscheidt, “Using Legislative Theory to Improve Law and Development Projects”, in: J. Arnscheidt, B. Van Rooij, and J.M. Otto ed. Lawmaking for Development, Leiden University Press, 2008.
Posner, Richard A., “Creating a Legal Framework for Economic Development”,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3(1), 1998.
Rittich, Kerry, “The Future of Law and Development: Second Generation Reforms and the Incorporation of the Social”, Trubek, David & Santos, Alvaro ed., The New Law and Economic Development-A Critical Appraisal,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Santos, Alvaro, The World Bank's Uses of the Rule of Law Promise in Economic Development, in: Trubek, David & Santos, Alvaro ed., The New Law and Economic Development-A Critical Apprais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4. 한국 인터넷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 법무부
(http://www.moj.go.kr/)

■ 법무연수원
(http://www.Irti.go.kr)

■ 아시아법연구소
(http://www.lawasia.org)

■ 애드보캣 코리아
(http://www.advocateskorea.org/)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한국국제협력단
(http://www.koica.go.kr/)

■ 한국법제연구원
(http://www.klri.re.kr)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 한국정보화진흥원
(http://www.nia.or.kr/)

5. 카자흐스탄 인터넷 사이트

■ 카자흐스탄 대통령
(http://www.akorda.kz/ru/mainpage)

■ 카자흐스탄 교통통신부
(http://mid.gov.kz/ru)

■ 카자흐스탄 국가안보위원회
(http://knb.kz/ru/main.htm)

■ 카자흐스탄 법령정보
(http://www.zakon.kz/undefined)

■ 카자흐스탄 법무부
(http://www.adilet.gov.kz/)
■ 카자흐스탄 소비자권리보호청
(http://azpprk.kz/)
■ 카자흐스탄 정보통신 홀딩 “제르데”
(http://www.zerde2.isd.kz/)
■ 카자흐스탄 정부
(http://ru.government.kz/index.php/ru/)
■ 카자흐스탄 총리
(http://www.primeminister.kz/)
■ 카자흐스탄 NITEC
(http://www.nitec.kz/index.php/)

6. 우즈베키스탄 인터넷 사이트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http://www.press-service.uz/ru/)
■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http://www.minjust.uz/ru/)
■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
(http://lex.uz/index.aspx)
■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
(http://www.monitoring.uz/ru/institute-ru.html)
■ 우즈베키스탄 의회
(http://www.parliament.gov.uz/uz/)
■ 우즈베키스탄 전산화 및 정보기술개발센터
(http://www.uzinfocom.uz/ru)
■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위원회
(http://ccitt.uz/ru/)
■ 우즈베키스탄 정부
(http://www.gov.uz/ru/)
■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시스템개발센터

(http://egovernment.uz/ru/)

■ 우즈베키스탄 정보보안센터

(http://infosec.uz/ru/)

<참고자료>

<별첨 1> 한국-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법 조문 비교

한국-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법 조문 비교

대한민국 전자정부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346호, 2014.1.28., 일부개정]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전자정부법안[138]
제1장 총칙	**제1장 일반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한다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이 법률의 목적)** 이 법은 전자정부의 기능에 있어서 국가기관, 법인 및 자연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제2조 (이 법률의 과제)** 이 법률은 전자정부 구현 및 기능의 원칙, 전자정부의 관리 절차, 법률관계 주체의 권리와 의무의 규정 기본 과제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28.>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한다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조 (전자정부에 관한 법령)** 전자정부에 관한 법령은 전자정부법과 여타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이 체결한 조약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전자정부법 간에 저촉이 있을 경우에는 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장 전자정부 부문에서 국가관리** **제12조 (전자정부 부문에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각의 권한)** 전자정부 부문에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은 다음 각 1의 권한을 가진다: 전자정부개발을 위한 국가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 전자정부의 구현 및 기능을 위한 조건 보장; 전자정부 부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명부, 국가서비스 목록, 국가전자서비스 목록과 이들의 구현과 시행규칙에 대한 승인; 국가기관의 행정절차의 전자형태로 이전 목록 및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4. "중앙사무관장기관"이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를 말한다. 5. "전자정부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를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등 및 국민, 기업 등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6. "행정정보"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7.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8.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9.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기간의 승인 최적화와 자동화를 해야 하는 국가서비스; 제공하는 국가서비스의 수준 평가법의 승인; 전자정부 구현 및 개발 프로젝트의 효율적 실행; 제공하는 국가전자서비스의 지수에 따른 국가기관 활동의 결과 평가;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개발의 현황에 대한 평가; 국가양방향서비스 단일 포털 활동 범위 내에서 국가 기관 상호작용 국가서비스 및 규칙에 관한 정보의 게제에 관한 요건의 승인; 그 밖에 법령에서 내각의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권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여타 그 권한도 포한다될 수 있다. **제13조 (전자정부 부문에서 통신, 정보화 및 전자통신 기술 부문의 유권기관의 권한)** 전자정부 부문에서 통신, 정보화 및 전자통신기술 부문의 유권기관은 다음 각 1의 권한을 가진다: 자신의 권한 내에서 전자정부 부문의 국가정책의 실현; 전자정부 부문에서 국가기관 활동의 조정 수행; 단일기술방식의 전자정부 구현 및 기능 보장; 국제 선진 경험을 분석하여 전자정부 우선 개발 정책의 개발 및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에 제안; 전자정부 인프라의 구축, 정보자원과 국가기관 정보화 시스템 개발, 국가기관의 상호작용 보장; 전자정부 중앙데이터베이스에서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에 접근, 교환 및 처리 절차의 결정; 전자정부에 관한 법령의 요건 및 전자정부 부문의 국가표준의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전자형태로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국가서비스 규정에 대하여 동의; 정보자원의 정보안전 및 전자정부 정보시스템의 보장에 대한 조치의 개발 및 실행 국가기관 행정 절차의 자동화 보장 문제에 대한 규범적 체계 지; 전자정부의 효율적인 구현을 위한 현행 법령의 개선을 위한 제안의 준비; 국가기관 활동의 기능 및 아페의 조직변경 시스템 시행 및 국가전자서비스의 효율성 향상;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12.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1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14. "정보시스템 감리"란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5. "감리원"(監理員)이란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이하 "감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6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국가전자정부 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연구를 포한다하여 국가기관에 정보통신기술 도입과 개발 상태 모니터링 및 평가의 시행; 전자정부 부문의 국가기관 근로자 양성 및 자격 향상 시스템의 조직; 전자정부 부문에서 국제 협력 개발의 수행; 전자정부 부문에서 통신, 정보화 및 전자통신기술 유권기관의 권한에는 법령에 따라 여타 권한이 포한다될 수 있다. **제14조 (전자정부 부문에서 국가기관의 권한)** 자정부 부문에서 국가기관은 다음 각 1의 권한을 가진다: 통신, 정보화 및 전자통신기술 부문의 유권기관의 동의에 따라 행정절차 및 국가서비스의 최적화 및 자동화 조치의 채택; 단일창구 원칙에 따라 국가서비스의 제공; 통신, 정보화, 전자통신기술 부문의 유권기관의 동의에 따라 국가전자서비스기술규정의 개발 및 승인;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법령에 명시된 형태의 국가전자서비스의 제공 보장; 장애인에게 전자국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의 실현; 전자정부 중앙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정보자원 및 국가양방향서비스 단일 포털의 통합 보장; 국가양방향서비스 단일 포털에 국가전자서비스 제공 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행정 절차의 실현과 국가전자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 시스템 및 정보 자원의 계속적인 기능의 보장; 전자정부 부문의 근로자 자격 향상의 보장; 전자정부의 효율적인 구현 및 기능을 위한 법령의 재•개정; 여타 법령에 그 밖의 권한을 명시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권한에 포한다될 수 있다. **제5조 (전자정부 구현 및 기능의 원칙)** 전자정부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의 연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은 담당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필요한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담당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해당 기관의 편익보다 국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6.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②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은 상호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등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사	는 다음 기본 원칙에 근거한다: 전자정부 범위 내에서 국가기관활동의 공개성의 원칙; 국가전자서비스 이용자의 평등성 원칙; 전자정부의 범위 내에서 국가기관 간에 통합된 상호작용의 원칙; 전자형태의 행정 정보 처리의 원칙; 전자정부 정보 안전 보장의 원칙; 국가기관 활동과 전자국가서비스 수준의 항시적 개선 원칙. **제6조 (전자정부 범위 내에서 국가기관활동의 공개성의 원칙)**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절차의 실행과 전자국가서비스의 제공 절차에 관한 정보는 모두에게 허용되고 공개된다. 전자국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가기관은 서비스의 검토 상태 및 이행 결과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린다. **제7조 (국가전자서비스 이용자의 평등성 원칙)** 국가기관은 장애인을 포한다한 모든 이용자에게 제한 없이 전자국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필수적인 조건을 만들 의무를 가진다. **제8조 (전자정부의 범위 내에서 국가기관 간에 통합된 상호작용의 원칙)** 전자형태를 포한다하여 국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은 이용자에게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 또는 문서의 제출을 요청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국가서비스를 포한다하여 행정 절차의 수행에 필수적인 행정 정보의 제공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 (전자형태 행정 정보 처리의 원칙)** 국가기관은 전자형태의 행정 정보의 생성, 수집, 가공, 사용, 배포 및 보관을 보장해야 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기관이 생성, 수집, 가공, 사용, 배포 및 유

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이하 "전자정부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한다되어야 한다. 1.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3.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 4. 전자적 행정관리 5.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확대 및 안전성 확보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7. 정보자원의 통합·공동이용 및 효율적 관리 8. 전자정부 표준화, 상호운용성 확보 및 공유서비스의 확대 9.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과 성과 관리 10.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 재설계 11.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12. 그 밖에 정보화인력의 양성 등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	지하는 전자형태의 행정 정보는 그 밖의 형태로 제공되는 정보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제10조 (전자정부의 정보안전보장의 원칙)** 국가기관은 정보안정과 정보자원의 통일성 및 전자정부 정보시스템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 위한 국가기관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11조 (국가기관 활동과 전자국가서비스 수준의 항시적 개선의 원칙)** 국가기관은 사회 여론 및 평가 기준에 따라 국가기관의 활동과 국가전자서비스의 수준을 항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제15조 (전자정부 실현에 관한 활동의 계획)** 전자정부의 구현은 국가기관에 의해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이 승인한 전자정부 구현 및 개발에 대한 국가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단계적으로 실행된다. 국가기관은 자신의 권한 내에서 통신, 정보화, 전자통신기술 부문의 유권기관의 동의에 따라 전자정부의 구현에 따른 업무의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본계획(이하 "기관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관별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기관별 계획의 작성 기준, 수립 절차 및 추진현황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기관등의 대민서비스 및 행정관리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제3장 국가전자서비스의 제공
제1절 전자적인 민원처리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한다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한다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그 처리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	제16조 국가전자서비스의 종류 국가전자서비스의 종류는 정보서비스, 양방향서비스, 트랜잭션서비스로 구분된다. **국가정보서비스**는 국가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일종으로 법인과 자연인에게 제공한다. **국가양방향서비스**는 사용자의 요청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전자정보자원의 형태로 제공하며,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국가트랜잭션서비스**는 전자정보자원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며, 전자서명을 이용한 상호간에 정보교환을 필요로 한다. 제17조 국가전자서비스 제공의 요건 국가전자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이용자의 성별, 민족, 언어, 종교, 출생, 신념, 개

로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문서로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하거나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민원사항 등의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⑥ 전자화문서의 활용 및 진본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첨부·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가 행정기관등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에는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는 민원인이 행정기관등에 미리 해당 민원사항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행정기관등이 발급기관에 수수료를 송금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한다한다)를 냈을 때에만 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에 있어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의 발급을 갈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발급기관	인적 지위,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국가전자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이용자의 정보 또는 문서를 다른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경우 국가전자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이 정보 또는 문서를 이용자에게 요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국가기관 공식 웹사이트 또는 단일 창구 원칙을 포함한다. 국가양방향서비스 단일 포털을 통해 국가전자서비스를 신청자에게 제공 **제18조 국가전자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권리** 국가전자서비스 제공받을 경우에 신청자는 다음 각 1의 권한을 가진다: 서비스 제공 규정에 따라 적시에 국가전자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국가전자서비스 제공의 절차에 관하여 완전하고, 신용할 만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법령에 명시된 모든 형태로 국가전자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국가전자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권리;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전자서비스 제공에 관한 문제에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결정과 작위(부작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권리; 국가전자서비스 부문에서 침해당한 권리, 자유 및 법적 이익의 보호에 대하여 소송의 제기; 국가전자서비스 제공 절차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 참여; 국가전자서비스 수준의 평가; 국가전자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의. **제19조 제공받는 국가전자서비스 수준의 평가의 시행 절차** 국가전자서비스 수준의 평가는 **정보통신기술의 효율적인 도입의 평가 및 여론 연구 시행의 방법에 기초하여** 통신, 정보화 및 전자통신기술 부문의 유권기관이 수행한다. 국가기관은 여론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기

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구비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비서류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구비서류를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구비서류와 관련된 민원사항 등의 종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관은 국가전자서비스의 수준을 개선하는 조치를 채택한다. 국가전자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인터넷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를 제14조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한다께 청구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제5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 등의 범위와 감면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한 본인의 건강검진일, 예방접종일, 운전면허갱신일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민원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제10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해당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전자적 고지·통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고지서·통지서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등을 전자문서로 할 때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통지등의 종류와 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 관련 법령, 민원사무 관련 편람,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등 민원과 관련된 정보와 그 밖에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보·신문·게시판 등에 싣는 사항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의2(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한다한다)에 따라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등을 공공서비스(이하 "공공서비스"라 한다)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목록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공서비스의 지정 기준 및 목록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12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등록하고 관리·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민원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다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금융·부동산·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동의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민원인의 신청은 제2항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민원인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민원인에게 받아야 하는 사전동의로 본다.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⑥ 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12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원인이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하면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받은 민원인이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신청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공공서비스의 신청 및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13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정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전자적 급부제공)**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령에 따라 국민에게 일정한 급부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2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촉진**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개발·제공)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손쉽게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최신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제공할 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사항 및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자의 참여 확대)**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참여하여 토론, 건의, 정책제안 등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건의 및 정책제안 등을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전자정부서비스의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기업 등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행정·교통·복지·환경·재난안전 등의 서비스(이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활용 및 시범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이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① 국가는 국민에게 전자정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부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전자정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일부 기술이나 공공성이 큰 행정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 지원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분석)**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관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의 조사·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	

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운영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해당 기관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제25조(전자문서의 작성 등) ① 행정기관등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기관등이 해당 기관에서 접수하거나 발송하는 문서의 서식은 전자문서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전자문서의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과 전자문서 서식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전자문서 등의 성립 및 효력 등) ① 행정기관등이 작성하는 전자문서는 그 문서에 대하여 결재(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결재를 말한다)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위임전결하거나 대결(代決)한 전자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제29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7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①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를 행정기관등에 송신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송신·수신하여야 한다. ② 발송시기 또는 도달시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는 발송시기 또는 도달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송신하거나 수신하여야 한다. **제28조(전자문서의 발송시기 및 도달시기)** ① 행정기관등에 송신한 전자문서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시점이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송신자가 발송한 것으로 본다. ② 행정기관등이 송신한 전자문서는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에 입력된 때	

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특정한 기한까지 도달되어야 할 문서 등을 송신자가 기한 전에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발송하였으나 수신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로 인하여 기한 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송신자에 대하여만 수신자의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④ 행정기관등에 도달된 전자문서가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신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은 이를 흠이 있는 문서로 보고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행정기관등이 발송한 전자문서가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신자에게 도달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하게 도달된 문서로 보지 아니한다.	
제29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① 행정기관이 작성하는 전자문서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한다. 다만, 행정기관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공인전자서명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행정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행정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전자서명을 전자문서에 표시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관인·공인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그 전자문서는 행정전자서명이 된 후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⑤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정보, 개인의 경험, 해당 기관 안에서 생산·유통되는 업무지식 및 기술 중에서 정책결정 등의 주요 판단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의2(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대민 서비스의 통합적·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소관 전자적 시스템과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전자적 시스템을 상호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②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30조의3(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활용)**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관리되는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수집·관리하는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범위와 활용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30조의4(공개된 인터넷 데이터의 수집·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책의 수립,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의 수집 범위, 활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31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법령에서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의견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원격지(遠隔地) 간 업무수행을 할 때에는 온라인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	

른 온라인 영상회의의 도입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필요하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와 그 밖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온라인 원격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전자적 업무수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제33조(종이문서의 감축)**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업무 및 민원사무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종이문서의 작성·접수·유통 및 보관을 최소화하고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문서작성 및 보고과정에서 종이문서의 불필요한 출력을 최소화하도록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종이문서로 신청·신고 및 보고·제출 또는 통지·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지침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거나 종이문서의 사용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34조(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적 민원처리 및 업무	

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업무담당자 등의 본인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행정정보를 취급·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조·변경·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3.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공개·유포하는 행위 4.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 5.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 6.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7. 제39조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의 공동이용 승인을 받은 기관이 승인받지 아니한 방식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거나 승인받지 아니한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장치에 행정정보의 내용을 저장하는 행위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행위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	**제4장 전자정부 범위에서 국가권력기관 간에 상호협력 절차** **제20조 (전자정부의 기본 요소)** 전자정부 인프라의 기능은 다음 각 1의 기초사항에 근거한다: 국가양방향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일포털 및 국가기관의 공식사이트;

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	부처간 전자정부 통합 플랫폼; 전자정부 중앙데이터베이스; 전자정부 데이터처리센터; 전자정부 이용자에 대한 식별시스템 및 전자서명 공개키 인프라; 부서와 부처간에 국가기관정보시스템. **제21조 (국가양방향서비스의 단일 포털 및 국가기관의 공식 사이트)** 국가전자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국가기관의 공식사이트와 국가양방향서비스의 단일 포털을 통하여 제공한다. 국가양방향서비스 단일 포털은 부처 간 전자정부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국가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처 간에 정보화 시스템의 통합을 보장한다. **제22조 (부처 간에 전자정부 플랫폼 통합)** 부처간 전자정부 통합 플랫폼은 모든 정보시스템, 정보자원 및 전자정부 범위에서 국가기관데이터베이스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전자정부 중앙데이터베이스에 국가기관의 접근을 보장한다. **제23조 (전자정부 중앙데이터베이스)** 전자정부 중앙데이터베이스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에 의하여 결정되며, 전자정부 데이터베이스센터에서 보관해야 한다. 모든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은 전자형태를 포한다한 행정적 절차의 실행과 국가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자정부 중앙데이터베이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제24조 (전자정부 데이터처리센터)** 전자정부 데이터처리센터는 부처와 부처 간에 정보 시스템 및 국가기관 정보자원, 전자정부 중앙데이터 베이스의 보관 및 통합을 보장한다. 국가기관의 정보 시스템, 정보자원, 전자정부의 중앙데이터베이스의 상호작용은 국가기관의 부처 간 망을 통하여 실현된다. 전자정부 시스템 데이터처리센터는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를 수행하며, 그의 보호와 통합을

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2. 통계정보, 문헌정보, 정책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3. 행정기관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②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행정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정보는 공동이용 대상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행정정보보유기관은 공동으로 이용되는 행정정보가 최신 정보가 되도록 하고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특정한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범위에서 대상정보의 종류, 범위 및 유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승인)** ①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와 그 범위, 공동이용의 목적·방식, 행정정보보유기관 등을 특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공동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의 조건 등을 정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공동이용을 신청한 행정정보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보장한다.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관리는 해당 국가기관이 수행한다. **제25조 (전자정부 이용자의 식별 시스템 및 전자서명 공개키 인프라)** 전자정부 이용자 식별 시스템은 국가전자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보시스템 정보기술의 상호작용을 보장하는 전자정부 인프라의 정보적 요소이다. 자연인 및 국가기관 근로자의 식별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시민의 경우 식별번호(개인코드)에 근거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코드 또는 법인의 납세자 식별 코드에 의한다. 국가기관 간에 전자문서의 교환 및 국가전자서비스의 제공은 전자정부 공개키 인프라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제26조 (부처와 부처 간에 국가기관 정보시스템)** 전자정부 정보시스템은 그 용도 및 상호협력 절차에 따라 부처 및 부처 간으로 구분된다. 부처 정보 시스템은 전자정부 내에서 정보의 수집, 보관 및 처리를 보장하는 국가기관의 정보시스템이다. 전자정부 부처 간 정보시스템은 국가기관 간에 상호작용을 자동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만 해당한다)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2. 공동이용을 신청한 행정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동이용을 신청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 그 신청기관 고유의 업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공동이용의 목적이나 행정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신청기관이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9., 2013.3.23.>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여 공동이용의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이미 공동이용의 승인을 한 사무에 있어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그 명칭이나 소관 부서 등이 변경되는 경우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올라 있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⑥ 안전행정부장관은 공동이용하려는 사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등이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개별 기관이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그 사무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에 대하여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그 기관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 2. 그 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 3.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람 **제40조(심사·승인·협의의 의제)** ①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조항의 본문에서 정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조항의 단서에 따라 신청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2. 「관세법」 제116조제1항 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② 신청기관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한다되어 있으면 그 행정정보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심사, 승인,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2.> 1.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2항에 따	

른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에 관한 심사·승인 및 협의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에 관한 심사·승인 및 협의 3.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에 관한 심사 및 승인 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에 관한 심사 및 승인 5.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관한 심의 및 승인 6.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관한 심사 및 승인 7.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에 관한 심사·승인 및 협의 **제40조(심사·승인·협의의 의제)** ①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조항의 본문에서 정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조항의 단서에 따라 신청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2. 「관세법」 제116조제1항 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② 신청기관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한다되어 있으면 그 행정정보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심사, 승인,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2., 2014.5.20.> 1.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에 관한 심사·승인 및 협의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에 관한 심사·승인 및 협의 3.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에 관한 심사 및 승인 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에 관한 심사 및 승인 5.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관한 심의 및 승인 6.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관한 심사 및 승인 7. 「상업등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에 관한 심사·승인 및 협의 [시행일 : 2014.11.21.] 제40조 **제41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한 공동이용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동이용을 신청한 후에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거나 제74조에 따른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 발생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이용기관의 공동이용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행정정보보유기관은 소관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용기관이나 그 소속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해당 이용기관의 공동이용을 일시 정지시켜 줄 것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공동이용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해당 이용기관과 행정정보보유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철회 또는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제19조제1호·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29., 2014.1.28.> 1. 공동이용의 목적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3.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동의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이용기관은 그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여 이용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날 또는 입건이나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을 한 날 이후에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공동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취소·철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 법령을 위반한 정보주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벌 등 제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그 업무 또는 정보의 성질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3조(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① 정보주체는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행정정보 중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열람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이용기관 2. 공동이용의 목적 3. 공동이용한 행정정보의 종류 4. 공동이용한 시기 5. 해당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② 안전행정부장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정보주체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용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날 또는 입건이나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정보주체는 이용기관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이용기관이 공동이용한 행정정보 중 본인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열람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행정정보의 명칭, 공동이용 횟수 등의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4조(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 청구)** ①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이용기관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청구의 대상·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제1절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와 예산, 성과 등 관련 제도를 연계·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이하 "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도입계획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촉진)**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참조모형(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성요소들을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으로 정의한다로써 일관성·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모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운영하려는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에 관한 기술의 제공 및 교육·훈련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조모형,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각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등 행정기관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8조(정보통신기술에 적합한 업무 재설계)**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할 때 기존의 조직구성, 인력배치 및 업무절차 등을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적합하도록 재설계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재설계의 범위가 둘 이상의 행정기관등의 업무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재설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의 소관 법령 및 제도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조성 **제49조(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제45조제3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술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2. 정보의 공동활용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5.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0조(표준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1조(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정보자원 중 여러 행정기관등 또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자원(이하 "공유서비스"라 한다)을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그 중 우수한 정보자원을 발굴·선정하여 다른 행정기관등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공유서비스의 효율적인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하고, 개발된 서비스 중 다른 행정기관등 또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2항의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우수한 정보자원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기관은 보급받는 기관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공유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기관등을 통합·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다양한 행정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등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3조(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정보화역량 향상 및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화인력 개발계획 및 전문인력의 양성, 자격제도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에 따라 자	

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화인력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이하 "정보자원현황등"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수요를 조사하고, 정보자원의 통합기준 및 원칙 등(이하 "정보자원통합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③ 정보자원현황등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정보자원 통합기준에 포한다되어야 할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과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 제고**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할 때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3항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 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과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해당 정보시스템이 적절하게 개발·구축되고 있는지를 감리기준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 및 감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 ①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재정능력, 그 밖에 정보시스템 감	

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하 "감리법인"이라 한다)은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미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준의 범위 내의 자본금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감리법인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 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감리원)** ① 감리원이 되려는 사람은 등급별 기술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증을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감리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1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①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6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감리법	

인의 임원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0조에 따른 감리원이 될 수 없다. ③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 10.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	

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계속 등)** ① 제62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리법인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법인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감리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감리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감리법인이 등록취소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제64조(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자정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선정·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는 업무(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전자정부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2. 사업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 사업관리를 수행할 인력, 업무수행계획,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해당 전자정부사업을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전자정부사업과 위탁용역 및 그 성과에 대한 자료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대가 산정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 전자정부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4.5.] **제64조의3(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책무 등)**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가 전자정부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나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5.]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의 역사, 문화, 복지, 환경 등의 지역정보서비스 개발과 보급 2. 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역의 정보화기반 조성 3. 정보화 낙후지역의 집중 지원 4.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의 통합관리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5.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와 그 밖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시범사업의 추진)**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과 효	

율적인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사전협의)**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전협의의 대상사업,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성과 분석 및 진단)**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여러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추진실적 및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제46조제2항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실태와 그 추진성과를 분석·진단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성과 분석 및 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자료제출 등 협조)**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면 제1항에 따라 수집된 통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0조(전자정부의 국제협력)**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통하여 전자정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전자정부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2. 전자정부 관련 국제평가지수의 관리 3. 그 밖에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자정부의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중앙사무관장기관 소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5.> 1.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 3.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업무	

4. 감리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업무 5.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관리의 위탁 및 개선에 관한 연구 6.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지원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전자정부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는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지방정부 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4. 그 밖에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소	

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설립,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출연할 수 있고, 국가는 개발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개발원은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개발원의 지역정보화 추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권한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1.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사무 2. 감리업무 3.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 **제7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4.5.>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종사자(행정정보 이용 관련자만 해당된다) 3.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 4.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7장 벌칙	**제5장 종결규정**
제76조(벌칙) ① 제35조제1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2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조·변경·훼손하거나 이용한 자 2. 제35조제3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방법 및 프로그램을 공개·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5조제5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5조제6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5조제7호를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한 방식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거나 승인받지 아니한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장치에 저장한 자	**제27조 (전자정부 구현 및 개발 활동에 대한 제정 지원)** 전자정부 구현 및 개발과 활동에 대한 제정 지원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가예산 및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은 원천을 통해서 실현된다. **제28조 (이 법률의 위반에 대한 책임)** 전자정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책임을 가진다. **제29조 (이 법률에 따른 법령의 입법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 다음 각 1을 실행한다: 이 법률에 따라 정부령의 이행; 이 법률에 저촉되는 법령의 국가기관이 재검토 및 폐지를 보장. **제30조 (이 법률의 발효)** 이 법률은 공포한 시점에서 6개월이 경과하면 법적 효력을 가진다.

5. 제7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④ 제35조제8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58조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린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제6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안전행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제12346호, 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정부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최초 계획은 이 법 시행 후 다음 연도에 수립한다. **제3조**(기관별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별 계획의 최초 계획은 이 법 시행 후 다음 연도에 수립한다. **제4조**(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전자정부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한다하는 것으로 본다.	

138)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법안은 현재 입안 준비 중임.

<별첨 2>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법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법

이 법률은 소비자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경제적, 사회적 토대를 정하고 및 안전하고 품질 좋은 물품(용역,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데에 있다.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법률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

이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개념이 사용된다:

1) 제조자라 함은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생산하는 자연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유효기간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물품이 목적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말한다.

3) 용역이라 함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그 활동의 결과가 물질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결함이라 함은 물품(용역, 서비스)가 기술규정, 규격표준 및 계약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판매자(제조자, 수행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한다.

5) 보증기간이라 함은 소비자가 물품(용역, 서비스)를 적합하게 사용하고 보관했을 경우 판매자(제조자, 수행자)가 물품(용역,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간을 말한다.

6) 서비스라 함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그 활동의 결과가 물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7) 사용기간이라 함은 물품을 용도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기간을 말한다.

8) 수행자라 함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및 법인을 말한다.

9) 보관기관이라 함은 규정된 보관조건을 준수하였을 경우 물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한다.

10) 판매자라 함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민법에 의거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자연인 및 법인을 말한다.

11) 물품이라 함은 제조자(수행자)가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12) 물품(용역, 서비스)의 안전이라 함은 소비자의 생명, 건강 및(또는) 재산, 환경에 해를 가할 가능성과 일반적인 조건에서 물품을 사용, 보관, 운송 폐기 또는 용역의 수행(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위험성이 부재한 것을 의미한다.

13) 물품(용역, 서비스)의 품질이라 함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물품(용

역, 서비스)의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14) 물품의 구입(용역의 수행, 서비스의 제공)을 확인하는 문서라 함은 영수증 및 신용 현금 주문의 영수증(receipt of credit cash order), 일일 쿠폰 영수증(receipt to the tear-off coupon) 및 물품(용역, 서비스)의 명칭, 가격, 구입일 판매자(제조자, 수행자)에 관한 정보를 담은 기타 문서를 말한다.
15) 소비자라 함은 물품(용역, 서비스)를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주문, 구입할 의사를 가지거나 주문, 구입 및(또는) 사용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16) 유권기관이라 함은 소비자권리보호 부문에서 관리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제2조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
1.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 카자흐스탄 공화국 민법, 이 법률 및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재정, 사회, 의료, 관광 및 여타 서비스 부문과 소비자 보호 문제에서 소비자의 권리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규정된다.
3. 카자흐스탄 공화국이 체결한 조약이 이 법률의 여타 규정과 저촉되면 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장 소비자보호 부문에서 국가 규제

제3조 소비자보호 부문에서 국가 규제
소비자보호 부문에서 국가 규제는 이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여타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령 및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에 따라 수행된다.

제4조 소비자보호 부문에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의 권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는 다음 각 1의 권리를 수행한다:
1) 소비자보호 부문에서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
2) 헌법, 이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여타 법률 및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령에 명시된 여타 기능을 수행.

제5조 유권기관의 권한
유권기관은 다음 각 1의 권한을 가진다:
1) 소비자보호 부문에서 국가정책의 실현 보장;
2) 소비자보호 부문에서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에 제안;
3)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비자보호법의 개선에 관한 국가기관 활동의 조율;
4)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의 개선을 위한 조치 채택;

5) 삭제;
6)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령,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에 명시된 여타 권한 수행.

제6조 국가기관의 권한

국가기관은 자신의 권한 내에서 다음 각 1의 권한을 가진다:
1) 삭제;
2) 삭제;
3) 소비자권리보호 부문에서 자연인 및 법인의 신청 검토;
4)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법령의 위반자에 대한 책임 조치의 적용;
5)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법령의 준수에 대한 관리의 수행;
6)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령 및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에 명시된 여타 권한을 수행.

제3장 소비자의 권리와 그 보호

제7조 소비자의 권리

1. 소비자는 다음 각 1에 명시된 권리를 가진다:
1) 물품의 구매(용역의 수행,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자유로운 체결;
2) 소비자권리보호 부문의 정보에 대하여 접근;
3) 물품(용역, 서비스)와 판매자(제조자, 수행자)에 관한 정보의 수신;
4) 안전한 물품(용역, 서비스)의 구매;
5) 물품(용역, 서비스)의 자유로운 선택;
6) 적합한 품질의 물품(용역, 서비스)
7) 적합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품질의 물품 교환 또는 반환
8) 물품(용역, 서비스)의 결함에 따른 소비자의 생명, 건강 그리고(또는) 재산에 입힌 손실(손해)에 대하여 전부 배상;
9) 물품의 구매(용역의 수행,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승인하는 문서를 판매자(제조자, 수행자)로부터 수령;
10) 물품으로 제공되는 물품(용역의 수행, 서비스의 제공)와 같은 성질의 게임의 발의자(조직자)에게 항의 표명;
11) 소비자단체의 설립;
12)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13) 권리 및 법적 이익의 보호;
14) 이 법률 및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명시된 여타 권리의 수행.

제8조 물품의 구매(용역의 수행,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서 체결 자유의 권리

소비자는 자유롭게 물품의 구매(용역의 수행,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가 물품의 취득(용역의 수행,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강제로 체결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제9조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소비자의 권리는 교육 프로그램에 소비자 기초 지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법 및 소비자의 권리와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장한다.

제10조 물품(용역, 서비스) 및 판매자(제조자, 수행자)에 관한 정보를 수령할 소비자의 권리

1. 소비자는 물품(용역, 서비스) 및 이 법률의 제25조에 따라 판매자(제조자, 수행자)에 관한 신용할 만한 정보의 전부를 제때에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물품(용역, 서비스) 및 판매자(제조자, 수행자)에 관한 신용할 수 없는 정보 일부를 불시에 제공받았을 경우 다음 각 1에 해당한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성질의 아닌 상품(용역, 서비스)의 구매;

소비자는 계약을 파기하고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목적대로 구매한 물품(용역,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는 물품을 구매(용역의 수행, 서비스의 제공)에 부적합한 정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안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정보가 명시한 기간 내에 제공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의 생명, 건강 그리고(또는) 재산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 소비자는 이 법률의 제16조 및 제31조에 명시된 요구를 판매자(제조자, 수행자)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안전한 물품(용역, 서비스)을 구매할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는 물품(용역, 서비스)에 대하여 그 사용·보관·운송 및 활용에 관한 조건을 정할 때 소비자의 생명, 건강, 재산 및 환경에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물품(용역, 서비스)의 안전성 보장 하는 요건은 의무사항이며 카자흐스탄 공화국 기술규정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정한다.

제12조 물품(용역, 서비스)을 자유롭게 선택할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는 민사상 상행위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되지 않은 상품(용역, 서비스)를 판매자(제조자, 수행자)의 업무 시간을 고려하여 편안한 시간에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를 가진다.

제13조 적합한 품질의 물품(용역, 서비스)을 구매할 소비자의 권리

1.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물품(용역, 서비스)의 품질에 의무적 요구가 명시된 경우 소비자는 이 요구에 따라 상품(용역, 서비스)를 수령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비자는 구매한 물품(용역, 서비스)의 품질, 세트, 무게, 용량, 수량, 크기를 확인할 권리를 가진다.

3. 계약 체결 시에 소비자가 판매자(제조자, 수행자)에게 명확한 물품 구매(용역의 수행, 서비스의 제공)의 목적을 명시한 경우 소비자는 이 목표에 따라 적합하게 이용하기 위한 적합한 품질의 물품(용역, 서비스)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다.

4. 물품 판매와 관련된 견본과(또는) 설명서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견본과(또는) 설명서와 일치하는 물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적합한 품질의 물품을 교환 또는 반환할 소비자의 권리

1. 판매자(제조자)가 14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비식품의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매한 물품을 유사한 물품의 다른 양, 형태, 크기, 스타일, 색깔, 세트로 교환하고 판매자(제조자) 차액을 계산할 수 있다.
교환은 이 법률의 제30조에 따라 진행된다.

2. 물품의 교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판매자(제조자)가 부재할 경우 판매자는 구매한 물품을 판매자(제조자)에게 반환하고 물품에 대해 지불한 금액을 반환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았으면, 물품의 교환 또는 반환의 장소는 물품의 구매 장소로 한다.

제15조 부적합한 품질의 물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의 권리

1. 판매자가 물품의 결함에 대해 특정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한 품질의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1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1) 적당한 구매가격의 인하;

2) 물품의 결함을 무상으로 제거.

적합하지 않은 품질의 물품 판매자와 제조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이 항의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명시된 요구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판매자 또는 제조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3) 물품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반환;

4) 유사한 상표(모델,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

5) 구매가격을 알맞게 재정산하여 해당 물품을 다른 상표(모델,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

6)계약을 파기하고 물품에 지불한 금액을 반환.
손해보상권은 이 항의 제1호~ 제6호에 명시된 요구의 선택과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있다.
2. 계약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 조의 제1항에 명시된 요구를 소비자는 물품의 구매 장소에 제안할 권리를 가진다.
3. 이 법률에 명시된 기간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소비자는 이 조의 제1항에 명시된 요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상품(용역, 서비스)의 결함에 따른 소비자의 생명, 건강 그리고(또는) 재산의 손실(손해)에 대하여 전부 보상받을 권리

1. 소비자는 물품(용역, 서비스)의 설계, 조제 또는 그 밖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건강과(또는) 재산에 끼친 손실(손해)에 대한 보상권을 가진다.
2. 물품(용역,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판매자(수행자)의 과실과 계약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인정된다.

제17조 물품의 결함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제출 기간

1.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물품이 유효기간 내에 결함이 발견되면 소비자는 물품의 결함에 관한 요구를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2. 물품에 보증기간이 정해진 경우 보증기간 동안에 물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소비자는 물품의 결함과 관련된 요구를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계약서에 달리 정한 규정이 없으면 보증기간은 물품을 구매자에 전달된 시점부터 기산된다.
물품에 보증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을 시에 물품의 결함과 관련된 요구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 및 계약서에 더 긴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물품을 수령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구매한 물품에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 소비자가 제출할 수 있다.
계약서 규정된 보증기간이 2년 이하이고 소비자가 물품의 결함을 보증기간이 만료되고 발견하였지만 소비자가 물품을 전달 받은 시점에서 2년이 이내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물품의 양도 전이나 양도 시점 이전에 발생한 원인에 의하여 물품의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판매자(제조자)가 책임을 진다.
계약서에 구성품의 보증기간이 일반 제품보다 짧게 정해진 경우 구성품의 결함이 일반 제품의 보증기간에 발견될 경우 소비자는 구성품의 결함의 제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계약서에 구성품의 보증기간이 일반 제품보다 더 긴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구성품의 결함이 구성품의 보증기간에 발견될 경우 소비자는 구성품의 결함에 대하여 요

구할 권리를 가진다.
물품을 견본 또는 우편으로 하는 판매 및 매매계약 체결 시점과 소비자에게 물품을 양도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판매의 경우에 보증기간 또는 물품의 결함이 발견된 기간은 소비자에게 물품을 전달(배송)된 날부터 기산한다.
소비자가 판매자(제조자)와 관련된 상황으로 인하여 물품사용의 기회를 상실한 경우 보증기간은 판매자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전까지 경과하지 않는다. 물품의 전달일(배송일), 설치일(연결일) 또는 조립일 및 판매자와 관련된 상황에 따라 소비자가 물품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한 날을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 기간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된다.

제18조 물품의 구매(용역의 수행,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판매자(제조자, 수행자)로부터 수령할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는 물품의 구매(용역의 수행,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서류를 판매자(제조자, 수행자)로부터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가 물품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도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조건에 관한 사실에 증언을 참조할 권리는 상실하지 않는다.

제19조 우승상품의 형태로 전달되는 물품(수행한 용역, 제공한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 게임 발의자(조직자)에게 항의를 표명할 소비자의 권리
상품(용역, 서비스)의 결함의 발생이 소비자에게 전달한 이후에 소비자의 물품 사용 규칙 또는 보관 또는 제3자의 행위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함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게임의 발의자(조직자)는 물품(용역, 서비스)의 결함의 제거를 판매자(제조자, 수행자)에게 신청하는 방법으로 20일 이내에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제20조 소비자의 소비자단체 설립권
소비자는 자발적으로 소비자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1조 정신적 피해 보상권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법령에 명시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적 이익을 판매자(제조자, 수행자)가 위반하여 소비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는 판매자(제조자, 수행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법원에서 정한 액수를 보상해야 한다.

제22조 소비자의 권리 및 법적 이익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
소비자의 권리와 법적 이익의 보호는 해당 국가기관, 법원, 중재원의 권한 내에서 수행된다.

제4장 판매자(제조자, 수행자)의 권리와 의무

제23조 보증기간을 정할 판매자(제조자, 수행자)의 권리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보증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조자(수행자)는 물품(용역, 서비스)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제조자(수행자)가 이 법률이 정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판매자는 제조자(수행자)가 정한 기간보다 보증기간을 늘릴 수 있으나 줄일 수는 없다.

제24조 판매자(제조자, 수행자)의 의무

판매자(제조자, 수행자)는 다음 각 1의 의무를 진다:
1) 물품(용역, 서비스) 및 판매자(제조자, 수행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
2) 물품(용역, 서비스)의 안전성 보장;
3) 물품(용역, 서비스)의 자유로운 선택 보장;
4) 물품(용역, 서비스)의 적합한 품질 보장;
5) 적합하거나 부적합한 품질의 물품을 교환하거나 환불 받도록 보장;
6) 물품(용역,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건강 그리고(또는) 재산에 입힌 피해를 전부 보상;
7) 카자흐스탄 공화국 세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경우에 따라 금전등록기의 배치;
8) 금전등록기가 위치한 곳에 카자흐어 및 러시아어로 영수증 수령의 필요성에 대하여 명시하고 금전등록기 사용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 세무 당국(전화번호 명시)에 신고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
9) 물품의 판매(용역의 수행,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연인이 있을 경우 그의 성, 이름, 부칭(존재할 경우) 및 사진이 명시된 배지를 착용하도록 보장;
10) 물품의 판매(용역의 수행, 서비스의 제공) 시에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서류의 발급;
11) 명시한 업무 규칙의 준수;
12) 이 법률 및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명시된 여타 요구의 수행.
판매자(제조자)는 영업장 내·외부의 전시된 물품에 가격 라벨을 부착할 의무를 가지며, 물품 보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조자(수행자)는 용역 및 서비스의 가격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제조자는 물품의 유효기간과 보존기간을 정해야 한다.

제25조 물품(용역,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판매자(제조자, 수행자)의 의무

1. 물품(용역,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의무적인 절차에 따라 다음 각 1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물품 (용역, 서비스)의 명칭;
2)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의 종류와 특징;
3) 물품 (용역, 서비스)가 기술 규정, 표준 및 그 밖의 문건에서 규정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적합한 마크 부착;
4) 물품(용역, 서비스)의 기본적인 소비 특성에 관한 정보;
5) 물품의 구성;
6) 식품의 구성에 관한 정보;
7) 제조업체의 상표;
8) 물품의 생산국;
9) 물품(용역, 서비스)의 구매 가격 및 조건;
10) 보증기간의 존재 유무;
11) 식품 조리법 추천(물품의 특성에 의해 필요한 경우);
2. 판매자(제조자)는 교환이 되지 않는 적합한 품질의 물품에 관해 제때에 공지할 의무를 가진다.

제26조 판매(제조, 수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판매자(제조자, 수행자)의 의무

1. 판매자(제조자, 수행자)는 소비자에게 명칭(상호), 위치(법인 주소) 및 업무 시간을 카자흐어와 러시어로 공개하고 이 정보를 간판에 명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인 판매자(제조자, 수행자)는 소비자에게 자신의 성, 이름, 부칭(부칭이 존재할 경우), 국가등기번호 및 개인사업자등록을 실행한 국가기관의 명칭을 제공해야 한다.
2. 판매자(제조자, 수행자)가 수행하는 활동의 종류가 허가를 필요로 할 경우 소비자에게 허가증에 관한 정보, 허가증의 효력 기간, 허가증을 발급한 국가기관에 대해서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로 명시해야 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공증한 허가증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정보는 판매자(제조자, 수행자)의 근무지 외에 임시적 장소인 전시회, 가판대 등의 여타 장소에서 상업, 생활 및 기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에도 공지되어야 한다.

제27조 물품(용역, 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할 판매자(제조자, 수행자)의 의무

1. 판매자(제조자)는 정해진 물품의 보관기간 또는 유효기간 동안에 물품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를 가진다.
2. 판매자(제조자, 수행자)는 소비자에게 물품(용역, 서비스)의 위험성, 안전한 이용 조건에 대해서 공지할 의무를 가진다. 이 경우 물품(용역, 서비스)을 안전하게 사용, 보관, 운송 또는 폐기할 경우 특별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면 제조자(수행자)는 그 사항을 물품(용역, 서비스)의 사용설명서, 포장지, 라벨 및 특정한 물품(용역, 서비스)에 허용되는 여타의 방법으로 명시한다.

3. 수입품을 포함하여 적합성 검사가 필수적인 물품은 해당 적합성 인증서 및 적합성 선언 없이는 판매할 수 없다.
4.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보관, 운송 또는 폐기에 대한 규정을 준수했음에도 불과하고 물품이 소비자의 생명, 건강 및(또는) 재산, 환경에 해를 입혔거나 입힐 수 있는 경우에 판매자(제조자)는 즉시 그 유해요인을 제거할 때까지 생산(판매)를 중단한다.
유해요인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제조자)는 이 물품을 생산(판매)에서 제외하고 이 사실을 적시에 해당 국가기관에 알리고 소비자의 생명, 건강 및(또는) 재산, 환경을 위해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방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시에 알리기 위한 모든 필수적인 조치를 수행한다.
방송을 통해서 물품이 소비자의 생명, 건강 및(또는) 재산, 환경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에 대하여 알리는 것은 판매자(제조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5. 판매자(제조자)가 이 조의 제4항에 명시된 의무인 생산에서 물품의 제외, 및 유통의 중지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 명령을 내린다.
해당 국가기관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서 규정한 책임을 진다.
물품의 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판매자(제조자)가 전부 배상해야 한다.

제28조 물품(용역, 서비스)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할 판매자(제조자, 수행자)의 의무

1. 판매자(제조자, 수행자)는 영업시간 중 편리한 시간에 소비자가 적합한 품질의 물품(용역, 서비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품질 물품(용역, 서비스) 및 필요하지 않은 수량과(또는) 품목의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2. 물품의 판매 시 판매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단일측정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에서 적용되는 측정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3. 소비자가 물품(용역)의 질량, 수량, 길이 및 기타 수치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 경우 판매자(제조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단일측정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에서 사용하는 측정수단으로 위에서 명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이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용역, 서비스)의 선택 시에 어떠한 혜택이나 직간접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29조 물품(용역, 서비스)의 적합한 품질을 보장할 판매자(제조자, 수행자)의 의무

1. 계약에 물품(용역,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필수 요건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 판매자(제조자, 수행자)는 이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물품(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2. 판매자(제조자, 수행자)는 물품(용역,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능하지 않을 경우 물

품(용역, 서비스)의 특성과 그 사용법을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전달된 물품(수행된 용역, 제공된 서비스)의 품질이 물품(용역, 서비스)에 관하여 제공한 정보 및 계약서의 조건과 일치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물품(용역, 서비스)의 품질, 안전에 대하여 증명하는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3. 계약서에 물품(용역,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조건이 나와 있지 아니한 경우 판매자(제조자, 수행자)는 소비자에게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고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양도(용역을 수행,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4.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가 판매자(제조자, 수행자)에게 구체적인 물품 구매(용역 수행, 서비스 제공)의 목적에 관하여 알린 경우 판매자(제조자, 수행자)는 소비자에게 이러한 목적에 맞는 사용에 적합한 품질의 물품을 양도(용역을 수행,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5. 견본 및(또는) 설명서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견본 및(또는) 설명서와 일치하는 물품을 양도할 의무를 가진다.

제30조 적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을 판매한 판매자(제조자)의 의무

1. 판매자(제조자)는 소비자가 식품이 아닌 적합한 품질의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형태, 속성, 스탬프, 라벨이 유지되어 있으며 물품의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물품을 구매한 날부터 14일 이내(계약서에 더 긴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으로 함)에 교환 및 환불할 수 있다. 단, 아래의 각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의약품;

2) 속옷;

3) 양말;

4) 동물 및 식물.

물품의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분실하였거나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소비자가 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해당 판매자(제조자)에게 물품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물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있다.

2. 소비자가 물품의 결함을 발견하고 물품 교환에 관한 요구를 제시하는 경우 판매자(제조자)는 물품을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하며, 물품의 품질에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요구를 한 날로부터 13일 이내에 교환한다.

물품의 교환 시 계약서에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건을 교환한 시점부터 다시 기산한다.

3. 물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소비자의 동의에 따라 판매자(제조자)는 계약서에 다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해당 요청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의 결함을 제거한다. 물품의 결함을 제거한 경우 물품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보증기간에 추가된다. 이 기간은 소비자가 결함의 제거를 요청한 날부터 소비자의

요청이 수행된 기간으로 정한다.
4. 판매자(제조자)가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이 법률의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명시된 경우와 절차에 따라 판매자(제조자)는 물품의 결함에 책임진다.
단, 소비자가 결함이 소비자에게 물품이 전달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판매자(제조자)는 판매(제조)된 물품의 결함에 대해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판매자(제조자) 책임의 면제 또는 제한에 대한 합의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5. 물품의 결함이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에 발생하였거나 소비자가 물품사용규정 또는 보관 또는 제3자의 행동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판매자(제조자)가 정한 물품의 보증기간에 판매자(제조자)는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의무를 가진다.
6. 소비자의 요구에 대한 수행을 지체할 경우 이러한 위반을 한 판매자(제조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소비자에게 1일 당 물품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체금을 소비자에게 지불한다.
7. 소비자에게 환불할 경우 판매자(제조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 물품의 형태의 상실 또는 여타 이유로 환불액을 인하할 수 없다.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동일한 상표(모델, 종류)의 물품과 교환할 경우 가격은 재정산하지 않는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소비자와 재정산은 계약의 해지 시에 그 물품의 가격이 인상되거나 물품의 구매 시 물품 가격보다 인하된 경우에 실시한다.
물품의 결함으로 다른 상표(모델,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할 경우에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교환할 상품보다 싼 경우 소비자는 가격차를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가 추가로 지불하는 것을 거절할 경우에 양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소비자에 구매한 물품의 금액을 환불한다.
구매한 물품이 교환할 물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소비자에게 차액을 환불한다.
위에 명시된 재정산은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인상된 경우에는 요구를 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으로 계산하며, 물품의 가격이 인하된 경우에는 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8. 판매자(제조자)는 소비자가 부적합한 품질의 물품에 대한 반송 및(또는) 환불과 관련된 지출을 보상한다.
9. 구매한 물품의 지불 형태는 소비자와 판매자(제조자)의 합의에 따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해진다.

제31조 물품(용역,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건강 및(그리고) 재산에 해를 가했을 경우 전부 보상할 판매자(제조자, 수행자)의 의무

1. 판매자(제조자, 수행자)는 물품(용역, 서비스)의 구조적 결함, 질적 결함 및 여타

결함 또는 물품(용역, 서비스)에 관하여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적시에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 건강 및(또는) 재산에 입힌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한다. 또한, 청구한 기간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답변을 주거나 또는 소비자의 청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적합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판매자(제조자, 수행자)는 과실과 계약 체결의 유무와 관계 없이 손해를 배상한다.

2. 물품(용역, 서비스)의 결함이 확인된 경우 판매자(제조자, 수행자)는 소비자, 소비자단체(소비자협회, 소비자연맹)이 물품(용역, 서비스)의 검사에 지출한 비용을 전부 보상할 의무를 가진다.

3. 물품의 결함 및 안전규정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는 그 손해가 유효기간(사용기간) 동안 발생했거나 또는 유효기간(사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물품의 생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했을 경우 배상한다.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배상한다.

용역 또는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 수행자가 배상한다.

4. 판매자(제조자, 수행자)는 피해가 제3자의 행동, 불가항력 또는 소비자가 물품(용역, 서비스)의 사용 및 보관에 관한 규칙의 위반으로 발생한 것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제32조 물품의 유효기간, 보관기간 및 사용기간을 정할 제조자(수행자)의 의무

1. 제조자는 시간이 가면서 물품의 속성이 없어지는 물품에 대해서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기술규정법에 의거하여 유효기간 및(또는) 보관기간을 정해야 한다.

2. 판매자(제조자)는 물품이 유효기간 및(또는) 보관기간 만료 전에 소비자가 물품의 용도 맞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산하여 소비자에게 전한다.

3. 유효기간은 물품이 제조된 시점부터 기산된다. 물품의 제조기간과 사용준비기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은 사용준비기간부터 기산되며 이 사실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유효기간 및(또는) 보관기간이 만료된 물품 및 유효기간 및(또는) 보관기간을 정하지 않은 물품은 판매할 수 없다.

4.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소비자의 생명, 건강 및(또는) 재산, 환경에 위험한 물품은 사용기간을 정한다.

제33조 판매자(제조자, 수행자)의 금전등록기 배치의 의무

1. 판매자(제조자, 수행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세법에 명시한 경우와 절차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배치할 의무를 가진다.

판매자(제조자, 수행자)는 금전등록기가 위치한 곳에 카자흐어 및 러시아어로 영수증 수령의 필요성에 대하여 명시하고 금전등록기 사용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 세무당국에 신고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2. 판매자는 물품의 판매(용역의 수행,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활동을 직접 수행하

는 자연인이 있을 경우 그의 성, 이름, 부칭(존재할 경우) 및 사진이 명시된 배지를 착용하도록 보장한다.

제5장 용역의 수행(서비스의 제공)

제34조 용역 수행(서비스 제공)의 기간

1.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서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수행자는 용역의 수행(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용역의 수행(서비스의 제공)을 이행한다.

2. 계약서에 용역 수행(서비스 제공)의 착수기, 종기와 개별적 단계의 용역 수행(서비스 제공)의 기간에 대하여 명시할 수 있다.

용역(서비스) 수행(제공)이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에 부분적으로(정기간행물의 배달, 기술적 서비스) 실행되는 경우 이러한 용역 수행(서비스 제공)은 해당 기간을 정해야 한다.

3.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의 수행(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착수기, 중기 및 종기는 변경될 수 있다.

4. 수행자가 용역 수행(서비스 이행) 기간을 위반한 경우(용역 수행의 착수기 그리고(또는) 중기 그리고(또는) 종기) 용역의 종료가 기한 내에 명백히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거절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용역의 수행기간이 명백해지면, 용역이 적합한 형태로 수행이 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결함을 제거할 새로운 기간을 수행자에게 지정하고 수행자가 지정한 기간의 요구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거절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용역의 수정을 수행자의 비용으로 위임하고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행자가 용역의 수행(서비스의 제공)의 지연이 불가항력 또는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함을 증명하면 이 항에 명시된 소비자의 요구는 만족되지 않는다.

5. 소비자가 용역 수행(서비스 제공)의 착수기 및 종기를 다시 정하면 계약서에 명시한다.

새로운 기간의 지연이 10일을 경과할 경우 소비자는 이 조의 제4항에 명시된 여타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6. 용역의 수행(서비스의 제공)을 제때에 수행하지 못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수행자는 용역의 수행(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자신의 비용 및 용역의 수행(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요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제35조 수행된 용역(제공된 서비스)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소비자의 권리

1. 수행된 용역(제공된 서비스)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하여 다음 각 1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수행된 용역(제공된 서비스)의 결함을 무상으로 제거;

2) 수행된 용역(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수의 감액;
3) 동종의 자재로 동일한 품질로 다른 물건을 무상으로 제조하거나 또는 다시 용역의 수행(서비스 제공);
4) 계약서에 결함을 제거할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을 경우에 결함 제거에 지출한 소비자의 비용을 보상받는다.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요구는 업무(서비스) 채택 시에 결함의 발견 또는 그 수행(제공) 과정 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민법에서 명시한 이용 기간, 업무(서비스) 채택한 시점에 결함의 발견이 불가능한 경우 보증기간, 잠재적인 결함의 검출 시 건물 및 구조물의 경우 1년, 용역의 종류와 상관없이 수행자가 의도적으로 결함을 숨긴 경우 용역을 착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한다.
소비자 및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험한 용역(서비스)의 결함의 무상으로 제거에 대한 요구는 소비자 또는 그의 권리계승자가 용역(서비스)의 채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표명한다.
이러한 요구는 보증기간이 만료에 따른 결함을 발견할 경우를 포함하여 이 결한다가 나타날 경우와 상관없이 제출한다.
4. 계약서에 달리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용역(서비스)의 수행(제공) 과정에서 나타난 결함과 수행한 용역(제공된 서비스)는 해당 요구가 제출된 시점에서 10일 이내에 제거되어야 한다.
결함의 제거를 위해 소비자가 정한 기간 또는 양당사자가 동의한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5.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및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 용역의 수행(서비스의 제공)의 착수기 및 종기의 위반 및 용역(서비스)의 결함 제거 기간의 위반을 한 경우에 수행자는 매 경과일에 대하여 용역(서비스)의 액수의 1%의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를 가진다.

제36조 용역의 수행(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견적
1.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의 수행(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다. 소비자 또는 수행자가 주장할 경우 견적서의 작성은 의무이다.
2. 소비자가 그 생산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수행자에게 그 용역의 수행(그 서비스의 제공)을 수행자에게 위임하지 않은 경우에 수행자는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용역(서비스)의 지불 및 추가 지출을 요구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견적가를 반드시 인상해야 하는 경우 수행자는 즉시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공지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견적서에 따라 용역 수행(서비스 제공)으로 수행자가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고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수행자가 소비자에게 견적서의 인상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수행자는 추가로 지출된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용역 수행(서비스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제37조 수행자의 자재로 수행하는 용역

1. 소비자가 자신의 자재로 용역의 수행을 요구하지 않으면 수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을 자신의 자재와 수단으로 수행한다.

자신의 자재로 용역을 수행자는 적합하지 않은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용역수행자의 재료에 대하여 쌍방의 합의로 용역수행자의 재료에 대한 별도의 정산 규칙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위에서 명시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부 결재하거나 용역수행자가 수행한 용역을 소비자가 인수할 때에 최종적으로 결재함은 조건으로 용역수행계약에 명시된 금액만큼 소비자가 지불한다.

용역수행계약이 정한 경우 재료는 용역수행자가 소비자에게 신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용으로 제공된 용역수행자의 재료 가격이 이후 변경되는 경우 재정산한다.

제38조 소비자의 자재로 수행하는 용역

1. 용역이 소비자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로 수행될 경우 제조자는 이 자재의 보관 및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책임은 진다.

2. 수행자는 다음 각 1의 의무를 가진다:

1) 수행자에게 양도한 자재의 부적합성 또는 저품질에 대해 소비자에게 주의

2) 자재 지출에 관한 보고서 제출 및 남은 자재의 반환.

3. 수행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민법에 따라 소비자가 제공한 자재의 손실 및 파손에 대하여 책임진다.

4. 소비자가 자재에 손실(파손)을 일으킬 수 있는 특성에 대하여 수행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수행자는 소비자가 양도한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파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수행자는 제때에 소비자에게 소비자가 명시한 준수 및 마지막과 관계없는 여타 상황에 따라 발생한 용역 수행의 품질의 변경 또는 기한 내에 수행할 수 없다.

수행자의 적시의 확실한 근거가 있는 통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부적합하거나 저품질의 재료를 교체, 용역수행(서비스 제공) 방법에 관한 지시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수행되는 용역(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행자는 용역수행(서비스 제공)계약의 이행을 거부하고 손해를 전부 배상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9조 용역의 수행(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지불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명시된 규정이 없을 경우에 용역 수행(서비스 제공)의 지급 형태와 절차는 소비자와 제조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다.

제6장 소비자단체

제40조 소비자단체

1.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권리의 실현 및 보호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다.
2. 소비자단체는 카자스탄 공화국 사회단체에 관한 법령에 따라 협회(연맹)로 통합될 수 있다.

제41조 소비자단체(소비자협회, 소비자연맹)의 권리

소비자단체(소비자협회, 소비자연맹)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법령의 개선안을 유권기관 및 여타 국가기관에 제안;
2) 국가기관과 공조하여 소비자권리위반에 관한 사실 검토;
3) 물품의 속성 및 그에 대한 수요 조사, 사회적 여론 수렴을 위해 물품(용역, 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 설문조사 진행;
4) 각 종 신고 및 불만사항 접수;
5) 소비자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물품(용역, 서비스)의 질의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신청;
6)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가기관 및 여타 사회단체에 소비자의 이익 제안;
7) 법원 소송에서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를 포함한 소비자의 이익 표명;
8) 대중매체에서 소비자의 문제 및 권리에 관한 정보의 연구 및 배포;
9) 사회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국가사회주문에 근거하여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문제에 관한 기타 조치.

제42조 소비자단체(소비자협회, 소비자연맹)의 소비자권리보호

소비자의 불만제기에 따라 소비자단체(소비자협회, 소비자연맹)은 판매자(제조자, 수행자)에게 위반한 권리 및 법적 이익을 중단하고 소비자가 상실한 손실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매자(제조자, 수행자)가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거절할 경우에 소비자단체(소비자협회, 소비자연맹)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소비자협회, 소비자연맹)이 소비자를 위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는 내국세(內國稅)는 징수하지 않는다.

제7장 종결규정

제43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법 위반에 대한 책임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규정된 책임을 진다.

제44조 이 법률의 발효의 절차

1. 이 법률은 처음 공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법적 효력을 가진다.
2. 1991년 6월 5일자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법」은 효력을 상실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
나자르바예프

아스타나, 아코르다, 2010년 5월 4일
제274-IV ЗРК호

<별첨 3> 한국-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관련 조문 비교

한국-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관련 조문 비교[139]

한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카자흐스탄 소비자보호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제50조(전자상거래)** 1. 소매계약은 판매자가 전자통신을 통해 물품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토대로 체결된다.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	**제50조(전자상거래)** 2. 판매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물품에 관한 정보, 계약 제안의 유효한 기간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3. 소비자에게 물품을 전달할 경우 서면으로 물품과 판매자의 정보 및 물품의 반품 절차와 그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39) 이 표는 한국의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과 발의 준비 중인 카자흐스탄 소비자보호법안 중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비교하였음.

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 "선지급식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제50조(전자상거래)** 6. 계약서에 별도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의 승낙을 받은 날로부터 13일 이내에 물품을 제공해야 한다. 주문한 상품이 부재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판매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17.]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	**제50조(전자상거래)** 4. 소비자는 물품이 배송되기 전에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권리를 가지며, 물품의 배송 후에는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 적합한 품질의 물품 반환 절차 및 기간에 대한 정보가 물품의 전달 시에 서면형태로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는 물품을 배송 받은 시점으로부터 3달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적합한 품질의 물품을 반환할 경우 상품의 형태, 특성, 구매한 물품의 사실 및 조건에 대하여 명시된 서류가 갖추어야 가능하다. 구매한 물품의 사실 및 조건에 대하여 명시된 서류가 없을 경우에도 해당 판매자에게 물품 구매한 다른 증거를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만약에 특정물(特定物)을 취득한 소비자만이 물품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가질 경우 소비자는 적합한 품질의 특정물(特定物)에 대해서 청약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소비자가 물품계약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할 경우에 판매자는 계약에 따라 지불 받은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단,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청한 일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 판매자가 반품에 소비되는 비용은 제외로 한다.

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중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⑦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⑪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의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2.2.17]	

<별첨 4>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자상거래 시행규칙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자상거래 시행규칙[140]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자상거래 시행규칙은 2004년 4월 12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상업활동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2003년 1월 7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전자상거래의 수행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2조 이 규칙의 효력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가조달법」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물품, 용역 및 서비스의 조달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카자흐스탄 공화국 유가증권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증권거래소 및 장외증권시장의 법률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개념 및 용어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의거하여 적용된다.

제2장 전자상거래의 참여자

제4조 전자상거래의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중개자라 함은 정보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조직 및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매매의 제안과 관련된 전자문서의 수령, 게재, 보관).
판매자라 함은 일정 물품의 구매를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소비자라 함은 해당 물품의 잠재적인 구매자를 말한다.

제5조 판매자는 전자상거래의 참여자, 전자상거래규율 부문의 유권기관, 국가세무기관 및 법수호기관이 자신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카자흐어와(또는) 러시아어, 필요한 경우 다른 언어로 명시된 전자형태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해당 정보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성, 이름 및 부칭(존재할 경우), 조직형태를 명시한 법인의 명칭, 주소, 법인의 국가등기에 관한 정보 또는 개인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정보, 인•허가증

140) 이 시행규칙은 2007년 9월 10일 제정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786호(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0 сентября 2007 года № 786)에 의거하여 법적효력을 가짐.

(법령에 명시한 경우), 인•허가증의 번호, 효력 기간, 발급기관명, 납세자등록번호,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제6조 전자상거래의 중개자는 전자정보자원의 파괴, 변형, 왜곡, 복사 및 차단을 위해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여 전자정보자원을 보호한다.

제7조 판매자는 중개인과 서면계약을 체결한다. 중개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양당사자가 동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금액과 기간에 판매자가 지불한다.

제8조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3장 전자상거래 수행의 절차

제9조 공증 또는 국가등기를 요하지 않는 계약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전자서명으로 진위성이 인증된 전자문서의 교환으로 체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0조 전자상거래에서 체결된 계약서에는 전자상거래의 개별적인 조건은 계약서에 해당 정보 시스템에 게재된 전자 문서에 참조하는 방법으로 명시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게재한 당사자는 계약의 효력 기간 동안 그에 방해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그러한 문서의 보관을 보장한다.

제11조 전자상거래계약은 청약에 명시된 기간 내에 승낙을 받았을 때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청약과 승낙은 계약의 본질적인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제12조 청약에 명시된 계약의 조건은 청약을 받은 자가 보관 및 사용할 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판매자는 물품에 관하여 신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전자형태로 제공한다.

제13조 판매자가 보내는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 및 물품에 관하여 소개하는 여타 정보는 전문지식을 보유하지 않는 대상에게 전자상거래에서 수령하는 정보를 의미가 같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며, 계약의 체결 시에 판매자의 법적인 지위, 소비자에게 제안하는 물품, 물품의 가격 및 구매 조건에 관한 신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제14조 중개자는 전자문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중개자가 전자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중개자는 전자문서의 이용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 양당사자의 합의로 전자문서 수령의 승인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경우(청약, 승낙, 수령한 청약의 승인) 수신자가 전자문서의 발신자에게 청약의 수령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제16조 전자상거래의 형태로 체결된 계약에 따른 지불 및 송금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수행된다.

제17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라 세금의 부과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회계문서를 작성한다.

제18조 문서, 기록 또는 여타 정보의 보관이 필수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한다:
1) 정보의 내용은 참조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자문서는 생성, 전달 또는 수령한 형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3) 전자문서는 전자문서의 발신자와 수신자, 작성 또는 수령 날짜와 시간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해야 한다;
4)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령 또는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명시된 여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19조 전자문서의 보관을 위해서 이 규칙의 제 18조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구성원은 다른 중재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 정보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잘못된 승낙을 보낸 경우에 반환은 중개자가 수행한다.